

서울신용보증제도에 대한 평가 및 운용 효율화 방안

2009년 8월

서울특별시의회

提 出 文

서울시의회 의장 귀하

본 보고서를 「서울신용보증제도에 대한 평가 및 운용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9년 8월

한 양 대 학 교 산 학 협 력 단
지 방 자 치 연 구 소

연 구 진

연구책임	배 태 영 박사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연수부장)
연 구 원	김 종 래 교수 (대진대학교 행정학과) 박 치 형 박사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이 승 모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손 화 정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최영훈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신현두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박용균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목 차

요약문	I
제1장 연구의 개요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적	5
제3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6
1. 연구내용	6
2. 연구방법	7
제2장 지역신용보증제도의 의의 및 운용체계	9
제1절 신용보증제도의 의의	9
1. 신용보증제도의 의미와 유형	9
2. 우리나라 신용보증제도의 특징	13
3.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설립배경 및 의의	15
제2절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운용체계 및 현황	19
1. 서울신용보증재단 일반 현황	19
2.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현황	23
3.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운용체계	28
제3절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절차	33
1. 일반적 보증업무절차	33
2. 전자(Cyber)보증업무절차	34
3.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업무제도	35
제3장 신용보증의 거시적 성과 분석	39
제1절 VAR분석의 개요	39
1. VAR모형의 개념	39
2. VAR분석의 절차	40

제2절 VAR모형을 활용한 실증분석	41
1. 모형의 구성	41
2. 분석결과	46
제3절 결론 및 시사점	53
제4장 신용보증에 대한 만족도 및 지원효과 분석	55
제1절 설문조사 개요	55
1. 조사의 개요	55
2. 표본추출	56
제2절 설문조사 분석결과	60
1. 신용보증 이용현황 분석	60
2. 신용보증 이용만족도 분석	63
3. 신용보증 이용 후의 경영성과 분석	71
4. 신용보증 지원신청 이유와 만족도 수준 및 경영성과간의 관계	79
5. 보증지원 금액에 따른 만족도 및 경영성과 분석	83
제3절 분석결과 종합	86
제5장 해외 신용보증제도의 비교	89
제1절 신용보증제도의 유형	89
제2절 일본의 신용보증제도	92
1. 신용보증제도의 의의	92
2. 신용보증제도 운용체계	93
3. 신용보증제도 운용현황	95
4. 정책적 시사점	97
제3절 독일의 신용보증제도	98
1. 신용보증제도의 현황	98
2. 운용체계	99
3. 보증절차	104
4. 정책적 시사점	108
제4절 미국의 신용보증제도	112

1. 신용보증제도의 의의	112
2. 신용보증제도 운용체계	113
3. 신용보증제도 운용현황	114
4. 정책적 시사점	117
제5절 대만의 신용보증제도	118
1. 신용보증제도의 의의	118
2. 신용보증제도 운용체계	119
3. 신용보증제도 운용현황	120
4. 정책적 시사점	122
제6절 프랑스·영국의 신용보증제도	123
1. 프랑스의 신용보증제도	123
2. 영국의 신용보증제도	124
제6장 지역신용보증제도의 운용효율화 방안	127
제1절 신용보증 운용방식의 효율화 방안	127
1. 보증지원 금액의 확대	127
2. 지원 절차의 간소화 방안	128
3. 보증료의 적정운용 방안	130
4. 신용보증 대출방식의 전환	136
5. 사후관리 시스템의 강화	137
제2절 위탁보증제도 도입방안	139
1. 위탁보증의 개요	139
2. 위탁보증의 장·단점 분석	142
3. 위탁보증 도입의 필요성	144
4. 위탁보증제도 도입 방안	146
제7장 결론 및 향후과제	149
참고문헌	153
부 록	

표 목 차

<표 2-1> 신용보증기관 비교	15
<표 2-2>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현황(2007년)	17
<표 2-3>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금액별 보증현황(2007년)	18
<표 2-4> 신용보증 공급현황	23
<표 2-5> 기업규모별 신용보증공급 현황	24
<표 2-6> 연도별 출연금 조성 현황	26
<표 2-7>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내역	27
<표 2-8>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창업교육)	28
<표 2-9> 소상공인 창업자금·임차자금 특별지원	28
<표 2-10> 서울신용보증재단 정원 현황	30
<표 3-1> VAR모형 분석을 위한 선정변수	41
<표 3-2> 단위근 검정결과	43
<표 3-3>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R-sq 검정	44
<표 3-4> Granger 인과관계 검정	45
<표 4-1> 모집단 및 표본 집단의 지역별 분포	56
<표 4-2> 모집단의 규모별·업종별 분포	58
<표 4-3> 표본 집단의 규모별·업종별 분포	59
<표 4-4> 모집단 및 표본 집단의 보증금액별 분포	60
<표 4-5> 신용보증을 받은 이유의 분포	61
<표 4-6> 보증지원 금액의 분포	62
<표 4-7> 대안적 자금 확보 방안의 분포	63
<표 4-8> 지원 절차의 간소화에 대한 만족도	64
<표 4-9> 처리기간의 신속성에 대한 만족도	65
<표 4-10> 지원 조건에 대한 만족도	66
<표 4-11> 보증금액의 규모에 대한 만족도	67
<표 4-12> 보증비용에 대한 만족도	68

<표 4-13> 신용보증에 대한 만족도 비교	69
<표 4-14> 신용보증제도 개선사항 분포	71
<표 4-15> 신용보증의 경영개선에 대한 도움 정도	72
<표 4-16> 신용보증의 매출액 증가에 대한 도움 정도	73
<표 4-17> 신용보증의 자금난 해소에 대한 도움 정도	74
<표 4-18> 신용보증의 시설개선 및 기술투자에 대한 도움정도	75
<표 4-19> 신용보증의 고용안정 및 증대에 대한 도움 정도	76
<표 4-20> 신용보증 이후의 경영성과 비교	78
<표 4-21> 신용보증 지원신청 이유에 따른 만족도 수준의 평균비교	80
<표 4-22> 신용보증 지원신청 이유에 따른 개선사항의 비중분포	81
<표 4-23> 신용보증 지원신청 이유에 따른 경영성과 수준의 평균비교	82
<표 4-24> 신용보증 지원 금액에 따른 만족도 수준의 평균비교	83
<표 4-25> 신용보증 지원 금액에 따른 개선사항의 비중분포	84
<표 4-26> 신용보증 지원 금액에 따른 경영성과 수준의 평균비교	85
<표 5-1> 신용보증제도의 유형	90
<표 5-2> 일본 신용보증협회의 기본재산 및 출연 현황	93
<표 5-3> 독일의 주별 보증은행 현황	99
<표 5-4> 직접방법(BoB)의 장·단점	105
<표 5-5> 신용분석보고서의 주요내용	106
<표 5-6> 표준 심사와 약식심사의 주요내용	107
<표 5-7> 보증승인 조건의 주요내용	107
<표 5-8> 신용평가시스템의 구성	108
<표 5-9> 신용평가시스템의 기업별 가중치	108
<표 5-10> 독일보증은행의 실적 현황	110
<표 5-11> 대만의 보증잔액 및 이용률 추이	120
<표 6-1> 제출서류 간소화 추진현황	129
<표 6-2> 손익분기점 수준의 보증료율 산출내역	132
<표 6-3> 보증료 가산 및 차감 요인	134

<표 6-4> 위탁보증과 직접보증 제도의 비교	140
<표 6-5> 신용보증기금의 취급부문별 보증현황	140
<표 6-6> 위탁보증의 장단점	142
<표 6-7> 위탁보증 사고율 현황	143
<표 6-8> 위탁보증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145
<표 6-9> 관련 조례의 개정안	146

그림 목 차

<그림 2-1>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설립 목적	20
<그림 2-2> 신용보증 공급현황(1999-2008)	23
<그림 2-3> 대위변제 발생 현황(2000-2008)	25
<그림 2-4> 출연금 비율현황	26
<그림 2-5>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내역	27
<그림 2-6> 서울신용보증재단 조직도	29
<그림 2-7> 서울신용보증재단 의사결정체계	31
<그림 2-8>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감독체제	32
<그림 3-1> VAR모형을 활용한 거시성과분석 절차	40
<그림 3-2> 모형 VAR-1의 분산분해	47
<그림 3-3> 모형 VAR-2의 분산분해	48
<그림 3-4> 모형 VAR-3의 분산분해	49
<그림 3-5> 모형 VAR-1의 충격반응함수	50
<그림 3-6> 모형 VAR-2의 충격반응함수	51
<그림 3-7> 모형 VAR-3의 충격반응함수	52
<그림 5-1> 일본 신용보증제도 운영체계	94
<그림 5-2> 독일 보증제도의 구조	100
<그림 5-3> 재보증 시스템의 책임분담 비율	101
<그림 5-4> 보증심의위원회의 구성	102
<그림 5-5> 보증절차(간접방식)	104
<그림 5-6> 독일보증은행의 보증승인 건수(1995~2004년)	111
<그림 5-7> 대만 신용보증제도의 운영체계	119
<그림 6-1> 위탁보증방식의 절차	139
<그림 6-2> 취급부문별 보증금액의 추이	141

요 약 문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글로벌 경제위기의 가속화와 실물경제의 침체
- FTA 시대의 개막과 바젤Ⅱ 협약(신 BIS 협약)의 시행
- 고객중심 시장으로의 변화
-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강화 및 서민경제 활성화의 추구

⇒ 시민고객 중심의 신용보증 프로세스 구축 필요

제2절 연구의 목적

- 신용보증 운용체계 분석 및 고객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신용보증 프로세스의 문제점 파악
- 신용보증의 거시적·미시적 성과의 분석을 통해 신용보증의 지속적 발전 논리를 제공
- 해외 선진국 신용보증 제도의 운용체계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의 도출

⇒ 신용보증 운영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한 신용보증제도의 운용효율화 방안 모색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연구의 내용

- 현행 신용보증 운용체계 및 프로세스에 대한 문제점 검토
- 지역신용보증제도의 의의 및 운용현황 파악
- 해외 선진국의 공적 및 민간 신용보증제도에 대한 비교연구
- 재단과 금융기관 간 신용보증 심사권한의 재조정 필요성 검토
- 고객중심의 신용보증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

○ 연구의 방법

- 문헌조사: 신용보증제도의 운용체계와 해외 신용보증제도에 관한 국내·외 문헌의 체계적인 조사 및 검토
- 양적 연구방법: 신용보증 관련 경제지표를 대상으로 다변량 시계열 분석을 통한 거시성과 분석과 신용보증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용보증의 정책성과 및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한 미시성과의 분석
- 브레인 스토밍: 전문가, 실무공무원, 연구 참여자, 그리고 서울시의회와의 체계적인 토론을 통한 시민고객 중심의 프로세스 구축 아이디어의 도출

제2장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의의 및 운용체계

제1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의의

- 경제적 효율성 증대, 공적 금융매개 역할, 그리고 신용사회 기반조성 등을 통해 서울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제2절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운용현황

1. 일반현황

- 1999년 6월 서울신용보증조합의 설립 및 2000년 3월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전환
- 신용보증, 구상채권 관리, 기본재산 관리,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함.

2. 보증현황

- 1999년 재단 설립 이후 2008년 말까지 10년 동안 148,336건, 3조 5190억 원의 신용보증을 공급하였으며, 보증 잔액은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말 기준으로 90,378건, 1조 5,381억 원임.
- 총 보증사고 발생은 10,327개 업체, 2,588억 원이며, 총 대위변제 발생은 6,027개 업체, 1,729억 원, 그리고 특수채권 발생은 1,696개 업체, 627억 원임(1999년~2006년).
- 기본재산인 재단 설립 이후 총 출연금은 2008년말 까지 총 3,734억 원임
- 2003년 4월 서울시에서 서울시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업무를 수탁 받아 신용보증과 정책자금을 일괄 지원하는 원스톱 시스템 구축
- 2006년 4월 서울시에서 소기업·소상공인 지원기관인 소상공인지원센터의 관리·운영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함에 따라 신용보증 및 자금지원과의 연계 를 통한 소기업·소상공인 전문종합지원기관으로의 기틀 마련

3. 운용체계

- 재단은 1999년 팀제를 근간으로 한 3팀에서 업무영역 및 고객수요 확대에 대한 대응으로 확대·개편되어 2007년 3본부 5부 2실(영업점: 1부 3지점 7출장소)로 개편되고, 2009년 현재 3본부 6부 2실(영업점 11지점)로 운영되고 있음.
- 재단 임직원은 1999년 16명에서 출발하여, 2009년 7월 현재 152명으로 약 10배 증가
-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는 신용보증제도 일반사항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청의 지도/감독을 받음과 동시에 서울시의 주요한 정책, 특히 중소기업 지원관련 정책의 반영을 위해서는 서울시의 지도/감독을 받는 중복적 체계

제2절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절차

- 일반적인 보증업무의 경우, 보증상담 및 서류교부→ 신청서류 접수→ 신용조사(인적·물적·재무적 조사)→ 보증심사 결정→ 신용보증약정 체결 및 전자보증서 발급→ 재보증 통지 및 사후관리의 절차에 따름

제3장 신용보증의 거시적 성과 분석

제1절 VAR분석의 개요

- VAR모형(Vector Autoregression Model)은 거시경제변수의 시계열자료를 이용

하여 예측 및 내생변수의 변화에 따른 영향 및 파급효과를 분산분해 및 충격반응분석을 관찰하여 분석하는 다변량 시계열 분석모형임.

제2절 VAR모형을 활용한 실증분석

1. 모형의 구성

1) 분석대상 자료 구성 및 변수선정

- 표본의 분석기간은 2000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의 월별 시계열자료를 대상으로 하며, VAR 모형 분석을 위한 변수는 다음과 같음.

구분	변수명	산출방법	출처	단위
독립변수	신용보증잔액(GO)	월별보증잔액	재단	억원
	서울시 산업생산지수(IP)	계절 조정된 산업생산지수	통계청	-
	중소기업대출금리 (Small Loan Rate)	예금은행의 중소기업대출금리	한국은행	연리%
종속변수	이자율(Interest)	회사채 장외3급 AA-	한국은행	연리%
	서울시 설비투자지수 (Invest)	설비투자추계지수	통계청	-
	통화량(M2)	광의 통화량(M2)의 평균잔액	한국은행	억원
	서울시 고용률 (EMP)	취업자 수/15세 이상 인구수	통계청	%

4) 모형의 구성

-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에서 통화량(M2)이 기각되었기 때문에 모형구성에서 제외됨. 즉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에서 통화량(M2) 변수는 인과관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변수의 모형구성은 이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3개의 VAR모형을 구성함(독립변수3개 + 종속변수 각 1개).

- ① 모형 VAR-1
 - 로그변환모형: DL_GO, DL_IP, DL_SLR, DL_INTEREST
- ② 모형 VAR-2
 - 로그변환모형: DL_GO, DL_IP, DL_SLR, DL_INVEST
- ③ 모형 VAR-3
 - 로그변환모형: DL_GO, DL_IP, DL_SLR, DL_EMP

2. 분석결과

○ 각 모형에 따라서 분산분해(Cholesky Variance Decomposition)를 통해 개별 내생변수의 변동 중에서 이들 변수들이 전체 변동에 기여한 부분의 상대적 크기를 분석하고 충격반응함수(Impulse Response Analysis)를 통해 한 변수의 충격에 대한 다른 변수의 반응 경로를 파악함.

○ 분산분해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모형	변수	신용보증 잔액	산업생산 지수	중기대출 금리	회사채 이자율	설비투자	고용률
모형 1	자기자신 비율	1기 100% 4기 65% 6기이후 50%	90% 이상	90% 이상	90% 이상	-	-
	그 외 비율	회사채이자율 31%	매우 미비	매우 미비	매우 미비	-	-
모형 2	자기자신 비율	100%~75%	90% 이상	90%~75%	-	1기 85% 2~8기 65%	-
	그 외 비율	회사채이자율 20%	매우 미비	10% 미만	-	보증잔액 및 산업지수 10%	-
모형 3	자기자신 비율	90% 이상	90% 이상	90% 이상	-	-	95% 이상
	그 외 비율	매우 미비	매우 미비	매우 미비	-	-	매우 미비

○ 충격반응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모형	변수	신용보증 잔액	산업생산 지수	중기대출 금리	회사채 이자율	설비투자	고용률
모형 1	회사채 이자율에 의한 충격	- 1~4기: (-) - 5기 이후: "0"에 수렴	- 1~4기: (+) - 5기 이후: (-)	- 1~8기: (-)	자신의 충격 반응이 크면 서 음(-)으로 가는 양상	-	-
모형 2	설비투자 에 의한 충격	- 1기: (-) - 2기 이후: (+)	- 1~8기: (+)	- "0"에 수렴	-	자신의 충격 반응이 크면 서 양(+)으로 가는 양상	-
모형 3	고용률에 의한 충격	- 1~2기: "0"에 수렴 - 3기: 미미한 (+)	- 1~2기: "0"에 수렴 - 3기: 미미한 (+)	- 1~2기: "0"에 수렴 - 3기: 미미한 (+)	-	-	자신의 충격 반응이 크면 서 양(+)으로 가는 양상

제3절 결론 및 시사점

- 신용보증은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서울설비투자증가와 고용률 증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하였음.
- 신용보증은 중소기업 금리인상 억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하였음. 즉,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경기불황기에는 규모가 축소되어 경기 순응적 대출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신용보증의 증가는 경제 침체기에 규모를 확대하여 금융시장의 “쏟림현상”을 보완함.

□ 보증증가 ⇒ 서울시 고용·설비투자 증가 ⇒ 경제성장
 □ 보증증가 ⇒ 예금은행의 중소기업대출금리 억제 ⇒ 서울시 고용·설비투자 증가 ⇒ 경제성장

제4장 신용보증에 대한 만족도 및 지원효과 분석

제1절 설문조사 개요

- 보증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재무자료를 이용하는 방식으로는 신용보증의 미시성과분석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통해 신용보증 이용고객이 평가하는 신용보증의 비재무적 정책성과를 측정함.

- 설문대상과 방법 및 기간
 - 대 상 :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기업(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방 법 : 우편 및 전화 설문
 - 기 간 : 7월 6일 ~ 7월 29일
 - 응답자 : 200명/ 표본집단 1,000명(응답률: 20.0%)

- 모집단과 표본집단 : 모집단은 2007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까지 신용보증 이용자 73,897명이며, 표본집단은 모집단의 보증유형별, 지역별, 규모별, 업종별, 그리고 보증금액별 분포를 고려한 할당표본추출에 의해 구성.

제2절 설문조사 분석결과

1. 신용보증 이용현황 분석

-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이유: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3.72%(87명)가 시설 및 기술투자 확대를 제시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15.08%(30명)가 판매부진을 신용보증지원 신청의 이유로 제시함.

- 신용보증지원 금액: 신용보증 지원을 받은 금액에 대한 질문에서 ‘3천만원 이하’가 응답자의 39.70%(79명)로 가장 많고, ‘3천만원~5천만원 이하’가 32.16%, 그리고 ‘5천만원~1억원 이하’가 응답자의 19.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 대안적 자금 확보 방안: 서울신용재단으로부터의 신용보증을 받지 못했을 경우의 대안적인 자금 확보 방안에 대해서 응답자의 25.5%가 각각 ‘가족 및 친지 등 지인을 통한 조달’과 ‘제2금융권(새마을 금고, 벤처캐피탈 등)을 통한 자금 조달’을 지목한 것으로 조사됨.

2. 신용보증 이용만족도 분석

-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제공하는 신용보증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 조사결과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모든 항목에서 ‘만족’ 한다는 응답이 ‘불만족’ 한다는 응답에 비해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만족의 수준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개별 항목별 만족도 수준을 비교하면, 지원 절차의 간소화와 처리기간의 신속성 항목은 상대적으로 만족의 수준이 높은 데 비해 지원조건과 보증금액의 규모, 그리고 보증비용 등에 대한 만족도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지원 절차의 간소화와 처리기간의 신속성 항목에 대한 만족 수준을 살펴보면, 만족의 응답 비중이 전체의 85%를 상회하는 데 비해서 불만족의 응답 비중은 10%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됨.
- 지원조건과 보증금액의 규모, 그리고 보증 비용에 대한 만족 수준을 살펴보면, 만족의 응답 비중은 전체의 50~60%를 차지하는 데 비해서 불만족의 응

답 비중은 15~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개별 항목에 따른 만족 수준의 이러한 차이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제공하는 신용보증의 절차적·형식적 측면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는데 비해서 신용보증의 실제적·내용적 측면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함.

3. 신용보증 이용 후의 경영성과 분석

- 신용보증의 경영성과에 대한 조사결과, 전체적으로 모든 항목에서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용보증이 경영성과에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개별 항목별 경영성과의 수준을 비교하면, 자금난 해소에 대한 성과의 수준이 가장 높고, 매출액 증가와 시설개선 및 기술투자 항목에 대한 성과는 중간 정도의 수준이며, 고용안정 및 증대와 관련된 성과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자금난 해소에 대한 신용보증의 성과는 ‘도움’의 응답이 전체의 75.5%이고 ‘도움 안됨’의 응답이 5.5%에 불과한 데 비해서 매출액 증가와 시설개선 및 기술투자에 대한 성과 수준을 살펴보면, ‘도움’의 응답은 60%대인데 비해서 ‘도움 안됨’의 응답은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장 장기적인 성과에 해당하는 고용안정 및 증대의 경영개선에 대해서는 ‘도움’의 응답이 50%에 미치지 못하는데 비해서 ‘도움 안됨’의 응답은 11.5%로 조사되었음.

- 개별 항목에 따른 도움 수준의 이러한 차이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제공하는 신용보증의 단기적인 성과(자금난 해소)와 장기적인 성과(고용안정 및 증대)에 대한 차이를 의미하는 것임.

4. 현행 신용보증제도 개선사항 분석

- 현행 신용보증제도의 개선사항에 대해서 응답자의 29.17%(56명)가 ‘보증지원 금액의 확대’를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제시하였으며, 응답자의 23.44%가 ‘보증 비용의 감소’를 시급한 개선 사항으로 지목하였음.
- 보증지원 금액과 보증 비용의 문제는 앞선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도 상대적으로 만족의 수준이 낮은 항목에 해당했던 것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판단됨.

제5장 해외 신용보증제도의 비교

제1절 신용보증제도의 유형

구 분	상호보증제도	공공보증제도	용자보증제도
운영주체	중소기업단체	독립된 보증기관	은행
보증형태	기관보증 및 정부재보증	기관보증	정부보증
보증대상	회원기업	불특정 기업	불특정 기업
공 신 력	소	대	중
보증금액	소	대	중
신용조사/보증심사	형식적	필수적	없음
보증활용	중	대	소
운영국가	유럽 지역	아시아 지역	미주 지역

제2절 일본 신용보증제도

○ 상향식 보증규모 결정방식

- 한국의 경우, 실질적으로 보증규모와 예산 등에 있어 중앙정부(혹은 각 지역재단의 경우는 지방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어 중앙집권적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 일본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지역 보증협회가 지방정부와 협의하여 보증규모를 결정하고, 전체 보증규모의 결정도 지역별 보증협회의 계획을 제출받아서 결정하는 상향식 형태를 취하는 특징이 있음.

○ 높은 수준의 담보부 보증비율

- 일본의 보증은 담보를 설정하는 비중이 높아 담보채권 위주로 회수활동을 활발하게 행하고 있어 사고발생시 대위변제 가능성이 높은 장점이 있음.
- 하지만, 경제위기와 이에 따른 재정지원 확대를 위해 1998년과 2001년 사이에 실시된 「금융안정화특별보증」 이후 담보부 보증이 감소하고 있어 대위변제 가능성이 감소하는 등 건전성 악화가 예상됨.

제3절 독일의 신용보증제도

○ 독일 신용보증제도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조화를 이루는 상호보증제도로 유럽 내에서 가장 발달된 보증제도로 평가

- 독일의 보증기관은 당초 민간부문의 자조적 기관인 보증협회 ➡ 주정부 단위 경제단체들의 이익단체 성격의 신용보증조합 ➡ 독일 은행법의 규제를 받는 보증은행으로 조직의 체계가 발전되어 왔음.
- 보증기관의 조직체계가 현행과 같이 발전되어 오는 과정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보증과 저리자금 대출에 의한 공적지원이 결정적 역할.

- 독일 재보증 시스템의 책임분담 비율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48:52의 비율로 공공부문의 책임분담이 민간부문보다 다소 높음
- 보증제도의 성립·정착과 관련하여, 독일의 경우 정부의 간접지원 방식에 의한 공공부문의 참여, 한국의 경우 금융기관 출연제도에 의한 민간의 참여를 통해 각각 재원의 안정적인 확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보증제도가 조기 정착
- 경제규모를 기준으로 보증의 운용규모를 보면 독일은 GDP 대비 보증잔액이 0.26%에 불과하고, 저축은행 등 지역 금융기관 위주로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
- 보증절차의 경우 독일은 보증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고 대위변제 절차 등의 제도운영이 한국보다 비효율적임

제4절 미국의 신용보증제도

- 예산에 의한 보증지원
 - 현대적인 보증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주요국의 경우 일정한 기금을 조성하거나 민간의 출연금을 함께 조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과 비교해서 미국의 경우 예산에 의한 보증지원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
 - 정부의 예산으로 보증지원을 행하는 경우,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손쉽게 반영되는 장점이 있으나 재원조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최근에는 보증제도의 개선을 위해 그 동안 중소기업청이 독점적으로 행사하던 보증결정권한을 금융기관에 위임하는 등의 노력을 수행함.
- 특별보증제도의 도입
 - 9·11테러 및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보증제도를 도입한 사례가 있음.

- 특히 최근의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입한 「경영안정화 특별보증」의 경우 미국 역사상 최초로 전액보증 제도를 도입하고, 같은 기간 동안 이자도 전액 보조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제도를 도입한 특수한 경험임.
- 하지만 9·11 이후 상원의 중소기업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일부 보증 운용에 있어 도덕적 해이가 발견되는 등 특별보증제도의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됨.

제5절 대만의 신용보증제도

○ 단독 보증기관의 운용

- 대만은 경제부에서 단독적으로 기금을 운영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단독 보증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특징을 보임.
- 중앙집권적인 지원체계와 더불어 정부비중이 높은 것도 특징이라 할 수 있음.

○ 신속지원에 한계

- 대만은 산업의 특성상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가 정착되어 있으나, 2003년 이후 급증하는 보증규모에 비해 위탁보증 위주로 운영되면서 신속하고 강력한 지원에 한계점 노정.

제6절 프랑스 · 영국의 신용보증제도

- 시장을 우선시하는 경제적 전통에 따라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다소 늦은 시점에 보증 제도를 도입하였음.
- 기타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신용보증의 비중이 낮다는 특징
- 중소기업국에서 보증부 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대출기관을 사전에 승인해 대출을 시행하는 형태상의 특징이 있음.

제6장 지역신용보증제도의 운용효율화 방안

제1절 신용보증 운용방식의 효율화 방안

1. 보증지원 금액의 확대

-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수출 감소와 내수침체 가속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중소기업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판단됨.
- 그러나 정부가 지역신보의 보증한도를 획일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물가 수준과 상승률, 영업규모 확대, 지역신보의 보증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신용보증의 최고한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이 있어야 할 것임.
- 또한, 금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동일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한도 확대조치도 경제회복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지원 절차의 간소화

- 고객신청서류 ZERO화라는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전자보증 취급기관의 확대, 전자방식에 의한 서류징구방식의 도입, 행정정보 공동이용 범위의 지속적인 확대 등으로 제출 서류의 축소와 통합을 추진하도록 함.
- 경기변동 상황에 따른 보증처리기간의 장기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담 및 서류접수, 신용조사와 보증심사 등에 대한 보증처리업무 중 표준화되고 단순반복적인 업무는 계약직원 활용이나 과감한 위탁 실시.

- 보증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5천만원 이하의 소액보증 이용객에 대해서는 신용조사와 심사절차를 대폭 간소화시킨 ‘소액보증 심사시스템’을 더욱 확대해 나감으로써 소상공인들이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3. 보증료의 적정운용

- 재단의 보증재원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보증요율의 인상과 인하를 결정할 경우에는 보증료의 수익자부담 원칙 및 보증운용의 효율성이라는 측면과 공적 신용보증기관으로서의 재정자립 달성 및 공공성 추구라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적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보증요율 산정방식과 관련하여, 신용도에 따른 차등 보증요율 적용은 보증제도 자체의 근본적인 개선은 아니며 중소기업 부담만 가중시키므로, 이를 보증료 산출식에서 제외하고 보증금액과 보증기간에 따라서 보증요율을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4. 신용보증 대출방식의 전환

- 창업단계의 신용보증에서 출발하여 중소기업의 발전, 성장, 성숙기에 이르는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각 단계별로 적합한 신용보증 정책을 도입해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력으

로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 중소기업은 보증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 함.

5. 사후관리 시스템의 강화

- 보증심사와 대출과정에서 고객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자금이 집행되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출기관 또한 대출이자의 납부 외에는 별다른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은 한정된 보증재원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한 문제로 판단됨.
- 일정 금액 이상의 보증잔액(예, 1억원 이상)이 남아있는 보증업체에 대해서는 매년 자금사용내역 확인자료를 제출토록 하거나 대출자금의 용도의 사용 등 부당행위 적발 시 대출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등의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임.

제2절 위탁보증제도 도입방안

1. 위탁보증제도 도입의 필요성

- 현재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지점망으로는 주로 보증을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시킬 수 없으며, 보증업무의 경쟁체계 구축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위탁보증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 보증서 발급 업무를 신용보증기관에서 은행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되면 고객은 은행창구에서 창업자금을 직접 받을 수 있어 절차 간소화에 따른 여러 이점과 동시에 자금지원 저변 확대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임.

-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의 경우를 살펴보면 보증공급이 대체로 금융기관을 통한 위탁보증제로 운용되고 있는 바, 이는 위탁보증제도가 잘 활용되면 은행의 대출심사 기능을 적절하게 이용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정책성과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위탁보증제도 도입방안

1) 근거 법령의 마련

- 현행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40조제3항에 따르면, 재단은 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중앙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은 업무의 위탁 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어 위탁보증의 도입은 법·제도적으로 가능함.
- 그러나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설립 조례인 「서울특별시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보증업무의 위탁에 관한 근거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탁보증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위 조례에 위탁보증의 근거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할 필요가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업무의 위탁) ① 재단은 신용보증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현행 제17조와 같음>

2) 위탁보증의 기본방향

- 위탁보증제도가 지닌 one-stop 기능의 장점인 보증처리의 신속성과 업무편의성의 제고, 보증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탁보증제도를 도입하되, 금융기관에 대한 적격성 심사 후 보증심사권을 단계적으로 이양하도록 함.
-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금융기관의 보증심사 결과에 대한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사후에 금융기관의 신용보증에 대한 심사내용을 분석·평가하여 심사권 위임여부 및 조건 등을 조정하도록 함.
- 위탁보증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높은 대위변제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면적인 도입보다는 시범사업 등을 통해 위탁보증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전면 시행에 대비함.

3) 위탁사업의 활성화 방안

- 수탁기관 간의 자율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위탁성과가 우수한 금융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위탁보증을 활성화함.
- 유인체계를 강화하는 것과는 별도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부분보증제도 등의 탄력적 운용이 필요함.
 - 부분보증비율의 유연한 적용, 위탁계약의 강화를 통한 수탁은행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여신심사의 강화 등.
 - 대위변제액의 일부 분담 및 위탁보증의 총규모와 개별기업에 대한 위탁보증규모의 제한, 위탁보증심사 기준의 강화 등.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의 지속과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경쟁력 하락 등으로 자금 확보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어 이들의 금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적 신용보증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서울에 소재한 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체는 2007년 말 기준으로 645,619개로, 전체 678,631개 사업체의 9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자 수만도 166만 6,802명에 달해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
- 따라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발전은 국민 생활의 안정과 고용창출을 증가시키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이들의 생산성이 서울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이러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금융기관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간 정보의 비대칭성¹⁾으로 인한 신용할당(credit rationing)²⁾과 담보능력의 부족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음(서청석 외, 2006: 198).

-
- 1)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모든 기업에 적용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더욱 심각함. 이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실적공시자료가 없거나 세제상의 이유 또는 지식부족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이로 인해 금융기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모니터링하기 어려워 객관적인 대출심사지표를 적용하기 보다는 기업규모나 담보에 근거하여 대출을 결정하게 됨.
 - 2) 신용할당은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대출 금리에 따라서 대출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차입자의 신용상태 등에 의거하여 대출량을 제한하거나 차입자에게 신용을 할당하는 행위를 말함. 이 경우에 금융기관은 상대적으로 부도위험성이 적은 기업을 선별하여 대출을 실시하게 됨.

- 실제로 서울은 소상공인의 80% 이상이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으로 이루어져 있어, 규모의 영세성과 담보력 부족에서 발생하는 자금 확보와 판매 등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직면하고 있음.³⁾
- 중소기업을 위한 신용보증제도는 이처럼 신용할당과 담보능력의 부족으로 만성적인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산업연구원, 2001).
- 최근 들어서는 경제 환경을 둘러싼 국제적 여건 변화와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등과 같은 대내외적 환경변화로 말미암아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 첫째, 2008년부터 시행된 바젤Ⅱ협약(신 BIS 협약)으로 중소기업, 특히 신용도가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⁴⁾
 - － 둘째, 우리나라의 신용보증제도 운영상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국제기구와 관련학자들로부터 개혁 권고를 받고 있는 것도 향후 신용보증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⁵⁾
 - － 셋째, 정부의 정책방향에 있어서 보호육성 위주의 중소기업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경쟁촉진과 인프라 조성위주의 혁신주도형 지원방식으로 중소기업정책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

3)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체 483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금융이용 애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업체의 46.6%가 자금사정이 곤란했다고 밝혔으며, 주요 자금조달처는 은행자금(74.3%)과 정책자금(21.7%)이 대부분이며, 비은행(제2금융권) 자금이용업체는 2.1%로 매우 낮아 은행 편중현상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중소기업중앙회, 2007).

4) 바젤Ⅱ 협약의 시행으로 인해 금융기관이 신용평가를 강화하고 위험도에 따른 금리의 차별화를 요구하게 됨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이 위축되고 자금사정이 악화될 우려가 높음. 특히 95% 이상의 사업체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서울지역의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5) IMF는 한국의 보증규모가 과다하다는 점을 들어 2005년 말(46조원, GDP의 5.7%)부터 향후 5년간 GDP 대비 매년 1%(약 7조원)씩 축소할 것을 권고하였고, S&P도 "국가신용등급평가를 위한 연례협의(2005.7)"에서 국가신인도 상승은 신용보증에 따른 경제왜곡현상의 시정여부에 달려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박형근 외, 2007: 4).

- 넷째, 물량위주의 보증운영방식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자생력 확보와 민간금융기관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보증공급정책의 방향 재설정⁶⁾이 요구되고 있음(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7: 4).
 - 다섯째, 글로벌 경제위기의 가속화와 실물경기의 침체, 수출 감소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금융애로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수출기업, 경기민감업종, 저신용등급 기업 및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이러한 국제적 금융환경과 정책 방향의 변화로 인해 담보력과 신용도가 취약한 지역의 영세중소기업과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현장밀착형 신용보증기능의 확대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신용보증제도는 자금조달에 있어서 신용도와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받는 상대적인 불리함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수단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불안정한 기능을 보완하여 중소기업 자금을 공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할 것임(김흥기 외, 2009).
 - 세계 각국은 신용보증제도가 지니고 있는 경제적 기능과 역할에 주목하여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추세임(산업연구원, 2001).
 - 우리나라의 신용보증제도는 공공기관보증제도의 특성을 띠고 있으며, 1976년에 신용보증기금이 최초로 설립되었고, 1989년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설립되었으며, 1996년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시작으로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역신용보증이 설립됨으로써 3원화된 경쟁시스템을 구축하였음.
 - 이 중 지역신용보증재단은 1999년 제정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채무보증을 통해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되었음.
- 6) 이에 따라 정부는 신용보증시장에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도입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신용보증 개편방안(2005. 6. 23)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음.

- ‘서울신용보증재단’은 1999년 6월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거해 ‘서울신용보증조합’으로 출범하였으며, 2000년 3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시행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전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본 연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출범 10년을 맞아 그 동안의 업무실적을 토대로 소기업, 소상공인 종합지원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과 서울경제 활성화에 대한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함.
- 또한, 중앙정부의 신용보증기관과 타 지역신용보증재단, 그리고 외국 신용보증제도와의 비교 연구와 신용보증을 이용한 고객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시스템에 대한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함.
-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적극적인 금융지원과 함께 고객의 다양한 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민고객 중심의 신용보증 프로세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중소기업의 신용보증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보증기관이 직접 심사하는 직접보증제도로서는 탄력적으로 보증수요에 대처하기 어려우므로,⁷⁾ 보증기관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보증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위탁보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7) 실제로 최근 중소기업의 보증수요가 증대되면서 보증기관의 승인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경우, 비상경제대책회의(2009.2.12)에서 발표한 신용보증 확대조치 이전에 기 적체분량이 많아서 보증승인이 장기간(14일) 소요되고 있음.

제2절 연구의 목적

- 서울신용보증조합에서 출발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설립 후 10년이 지났지만, 재단의 신용보증이 서울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운용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객관적인 측정을 통해 운용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신용보증제도의 운용효율화 방안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첫째, 신용보증제도의 도입 배경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운영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신용보증제도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
 - 둘째, 신용보증제도의 운용체계에 대한 분석과 이용고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신용보증 프로세스의 문제점 파악
 - 셋째,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이 서울경제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운용성과를 분석하여 신용보증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논리 제공
 - 넷째, 해외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는 신용보증제도의 운용체계에 대한 실태 파악과 우리나라 신용보증제도와 비교 연구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 도출
 - 다섯째, 급증하는 신용보증수요에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고, 경제난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민고객 중심의 효율적인 신용보증 프로세스 구축

제3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연구내용

- 본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됨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중심으로 한 지역신용보증제도의 의의 및 운용현황
 -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제공하는 신용보증의 거시적·미시적 성과
 - 해외 선진국 신용보증제도의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의 도출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중심으로 한 지역신용보증제도의 운용 효율화 방안

- 지역신용보증제도의 의의 및 운용현황에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운용체계 및 현황, 그리고 보증절차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행 신용보증 운용체계 및 프로세스에 대한 문제점 검토
 - 절차의 복잡성, 심사기간의 장기화, 연대보증인 요구, 감액 보증 등
 - 직접보증에 따른 심사부담·비용상승, 보증신청 거절율의 증가 등

-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제공하는 신용보증의 거시적·미시적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 거시적 성과 분석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활동과 관련된 거시경제 변수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예측 및 내생변수의 변화에 따른 서울시 경제성장률에의 영향 및 파급효과를 분석
 - 미시적 성과분석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제공하는 신용보증을 이용하는 고객 집단을 대상으로 신용보증 이용현황과 더불어 이용만족도와 신용보증을 통한 경영개선 성과 등 재단의 비재무적 성과를 분석

- 해외 선진국의 공공 및 민간신용보증제도에 대한 비교 연구
 - 신용보증제도의 다양한 유형을 체계적으로 비교할 수 있고, 신용보증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해외 선진국, 즉 미국, 독일, 일본, 대만, 프랑스, 그리

- 고 영국을 대상으로 해외 사례를 분석
- 각 국의 신용보증제도 운용체계와 운용현황, 그리고 보증절차 등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해 우리의 신용보증제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끝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운용실태 분석, 이용고객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운용성과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그리고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등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신용보증제도의 운용상 발전방안을 고객중심의 신용보증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방안 중심으로 모색
- 절차의 간소화, 심사기간의 축소 등을 통한 보증심사의 효율화 방안
 - 민간금융기관 위탁보증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분석
 - 위탁보증제도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 해소방안 검토
 - 위탁보증제도 도입전략과 세부시행방안 모색 등

2. 연구방법

- 본 연구는 크게 문헌조사와 통계분석기법, 그리고 브레인 스토밍의 세 가지 연구방법을 통해 신용보증재단의 현황과 활동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수행.
- 문헌조사
-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생산하는 공식적인 문헌과 관련 학술문헌 등 다양한 1·2차 문헌자료를 통해 국내·외 신용보증제도의 운용체계 및 현황과 보증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
- 통계분석기법의 활용을 통한 양적 연구방법
- 다변량 시계열 모형(Vector Autoregression Model: VAR)을 활용한 서울신용보증의 거시적 성과 분석: VAR 모형은 전통적인 회귀분석 모형과 일변량 시계열 분석 모형의 한계를 보완한 모형으로 실제 관찰되는 주요 경제변수의 시계열 자료가 주는 정보를 활용하여 현실경제를 분석하는 데 활용.

- 설문조사: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보증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1천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의 정책성과와 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신용보증 이용현황과 이용 만족도, 그리고 경영개선 성과에 대한 평가 등을 조사·분석.

○ 브레인 스토밍(Brain-stroming)

- 브레인 스토밍은 문제상황을 식별하고 개념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아이디어, 목표, 전략을 끌어내기 위한 방법이며, 일반적으로 분석가의 목적이나 상황의 실제적 제약에 따라 상대적으로 구조화된 또는 잘 구조화되지 않은 행동을 포함하는 매우 유동적인 절차임(남궁근 외, 2005: 137-138).
-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를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조화된 워크숍을 통해 연구의 연계성·종합성을 확보.
- 전문가·실무공무원 및 서울특별시의회의와의 협력을 통하여 시민고객 중심의 신용보증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아이디어 도출.

○ 연구내용과 연구방법간의 연계

- 본 연구의 핵심적인 내용은 현황분석과 성과분석, 그리고 개선방안으로 구성되며, 각각은 주도적으로 활용된 연구방법과 연계되어 있음.
- 국내·외 신용보증제도 및 제도운용의 현황에 대한 분석은 주로 문헌조사를 통해 수행.
-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성과분석은 주로 통계적 분석기법을 통해 수행되었으며, 구체적으로 거시적 성과분석은 다변량 시계열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미시적 성과분석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기초통계분석을 통해 수행.
- 현황분석과 성과분석의 결과를 공유한 상태에서 신용보증재단의 운용 효율화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브레인 스토밍이 핵심적인 연구방법으로 활용됨.

제2장 지역신용보증제도의 의의 및 운용체계

제1절 신용보증제도의 의의

1. 신용보증제도의 의미와 유형

- 신용보증은 장래의 어느 시점에 그 대가의 지급을 약속하고 현재의 경제적 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 신용을 기준으로 주채무자 대신 제3자가 채무의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함(권성일, 2001: 20).
-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대출시 보증을 하는 것은 중세유럽의 길드제도에서 유래하였으며,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한 신용보증제도로 변천되었음.
-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공정한 경쟁환경 속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며, 특히 지식기반경제의 시대로 진입하면서 중소기업의 역할은 더욱 주목받고 있음(산업연구원, 2001: 3).
- 그러나,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금융기관이 자금을 공급함에 있어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을 기피함에 따라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에는 자금 확보에 있어 차별적인 금융격차(Finance Gap), 이른 바 맥밀란갭(Macmillan Gap)⁸⁾이 존재하여 정상적인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이 곤란한 경우가 많음.

8) 1931년 케인스 등이 참여한 맥밀란위원회 보고서(The Report of the Committee on Finance and Industry, June 1931)가 1920년대 영국에서 상대적으로 소규모 기업이 장기자금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한 이후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자금 확보의 격차를 나타내는 용어로 "Macmillan Gap"이 사용되고 있음(박형근 외, 2007: 2).

- 이러한 금융격차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높은 거래 비용, 취약한 담보력과 교섭력, 불확실한 사업전망 등으로 외부자금조달에 있어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발생함.
-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금융기관들과의 여신거래 등에 의해 요구되는 공개적 객관적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으므로 금융기관들은 중소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성 예측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 그 결과 중소기업은 금융 거래 시 역선택의 문제 또는 조달자금 사용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의 문제 등으로 인해 대기업에 비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어 왔음(이기영, 2006: 206).
- 이처럼 중소기업금융과 관련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와 중소기업이 지니는 외부경제 효과⁹⁾ 등 시장실패를 보정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부는 공적인 신용보증제도를 통해 시장에 적극 개입하게 됨.
-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는 공신력 있는 신용보증기관이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부족한 신용력을 보완해 줌으로써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사업자금을 공식적인 금융시장에서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중개시스템을 말함.
- 신용보증제도에 대한 이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신용보증기금, 2006: 63-64).
 - 첫째, 신용보증제도의 공통적인 목적은 신용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제도

9) 외부경제는 사적비용이 사회적 비용을 상회하거나 사적편익이 사회적 편익을 하회하는 경우에 존재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는 대부분 신생기업 또는 혁신적 기업으로서 사회적 기여가 높을 가능성이 크고도 불구하고 위험도가 높아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공급받지 못하거나 대출금리가 높게 적용되는 등의 사적비용이 크게 높아지게 되는데 이에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금융시장에 존재하는 시장실패를 보정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시킴(이기영, 2006: 207-208).

권 금융을 원활하게 제공하는 것에 두고 있음.

- 둘째, 신용보증제도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성에 정부출연 등 공적요소를 포함하고 있음. 대부분 중앙 및 지방정부, 또는 국제기구나 비정부기구 등이 보증을 직접 제공하거나 제도운용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보증과 보험의 형태로 지원함.
 - 셋째, 신용보증제도는 기본적으로 시장원리에 입각한 금융중개시스템임. 즉, 금융시장의 실패 또는 불완전성으로 금융이용의 기회가 봉쇄되어 있는 중소기업 등의 정상적인 자금조달을 매개하는 금융시스템임.
- 이상과 같은 신용보증제도의 공통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면, 신용보증제도는 외형상 신용력이 미약한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그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잠재적 신용력을 바탕으로 공신력 있는 제3자가 채무불이행위험을 경감시켜 주는 독자적인 금융시스템으로 정의할 수 있음(최성호, 2006).
-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제도의 이론적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 바,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를 금융시장의 낙후성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견해¹⁰⁾와 금융시장의 본질적 실패¹¹⁾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의 두 가지로 구분됨(산업연구원, 2001:4).
- 어떠한 경우에도 신용보증제도는 물적 담보력은 약하지만 사업성과 성장잠재력이 유망한 기업에 대하여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시장의 결함을 보완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금융격차를 완화하고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국

10) 신용보증제도를 금융시장의 잘못된 관행, 즉 물적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이나 대기업에 편중된 여신 등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적 금융시스템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경제의 각 부문이 선진화되면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의 의미는 약화되게 됨.

11) 금융시장에서 자금 공급자가 제공하는 자금과 수요자가 요구하는 자금의 질적인 괴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실패가 발생하며, 신용보증제도는 이러한 괴리를 제거하는 중개시스템으로 이해함.

민경제에 대한 기여를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이처럼 자생적 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신용보증제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저리의 자금을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생력 기반의 강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최근 들어 중소기업의 금융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적 신용보증을 통한 금융지원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하고 있음(김자봉, 2008: 10).
 - 즉, 중소기업의 주된 자금조달 원천인 은행은 자산건전성 악화와 BIS비율의 하락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현실적으로 곤란해지고 있고 자본시장은 그 기능이 지극히 미미한 상황에 있으므로 정책금융 특히 신용보증을 통한 지원이 불가피해 짐.
- 신용보증제도가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지원 정책으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물론 신용보증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함(조덕희 외, 2001:1).
- 그러나 이와 같은 공적 신용보증제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음(강동희, 2006: 4-5).
 - 비판론자들은 공적자금으로 유지되는 보증제도는 인위적인 이자율 인하, 과도한 대출사용의 장려, 원리금 상환의 대위변제로 인한 금융기관의 사후관리 소홀 등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키고, 수익성 없는 기업을 생존시켜 금융시장의 왜곡을 초래한다고 주장함.
 - 특히, 신용보증제도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용보증으로 인한 추가금융 창출이 실제 과대평가된 경향이 있고, 금융기관이 대출 포트폴리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용보증기관에 이전시키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신용보증제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함(Vogel and Adams, 1997).¹²⁾

- 그러나 이러한 비판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공적 신용보증제도의 연혁적 생성 배경, 사회문화적 풍토, 금융시장의 발달정도에 따라 각국마다 활발하게 운영되면서, 중소기업 금융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보증운영, 적절한 제도설계와 감독 등을 도입한다면 매우 효과적인 제도로 발전할 수 있음(Levitsky, 1997; 강동희, 2006에서 재인용).
- 신용보증제도는 그 운용주체와 공급 메커니즘 등의 기준으로 구분하면, 크게 유럽식 상호보증제도(Mutual Guarantee System),¹³⁾ 미국식 용자보증제도(Loan Guarantee System),¹⁴⁾ 그리고 금융시장 발전이 늦은 아시아 지역에서 운용되는 공공기관 보증제도(Public Guarantee System)¹⁵⁾ 등으로 구분됨.

2. 우리나라 신용보증제도의 특징

- 우리나라에서 신용보증제도의 시초로는 1961년 중소기업은행의 설립과 함께 마련된 신용보증준비금제도를 들 수 있지만, 1976년 신용보증전문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설립됨으로써 신용보증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
- 이후 1989년 신기술사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설립되어 복수경쟁체제로 전환하였음.

12) 이로 인해 Green(2003)은 정보의 비대칭과 높은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신용정보회사가 신용보증제도보다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음.

13) 상호보증제도는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가 회원의 금융기관대출에 보증을 하는 제도로 독일 등 유럽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음(박형근 외, 2007: 6).

14) 용자보증제도는 일정한 보증조건을 미리 정해두고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에 대해 그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금융시장이 발달한 미국, 영국 등의 국가들이 경제안정을 위해 보호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나 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영세 기업에 대한 대출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박형근 외, 2007: 6).

15) 공공보증제도는 별도로 독립된 공적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보증을 공급하는 형태로 우리나라와 일본 등 주로 아시아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음.

- 또한,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지역 내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 지방중소기업의 채무이행을 보증해 주는 11개의 지역신용보증조합이 설립되었고, 국회는 이들 지역조합을 지원하기 위해 1999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제정함으로써 현재 16개의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광역자치단체별로 설립·운영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신용보증제도는 일본, 대만 등 아시아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 보증제도의 형태를 갖추고 있음.
 - 특징으로는 첫째, 정부재정 및 금융기관 출연을 통하여 높은 공신력을 확보하고 있고 둘째, 독립된 보증기관들이 보증대상기업에 대한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업무 기능을 갖추고 보증운영정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며 셋째, 정책적 기능면에서 가장 강력한 아시아식 공공기관보증제도로 정부가 신용보증정책을 주도하고 보증운영 전반에 대하여 개입하는 체제임(정인라, 2006:7-8).
- 한편,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제도는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그리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3원화된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 이들 신용보증기관들은 당초 각각 상이한 법령과 목적에 근거하여 설립된 관계로 고유 업무와 운영 실태에 있어서 일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 보증지원의 큰 틀은 모두 유사하고 동일한 상대처에 대한 동일한 보증상품을 거의 같은 업무방식과 절차로 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즉, 3대 보증기구의 설립 시 의도했던 보완관계가 아닌 실질적인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동일기업에 중복 과다 보증을 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표 2-1> 신용보증기관 비교

구 분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설치연도	1976. 6	1989. 4	1996-2003
법령근거	신용보증기금법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설립목적	담보능력 미약기업 채무보증 신용정보의 효율적 관리운영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공급	담보력 미약 소기업 채무보증
대상기업	제한없음	중소기업 및 신기술사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주요업무	· 신용보증, 사고구상채권 관리 · 신용조사, 신용보험, 기업경영 지원 등	· 기술보증, 사고구상채권 관리 · 기술평가, 기술경영지도, 신용 조사와 정보관리	· 신용보증, 사고구상채권 관리 · 신용조사와 정보관리
기금조성 (출연금)	정부·금융기관	정부·금융기관	정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감독기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
보증료율	· 중소기업: 0.5~3.0% · 대기업: 3.5%	· 중소기업: 0.5~3.0% · 중소기업이외: 3.5%	· 중소기업: 0.5~2.0%
법정운용배수	20배	20배	15배
보증종류	대출, 어음, 이행보증 등	대출, 어음, 이행보증 등	대출, 어음, 이행보증 등
보증한도	30억(양기금 합산), 100억(특별보증)	30억(양기금 합산), 100억(특별보증)	4억원
재보증	없음	없음	재단연합회 50%

3.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설립배경 및 의의

- 1995년 2월 정부의 신경제추진회의에서 확정된 중소기업지원 9대 시책으로, 담보력이 취약한 지방소재 영세중소기업과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원활한 신용보증 지원을 위하여 ‘지역신용보증조합’의 설립을 추진키로 하였음.
- 이후 「민법」 상의 비영리 법인의 형태로 1996년 경기도에서 지역신용보증 조합이 설립되었으며 1999년 9월까지 모두 11개의 지역신용보증조합이 설립 되어 운영되었음.

- 그러나, 당시의 지역신용보증조합은 기존 중앙신용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과 동일한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보증서의 자산 위험 가중치를 100% 적용(중앙신용보증기관 10%) 받고 각종 세제혜택의 제한과 보증부 대출시 은행의 차등금리를 적용받고 있을 뿐 아니라 안정적 보증재원 조성방안이 없어 보증기관으로서의 신뢰성 확보에 애로가 있는 등 제도적으로 불리한 여건 하에 있었음.
- 이에 국회의원과 지역신용보증조합,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중앙신용보증기관과 동등한 수준의 책임과 권리를 부여받기 위하여 특별법 제정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음(서안정, 1999:56).
- 그 결과, 1999년 9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제정, 2000년 3월 시행되는 결실을 보았고, 이로 인해 기존에 자치단체별로 설립·운영 중에 있던 지역신용보증조합이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전환하였음.
- 법 제정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중앙중심의 신용보증제도 운영으로 소외되어 왔던 지방영세중소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현장밀착적인 신용보증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신용보증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소액보증지원을 확대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산업육성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켰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보증재원의 조달이 확대됨에 따라 보증지원의 확대는 물론, 신용을 매개해 주는 기능을 통하여 신용사회의 기반을 정착시키고, 나아가 선진경제의 실현을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음.
- 결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출범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부응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

을 통해서 현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의 중심적인 위치 및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표 2-2>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현황(2007년)

(단위 : 개, 억원)

구 분	보증공급		보증잔액		보증사고		대위변제		구상권 회수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경 기	15,158	7,628	36,668	12,034	1,358	413	560	203.2	792	225.8
경 남	5,082	1,048	10,776	2,060	170	27	98	17.1	83	15.3
광 주	1,706	432	5,371	1,101	154	30	171	32.2	58	14.5
대 구	9,692	2,426	16,921	3,571	363	76	228	47.4	115	28.6
대 전	1,942	471	4,241	926	131	20	106	11.5	50	12.2
부 산	9,067	2,538	12,613	3,446	354	92	114	27.3	221	57.8
인 천	7,142	1,809	11,283	2,754	276	51	193	37.9	133	25.3
충 남	3,571	1,300	7,231	2,002	223	58	145	29.1	63	21.3
충 북	2,459	616	4,395	1,005	108	17	36	6.2	50	11.0
강 원	3,872	1,182	4,867	1,402	120	28	114	18.0	34	15.9
서 울	23,323	5,206	61,349	11,169	1,774	200	1,159	85.4	437	113.0
울 산	2,140	705	2,658	853	21	8	16	6.8	15	4.6
경 북	2,814	720	6,307	1,237	159	33	131	18.3	46	17.2
전 남	2,854	620	4,346	944	95	16	62	9.7	29	6.6
전 북	1,982	347	4,331	745	174	36	118	20.0	29	10.7
제 주	1,778	467	2,451	620	18	5	10	1.9	1	0.4
계	94,582	27,515	195,808	45,867	5,498	1,109	3,261	572	2,156	580.2

자료 :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2007:24)

-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2007년 말 현재 보증잔액은 195,808개 업체에 4조 5,867억 원으로, 특히 소상공인 183,528개 업체에 3조 5,924억 원의 보증을 공급(업체수 기준 93.7%, 보증잔액 기준 78.3%). 함으로써 소상공인 전담보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
- 금액별 보증현황을 살펴보면, 3천만원 이하의 소액보증이 163,699개 업체에 2조 4,767억 원으로 전체 보증잔액의 54.0%를 차지하였고,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9.3%,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9.1%,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10.9%, 2억원 초과 6.7%의 순으로 나타났음.

<표 2-3>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금액별 보증현황(2007년)

(단위 : 개, 억원)

구 분	2006			2007			증가율	
	업체수	잔 액	점유율	업체수	잔 액	점유율	업체수	잔 액
3천만원 이하	137,009	22,241	55.2	163,699	24,767	54.0	19.5	10.4
5천만원 이하	19,429	7,728	19.1	22,587	8,846	19.3	16.3	14.5
1억원 이하	4,453	3,493	8.6	5,376	4,177	9.1	20.7	19.6
2억원 이하	2,662	4,136	10.3	3,237	4,997	10.9	21.6	20.8
2억원 초과	833	2,730	6.8	909	3,080	6.7	9.1	12.8
계	164,386	40,326	100.0	195,808	45,867	100.0	19.1	13.8

- 이처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주된 신용보증 대상은 3천만원 이하의 소액보증의 소상공인이며, 이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설립 목적과 같이 담보력과 신용도가 낮은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유통의 원활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의 안정에 크게 기여했음을 알 수 있음.

제2절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운용체계 및 현황

1. 서울신용보증재단 일반 현황

1) 설립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유통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1999년 3월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 설립목적

- 서울지역 특성에 따른 지역산업의 육성과 서울시정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금융지원으로 경제정책의 효율적 수행
- 담보력이 미약한 지역 내 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유통 지원으로 기업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공적 금융의 매개 역할 수행
- 기업활동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지원으로 서울 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
- 신용을 중요시 하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신용관리 능력을 향상해 신용사회 기반 조성

<그림 2-1>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설립 목적



3) 연혁

- | | | |
|-------|-----|-------------------------------|
| 1999년 | 6월 | - 서울신용보증조합 설립(서울특별시 조례) |
| 2000년 | 3월 | -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전환(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 |
| 2001년 | 3월 | - 중소기업 우수기관 표창(중소기업특별위원회) |
| 2003년 | 4월 |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평가·추천업무 위탁 |
| 2003년 | 9월 | - 중소기업 금융지원상 수상(중기청, 산업포장 수상) |
| 2006년 | 4월 | - 소상공인지원센터 관리·운영 수탁 |
| 2006년 | 5월 | - 중소기업지원 우수단체 표창(산업자원부장관) |
| 2006년 | 9월 | -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
| 2007년 | 9월 | -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
| 2007년 | 12월 | - 제12회 중소기업 금융지원상 수상(산업포장) |
| 2007년 | 12월 | - 서울시 청렴시책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
| 2008년 | 9월 | -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우수기관 선정 |

4) 주요업무

○ 신용보증

-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을 평가하여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채무에 대한 보증을 실시함(기본재산의 15배 범위내).

○ 구상채권 관리

- 신용보증기업이 부실화된 경우 재단이 채무자를 대신해 금융기관에 보증 채무를 이행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의 권리와 회수를 수행함.

○ 기본재산 관리

- 신용보증의 기본재원이 되는 서울시와 정부 그리고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유지, 관리함.

○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을 선정해 장기 저리의 서울시 자금을 지원함.

○ 소상공인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창업교육, 컨설팅, 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관리 및 운영함.

5) 재무현황

○ 재무제표 요약(2008년 결산기준)

－ 대차대조표

(단위 : 억원)

자 산		부채 및 자본	
유 동 자 산	4,257	유 동 부 채	692
		비유동부채	107
		부 채 총 계	799
비유동자산	138	출 연 금	3,794
		이익잉여금	△138
		자 본 총 계	3,596
자 산 총 계	4,395	부채 및 자본 총계	4,395

－ 손익계산서

(단위 : 억원)

구 분	금 액
(A) 영 업 수 익	357
- 보 증 료	133
- 이자수익	203
- 수입수수료	11
- 손해금수입	10
(B) 영 업 비 용	269
- 재보증료	48
- 관리업무비	176
- 구상채권상각충당금전입	8
- 대위변제준비금전입	37
(C) 영업외수익	3
(D) 영업외비용	6
당기순이익(A-B+C-D)	85

－ 연도별 당기손익 현황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금 액	△113억원	△96억원	△98억원	△39억원	97억원	85억원

2.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현황

1) 신용보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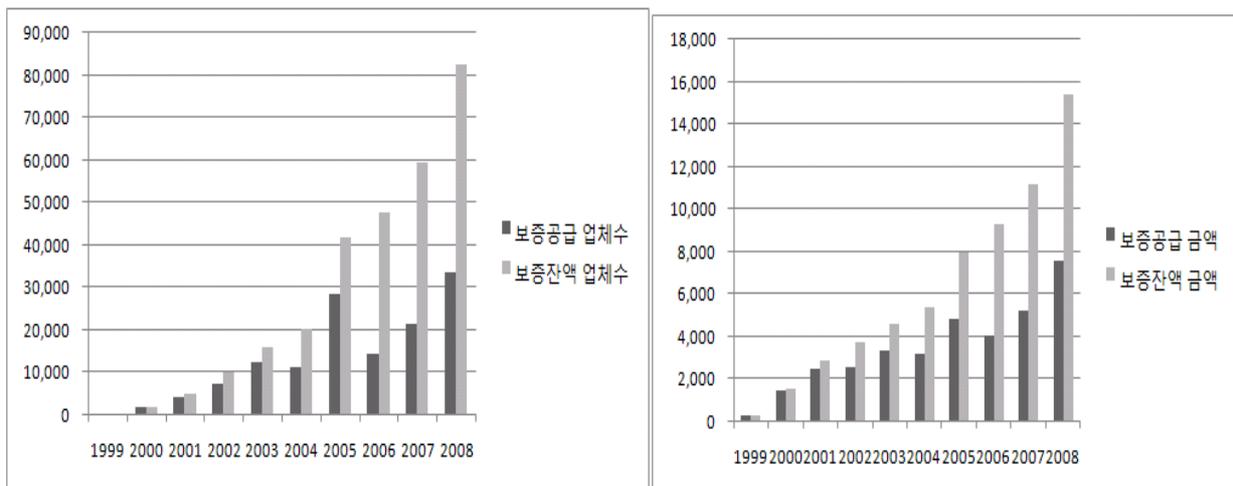
- 1999년 재단 설립 이후 2008년 말까지 10년 동안 148,336건, 3조 5190억원 공급
 - 보증 잔액은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말 기준 90,378건, 1조 5381억원임.
 -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수(67만개) 중 약 22% 보증지원

<표 2-4> 신용보증 공급현황

(단위: 개, 억원)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합계
보증 공급	업체수	407	1,809	4,257	7,622	12,439	11,534	28,517	14,300	21,627	33,585	136,097
	금액	325	1,522	2,510	2,609	3,379	3,179	4,856	4,047	5,206	7,556	35,189
보증 잔액	업체수	400	1,943	5,074	10,064	16,217	20,487	41,692	47,693	59,360	82,583	82,583
	금액	317	1,547	2,880	3,740	4,606	5,405	7,984	9,326	11,169	15,380	15,380

<그림 2-2> 신용보증 공급현황(1999-2008)



○ 소상공인 중심의 신용보증기관으로 특화

- 2006년까지 총 보증공급 업체수(금액)기준 소상공인 90.9%(68.0%), 소기업 8.2%(25.0), 중기업 1.0%(7.0%)의 비중을 차지함.
-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전체 신용보증공급 중 5천만원 이하의 소액보증이 업체수 기준 95.5%, 금액 기준 68.0%의 비중을 차지함.

<표 2-5> 기업규모별 신용보증공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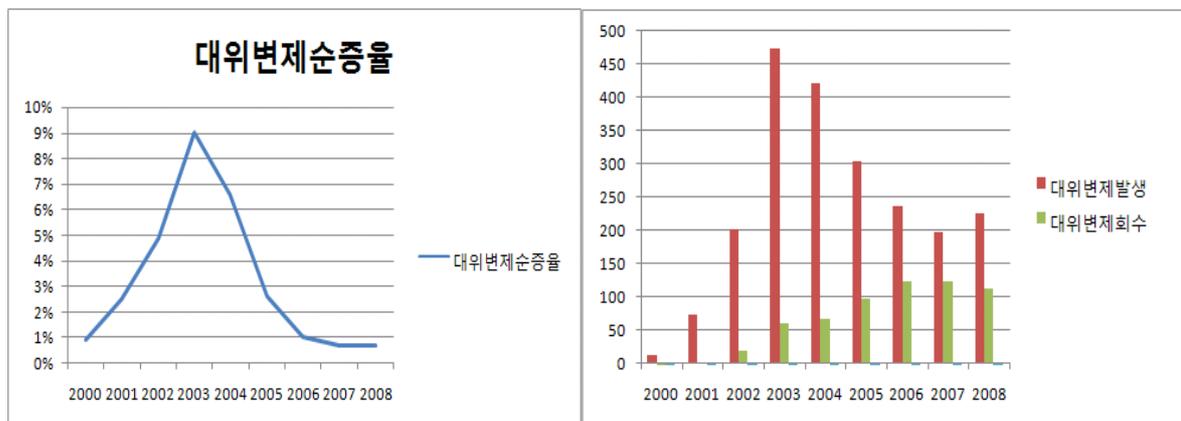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합계
소상공인	업체수 (비중)	231 (56.8)	1,032 (62.9)	2,450 (69.8)	5,040 (86.4)	7,893 (91.8)	7,014 (90.8)	24,177 (96.0)	10,629 (93.0)	58,466 (90.9)
	금액 (비중)	11,610 (35.7)	50,586 (33.2)	93,936 (37.4)	159,284 (61.1)	256,757 (76.0)	235,324 (74.0)	413,317 (85.1)	305,068 (75.4)	1,526,886 (68.0)
	업체당 평균금액	50.3	49.0	38.3	31.6	325.0	336.0	17.1	28.7	26.1
소기업	업체수 (비중)	142 (34.9)	518 (31.6)	936 (26.7)	748 (12.8)	680 (7.9)	639 (8.3)	917 (3.6)	663 (5.8)	5,243 (8.2)
	금액 (비중)	15,432 (47.5)	77,458 (50.9)	121,187 (48.3)	83,737 (32.1)	70,413 (20.8)	61,467 (19.3)	56,345 (11.6)	74,778 (18.5)	560,817 (25.0)
	업체당 평균금액	108.7	149.5	129.5	111.9	103.5	96.2	61.4	112.8	107.0
중기업	업체수 (비중)	34 (8.4)	90 (5.5)	122 (3.5)	45 (0.8)	28 (0.3)	75 (1.0)	94 (0.4)	131 (1.1)	619 (1.0)
	금액 (비중)	5,457 (16.8)	24,116 (15.8)	35,886 (14.3)	17,843 (6.8)	10,766 (3.2)	21,149 (6.7)	15,897 (3.3)	24,890 (6.1)	156,024 (7.0)
	업체당 평균금액	160.5	268.0	294.1	397.0	384.5	282.0	169.1	190.0	252.1
합계	업체수 (비중)	407 (100.0)	1,640 (100.0)	3,508 (100.0)	5,833 (100.0)	8,601 (100.0)	7,728 (100.0)	25,188 (100.0)	11,423 (100.0)	64,328 (100.0)
	금액 (비중)	32,500 (100.0)	152,160 (100.0)	251,012 (100.0)	260,884 (100.0)	337,936 (100.0)	317,940 (100.0)	485,559 (100.0)	404,736 (100.0)	2,242,727 (100.0)
	업체당 평균금액	80	93	72	45	39	41	19	35	-

2) 보증사고 및 구상권

-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총 보증사고발생 10,327개 업체, 2,588억원, 이 중 3,319개 업체(정상화율 32.1%), 792억원(정상화율 30.%) 정상화, 보증사고순증 7,008개 업체, 1,807억원
-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총 대위변제발생 6,027개 업체, 1,729억원, 이 중 887개 업체(회수율14.7%), 360억원(회수율 20.8%) 회수, 대위변제순증 5,140개 업체, 1,370억원
- 1999년부터 2006년까지 특수채권 발생 1,696개 업체, 627억원, 이 중 7개 업체, 10억원 회수, 2006년 말 특수채권잔액 1,689개 업체, 617억원

<그림 2-3> 대위변제 발생 현황(2000-2008)



3) 기본재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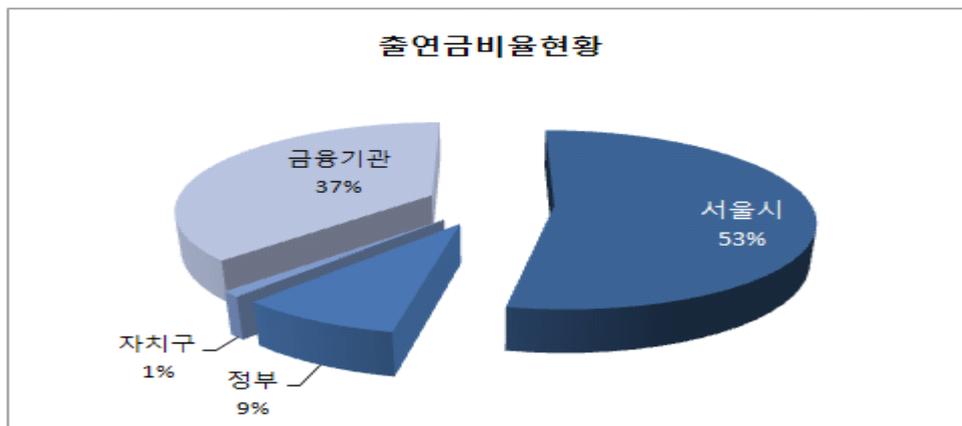
- 재단 설립 이후 총 출연금은 2008년말 까지 총 3,734억원임
 - 1999년 이후 2008년까지 서울시 1,985억원(53%), 금융기관 1,390억원(37%), 중앙정부 320억원(8.5%), 자치구 39억원(1.0%)순임

<표 2-6> 연도별 출연금 조성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합계
서울시	500	100	0	120	159	120	590	22	274	100	1,985
정부	30	50	82	80	42	12	10	8	6	0	320
자치구	0	0	0	0	2	14	10	4	3	6	39
금융기관	425	217	106	114	107	2	1	195	112	111	1,390
합계	995	367	188	314	310	148	611	229	395	217	3,734

<그림 2-4> 출연금 비율현황



4)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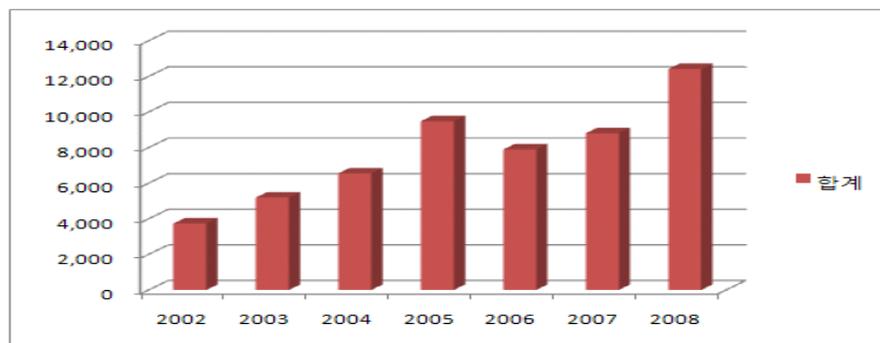
- 2003년 4월 서울시로부터 서울시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지원 업무를 수탁받음에 따라 신용보증과 정책자금을 일괄 지원하는 원스톱 시스템 구축.
 - 2003년부터 6년 동안 총 117,228건, 5조 344억원의 자금을 지원.
 - 신용보증과 함께 One-Stop 지원으로 대출실행율 향상: 68%('02)⇒90%('08)

<표 2-7>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내역

(단위: 억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합 계	3,731	5,197	6,553	9,480	7,894	8,804	12,416
중소기업육성기금	2,838	3,084	3,553	6,510	4,720	5,783	6,016
시중은행협력자금	893	2,113	3,000	2,970	3,174	3,021	6,400

<그림 2-5>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내역



5) 서울시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 2006년 4월 서울시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 지원기관인 소상공인지원센터의 관리·운영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함에 따라 신용보증 및 자금지원과의 연계를 통한 소기업·소상공인 전문종합지원기관으로의 기틀 마련
 - － 2006년부터 3년간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창업교육 276회 실시, 21,255명의 교육인원 수료
 - － 2006년부터 3년간 소상공인 창업자금·임차자금 특별지원 5421건, 1,080억원 지원

<표 2-8>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창업교육)

(단위: 회, 명)

구분	2006	2007	2008
교육회수	84	88	104
수료인원	4,680	7,407	9,168
자체교육	2,133	2,491	2,764
유관기관 공동	2,547	4,916	6,4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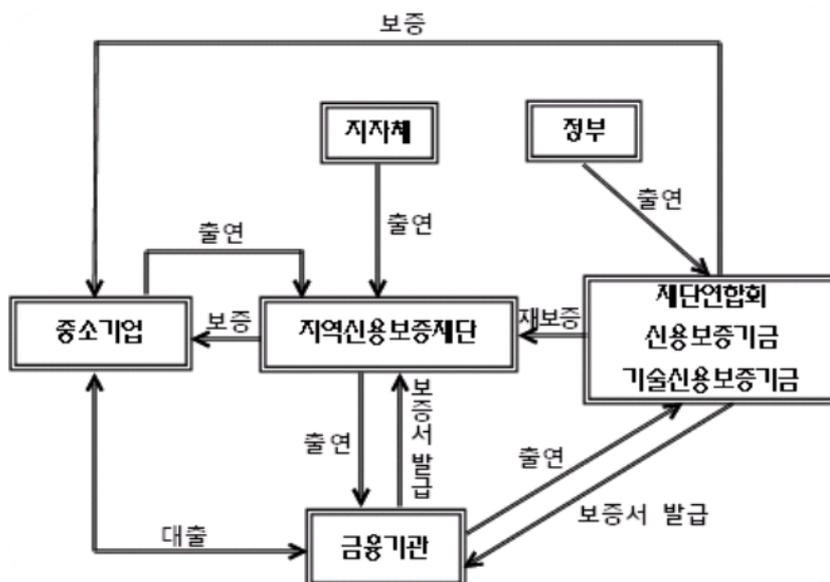
<표 2-9> 소상공인 창업자금 · 임차자금 특별지원

(단위: 건, 억원)

구분	2006		2007		2008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창업자금	732	134	1,846	340	2,698	569
임차자금	27	8	54	14	64	15
합계	759	142	1,900	354	2,762	584

3.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운용체계

1) 기본구조



○ 이원적 신용보증 구조

- 우리나라 신용보증제도는 공적 신용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그리고 각 지역의 신용보증재단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이원적 구조
- 공공기관보증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 보증기관, 금융기관, 중소기업의 3자 관계가 뚜렷하게 정립되어 있고, 보증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운영되며, 강한 공적 지원과 통제를 받는 특징이 있음.

2) 조직 현황

- 재단은 1999년 팀제를 근간으로 한 3팀에서 업무영역의 확대 및 고객수요의 대응성에 발맞춰 확대·개편되어 2007년 3본부 5부 2실(영업점: 1부 3지점 7출장소)로 개편되고, 2009년 현재 3본부 6부 2실(영업점 11지점)로 운영되고 있음.

<그림 2-6> 서울신용보증재단 조직도



- 경영지원본부는 기획부, 총무부, 창의혁신팀, 전산실로 구성되어 있고, 기능적으로는 일부 영업점 지원기능을 수행하나 전체 조직을 조망하고 업무 전반을 기획·관리하는 경영관리적 기능을 수행

- 고객지원본부는 신용보증부, 자금지원부, 창업지원부, 채권관리부로 구성되어 있고, 채권관리 업무와 서울시 수탁업무 등 영업점 지원기능을 수행.
- 영업본부는 영업점(11영업점)으로 구성, 신용보증, 자금지운, 구상권관리 등 재단의 고유업무를 수행

3) 인력현황

- 재단 임직원은 1999년 16명에서 출발하여, 2009년 7월 현재 152명으로 약 10배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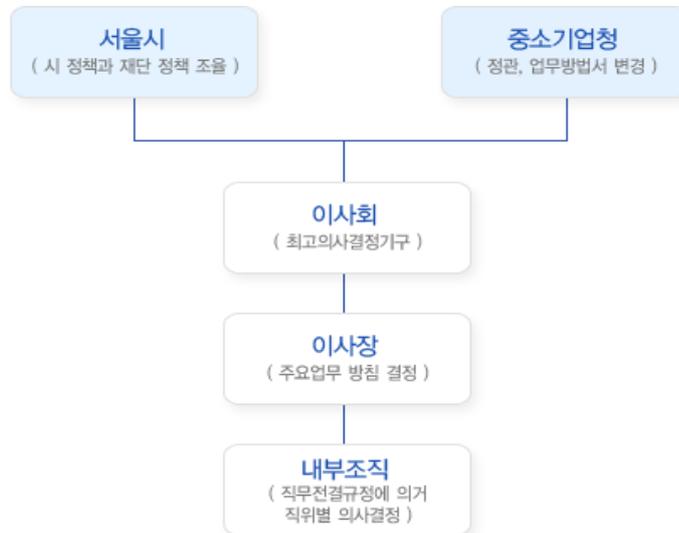
<표 2-10> 서울신용보증재단 정원 현황

구분	계	이사장	1급	2급	3급	4급 이하	별정직원
정원	153	1	6	11	27	106	2
현원	152	1	6	11	25	107	2

4) 의사결정체계

- 서울시와 중소기업청의 중복적 관리/감독 체계유지
 - 현재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정관 및 업무방법 등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는 신용보증제도 일반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청의 지도/감독을 받음
 - 반면, 서울시의 출자기관으로서 시의 주요한 정책과 특히 중소기업 지원관련 정책의 반영을 위해서는 서울시의 지도/감독을 받는 구조
 - 이 밖에도 내부적으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와 이사장, 각 직위별 의사결정구조를 갖고 있는 내부조직으로 구성됨.

<그림 2-7> 서울신용보증재단 의사결정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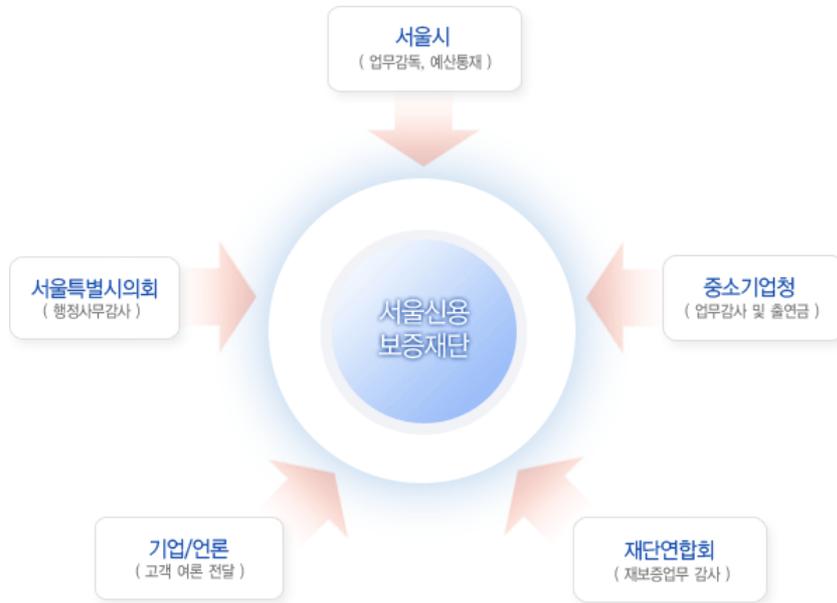


5) 감독체계

○ 감독기관의 다중성

- 제도적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업무감시 및 출연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인 중소기업청의 관리/감독을 받고
- 일상적 업무감독 및 예산통제 등은 서울시의 통제 하에 있으며
- 매년 한 차례의 행정사무감사 혹은 필요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시 의회의 통제를 받는 다중 감시 하에 있음.
- 이 외에도 지역신용보증재단연합회로부터 재보증업무에 대한 감사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고객과 언론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각종 비판과 여론수렴 과정을 거침.
- 이런 다중적 감시/통제 시스템은 조직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자칫 기관운영의 독립성을 저해하여 창의적 활동을 방해할 소지가 있음.

<그림 2-8>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감독체제



제3절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절차

1. 일반적 보증업무절차

보증절차		업무처리내용 요약
1	보증상담 및 서류교부	보증상담, 상담내용 전산입력, 서류교부 및 준비서류 안내
2	신청서류접수	신청서류 구비여부 점검 및 접수, 담당자 배정, 전산 접수등록
3	신용조사	서류심사, 측면(간접)조사 및 현장실사
4	보증심사결정	보증심사, 지원여부결정 및 결정내용 통지
5	신용보증약정체결, 전자보증서 발급	신용보증약정 체결, 보증료 수납 및 신용보증서 발급
6	재보증통지 및 사후관리	재보증 통지, 보증기한 및 보증료기일도래 관리, 상환유도 등 보증사후관리

- 일반적인 보증업무의 경우 대상기업이 신청서류를 접수하는 단계에서부터 보증업무가 시작되며 이후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보증지원 여부를 결정함.
 - 최근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신용조사 및 현장실사를 신속히 실시하여 조속히 보증여부를 결정하도록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있음.
- 신용조사 사항 및 내용
 - 대상 기업에 대한 신용조사는 크게 인적조사, 물적조사, 그리고 재무적 조사로 분류될 수 있음.
 - 인적조사는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에 대한 조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

영자의 경영능력, 활동력, 인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함.

- 물적 조사는 신청 기업의 제품이나 설비 상태 등 물적 부분에 대한 조사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기업의 생산설비를 중심으로 제품에 이르기까지 전반적 물적 조사를 시행함.
- 재무적조사는 재무상황과 자금상황을 포함하여,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기초로 기업의 재무내용을 계수적으로 파악해 장래성까지도 예측하는 조사를 의미함.

2. 전자(Cyber)보증업무절차

보증절차		절차별 업무처리내용	
		금융기관	재단
1	보증상담	보증상담, 상담내용 전산입력, 서류교부 및 준비서류 안내	상담기업 전산접수 및 분류
2	신청서류접수	신청서류 접수 및 접수서류 재단에 이송	신청서류 접수 및 담당자 배정, 전산등록 및 측면조사 등
3	신용조사	(해당사항 없음)	담당자의 현장조사 및 측면조사 등
4	보증심사결정	(해당사항 없음)	보증심사, 지원여부 결정 및 보증승인내용 전산통지
5	신용보증약정체결 전자보증서 발급	보증승인내역 조회 및 보증료 수납, 신용보증실행(전자보증서 발급)	신용보증약정체결, 별도의 신용보증서 발급 없음
6	대출실행	대출실행, 대출실행 전산통지	대출실행통지 전산접수, 재보증 통지, 보증사후관리

○ 전자보증협약은행

- 현재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전자보증협약을 맺은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한국씨티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sc제일은행의 경우 관련 절차를 사이버상으로 처리하여 불필요한 서류제출을 막고, 보증대출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3.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업무제도

1) 신용보증대상

○ 보증대상기업

- 본점 혹은 주사업장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기업 등(신용보증규정 제4조)을 보증대상기업으로 함.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와 법인에 대한 보증을 업무로 하기 때문에 비영리사업자 혹은 그 규모가 큰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의 기업이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보증대상에서 제외됨.
- 또한 재보증제한업종으로 규정된 주류도매업, 골프장, 도박장, 담배 소매업, 귀금속 중개업, 금융관련 서비스업 등은 제한업종으로 보증제한을 적용받음.

○ 기업규모 분류상 대상 기업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상공인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상시종업원 10인미만 기업, 도소매업 및 음식업점, 기타서비스업의 경우 상시종업원 5인미만이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상시종업원이 50인 미만인 기업이며, 도소매업, 음식점업 및 기타서비스의 경우 상시종업원 10인 이하가 대상기업임.

○ 보증금지 및 제한대상 기업

- 신용보증규정 제6조에 따라 채권이 미회수된 경우 원칙적으로 보증이 불가능하지만, 이미 보증을 받은 기업, 구상채권회수보증과 구상권 행사 유예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보증이 가능함.
- 휴업중인 기업, 금융기관 연체가 빈번한 기업, 신용관리대상기업, 부실자료 제출기업 등은 원칙적으로 보증이 불가능하지만,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경우 신규보증이 가능한 경우도 있음.

2) 신용보증의 종류

○ 대출보증

-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의 대출이나 급부 등을 받는 경우에 제공하는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을 의미함.
- 자금의 용도에 따라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됨.
- 보증상대 금융기관으로는 현재 시중은행, 지방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해당됨.

○ 지급보증의 보증

- 기업의 채무를 금융기관이 보증하는 경우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에 따라 구상에 응해야 하는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을 의미함.
- 지급보증의 보증의 주채무 분할취급 또는 회전취급하는 경우에는 “근보증”으로 취급

○ 비은행대출보증

- 기업이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에서 자금의 대출 등을 받은 경우에 부담하게 되는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을 의미함.

- 시설대여 보증
 - 기업이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 기타 보증
 - 어음보증, 이행보증, 납세보증 등

3) 보증료

- 보증료 징수시점
 -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보증서 발급시에 징수하며, 여타 보증의 경우 보증을 실시하는 때에 보증료를 징수함
- 보증료율
 - 기업의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정하는 요율에 따라 보증료를 징수함.
 - 기준이 되는 보증료율은 1% 수준임.
 - 연체보증료는 대상금액의 연 10%를 부과함.
- 납입방법
 - 전기간 납부의 경우에는 보증실행일부터 보증만기일까지 일시 수납하고 적수 비율 납부의 경우 보증료 추가납입 또는 보증료환급이 발생하지 않는 일자를 계산하여 납부함.
- 보증료의 환급
 - 보증서 발급 후에 대출이 미실행된 경우, 주채무가 감액 실행된 경우, 보증료 납입기일내에 보증채무가 해지된 경우, 기한단축이 된 경우에는 일정 비율로 보증료를 환급함.

4) 보증한도 및 한도사정방법

○ 기업당 보증한도

- 1개 기업당 원칙적으로 4억원 이내로 한정함.

○ 보증한도 사정방법

- 운전자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제조업의 경우 연간 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분기매출액을 한도로 함.
- 시설자금의 경우 당해시설 소요자금의 90% 이내(계약금과 기납입 중도금을 제외하고, 향후 납입할 금액의 90%)
- 최근 경제위기에 따라 매출액의 1/2까지를 보증하고 있음.

제3장 신용보증의 거시적 성과 분석

제1절 VAR분석의 개요

1. VAR모형의 개념

- VAR모형(Vector Autoregression Model)은 거시경제변수의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예측 및 내생변수의 변화에 따른 영향 및 파급효과를 분산분해 및 충격반응분석을 관찰하여 분석하는 다변량 시계열 분석모형임.
 - 분산분해(variance decomposition)를 통하여 각각의 내생변수의 변동 중에서 이들 변수들이 전체 변동에 기여한 부분의 상대적 크기를 분석할 수 있음.
 - 충격반응분석(impulse response analysis)은 한 변수의 충격에 다른 변수의 반응경로를 파악하는 분석방법으로서 이를 통하여 어떠한 한 변수의 변화가 내생변수에 미치는 동태적 효과를 파악할 수 있음.
- VAR모형은 전통적 회귀분석모형¹⁶⁾과 일변량 시계열 분석모형¹⁷⁾의 한계를 보완한 모형으로서 실제 관찰되는 주요 경제변수의 시계열자료가 주는 정보를 활용하여 현실경제를 분석하는데 주로 활용되고 있음.
- 정연승 외(2007)의 연구에서는 VAR모형을 활용하여 보증이 간접적으로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여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실증분석하였고, 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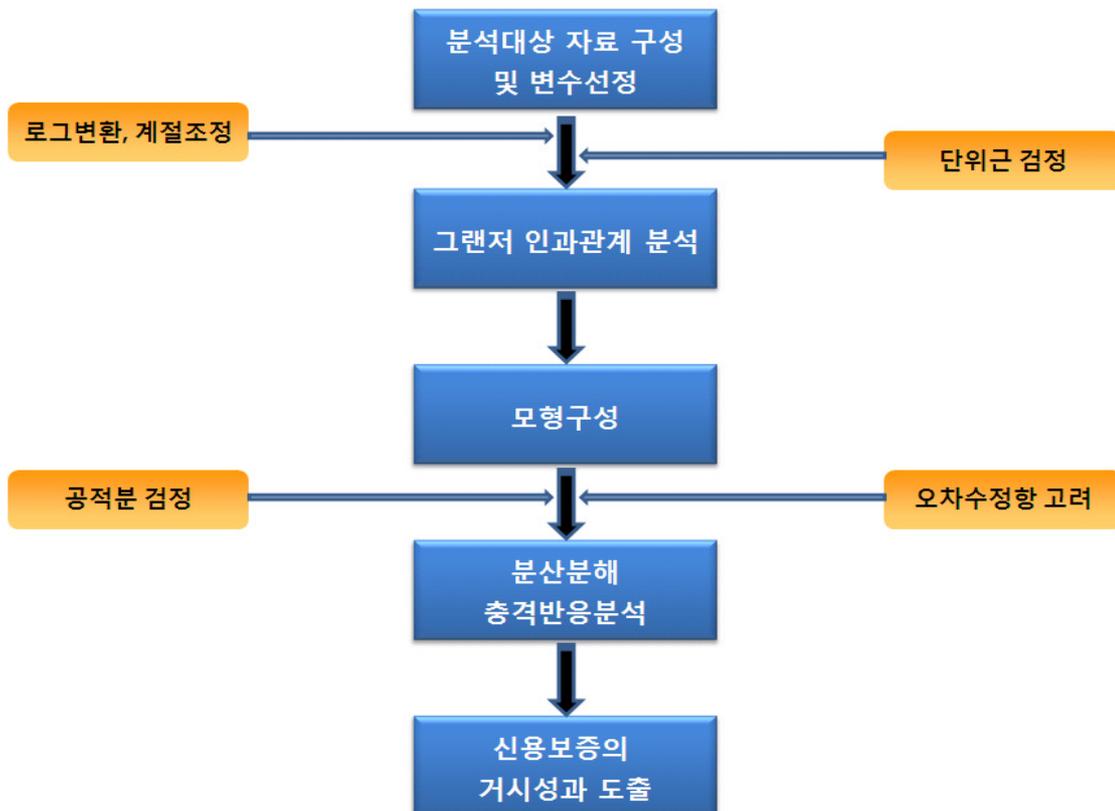
16)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통하여 종속변수 Y 를 몇 개의 독립변수(X_1, X_2, \dots)에 의하여 설명하는 모형으로서 독립변수의 영향이 시간 t 가 변하더라도 항상 일정하다는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계열자료를 이용할 경우 설명하기가 어려움(문권순, 1997에서 재정리).

17) 현재의 관측치 Z_t 는 과거의 어떤 규칙성에 의하여 재현되며, 이러한 규칙성은 미래에도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예측하는 분석모형으로, 모형 설정은 용이하나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을 무시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드러냄(문권순, 1997에서 재정리).

성철 외(2008)의 연구에서는 VAR모형의 분석결과 신용보증은 경제성장을 간접적으로 촉진하고, 경기침체에 금융시장의 “쏟림현상”을 보완하여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2. VAR분석의 절차

<그림 3-1> VAR모형을 활용한 거시성과분석 절차



제2절 VAR모형을 활용한 실증분석

1. 모형의 구성

1) 분석대상 자료 구성 및 변수선정

- 독립변수(외생변수)로는 서울시 산업생산지수,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잔액,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대출규모를 선정함.
- 종속변수(내생변수)는 이자율, 서울시 설비투자지수, 광의통화량 및 서울시 고용률을 선정함.
- 표본의 분석기간은 2000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의 월별 시계열자료를 대상으로 함.

<표 3-1> VAR모형 분석을 위한 선정변수

구분	변수명	산출방법	출처	단위
독립 변수	신용보증잔액(GO)	월별보증잔액	재단	억원
	서울시 산업생산지수(IP)	계절 조정된 산업생산지수	통계청	-
	중소기업대출금리 (Small Loan Rate)	예금은행의 중소기업대출금리	한국은행	연리%
종속 변수	이자율(Interest)	회사채 장외3급 AA-	한국은행	연리%
	서울시 설비투자지수 (Invest)	설비투자추계지수	통계청	-
	통화량(M2)	광의통화량(M2)의 평균잔액	한국은행	억원
	서울시 고용률 (EMP)	취업자수/15세이상 인구	통계청	%

2) 단위근 검정

- 변수들에 대한 시계열의 안정성 여부를 검정하기 위해 단위근 검정(unit-root test)¹⁸⁾을 하며, 단위근 검정은 ADF(Augmented Dickey-Fuller)검정을 사용함.
- 단위근 검정의 최적차수는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기준에 따르고, 각 변수에 대한 ADF 단위근 검정의 귀무가설은 기각되면 시계열이 안정적이고, 기각 되지 못하면 시계열이 약간 불안정적임.
- 이 검정에 사용한 검정식은 아래와 같음.

$$\Delta y_t = \alpha + \beta t + (\rho - 1)y_{t-1} + \sum_{i=1}^m \delta_i \Delta y_{t-i} + \varepsilon_t \quad (1)$$

(귀무가설 $H_0 : \rho = 1$, 대립가설 $H_1 : \rho < 1$)

18) 단위근 검정은 어떤 시계열자료가 안정한 시계열인지 불안정한 시계열인지 판단하기 위한 분석방법으로서 시계열이 불안정할 경우 변수간에 '허구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회귀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경제변수의 경우 단위근(unit root)을 갖는 불안정한 시계열일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차분을 통해 변수들을 안정적인 상태로 바꾸는 것이 필요함(왕성철 외, 2008:7).

<표 3-2> 단위근 검정결과

변수명	ADF 통계량	P-Value	기각여부
GO	5.403	1.0000	No
IP	-5.076	0.0000	Yes
SLR	-1.809	0.3758	No
INTEREST	-2.386	0.1458	No
INVEST	-3.598	0.0058	Yes
M2	6.405	1.0000	No
EMP	-3.468	0.0088	Yes
L_GO	-2.767	0.0631	No
L_IP	-5.134	0.0000	Yes
L_SLR	-1.775	0.3928	No
L_INTEREST	-2.088	0.2495	No
L_INVEST	-3.645	0.0050	Yes
L_M2	4.229	1.0000	No
L_EMP	-3.572	0.0063	Yes
D_GO	-10.963	0.0000	Yes
D_IP	-5.176	0.0000	Yes
D_SLR	-1.684	0.4394	No
D_INTEREST	-1.868	0.3475	No
D_INVEST	-3.655	0.0048	Yes
D_M2	1.050	0.9925	No
D_EMP	-4.380	0.0003	Yes
DL_GO	-10.963	0.0000	Yes
DL_IP	-5.176	0.0000	Yes
DL_SLR	-1.775	0.3928 (불안정함)	No
DL_INTEREST	-9.597	0.0000	Yes
DL_INVEST	-3.655	0.0048	Yes
DL_M2	1.050	0.9925 (불안정함)	No
DL_EMP	-4.380	0.0003	Yes

주) 1% Critical: -3.508, 5% Critical: -2.890

- <표 3-2>에서 3개의 수준 변수의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아 로그차분으로 전환하여 안정성을 도모함. 하지만 DL_SLR와 DL_M2는 불안정적임.

3)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

- VAR 모형을 이용하여 외생변수(독립변수)가 관심변수(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모형화하는 경우에는 변수들의 배열순서와 시차의 길이 등에 의해 파급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남.
- 시계열이 안정적으로 변환된 차분변수를 대상으로 추정모형의 적합도를 측정하는 기준인 ‘Schwarz Bayesian Criterion의 기각역의 정보를 사용함.
- 각 변수들에 대한 시차별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을 하여 VAR 모형변수의 배열 순서를 선정함.
- 독립변수인 신용보증잔액(GO), 서울시산업생산지수(IP), 중소기업대출금리(SLR)와 종속변수인 이자율(Interest), 서울시설비투자지수(Invest), 통화량(M2), 서울시 고용률(EMP)에 대해서 Granger 인과관계 검정을 함.

<표 3-3>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R-sq 검정

Equation	R-sq	chi2	P-Value
dl_invest	0.9998	484559.7	0.0000
dl_emp	1.0000	2.21e+07	0.0000
dl_interest	0.9995	204901.4	0.0000
dl_m2	1.0000	2.82e+08	0.0000

<표 3-4> Granger 인과관계 검정

귀무가설 (인과관계 無)		Wald-통계치	P-Value
<독립변수> - 신용보증잔액(GO) - 서울시산업생산지수(IP) - 중소기업대출금리(SLR)	이자율(Interest)	18.7626	0.0046
	서울시설비투자지수(Invest)	22.4301	0.0010
	통화량(M2)	5.8459	0.4407
	서울시 고용률(EMP)	16.5099	0.0113

주) 시차는 2를 사용함.

- 인과관계 검정 결과를 보면, 독립변수인 신용보증잔액(GO), 서울시산업생산지수(IP), 중소기업대출 금리(SLR)와 종속변수인 이자율(Interest), 서울시설비투자지수(Invest), 서울시 고용률(EMP)에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되어, 상호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통화량(M2)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 할 수 없으므로 인과관계를 설정할 수 없음.

4) 모형의 구성

-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에서, 통화량(M2)은 기각되었기 때문에 모형구성에서 제외됨. 즉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에서 통화량(M2) 변수는 인과관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변수의 모형구성에 다음과 같이 3개의 VAR모형을 구성함(독립변수3개 + 종속변수 각 1개).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모형 VAR-1
· 로그변환모형: DL_GO, DL_IP, DL_SLR, DL_INTEREST ② 모형 VAR-2
· 로그변환모형: DL_GO, DL_IP, DL_SLR, DL_INVEST ③ 모형 VAR-3
· 로그변환모형: DL_GO, DL_IP, DL_SLR, DL_EMP |
|---|

2. 분석결과

- 각 모형에 따라서 분산분해(Cholesky Variance Decomposition)를 통해 각각의 내생변수의 변동 중에서 이들 변수들이 전체 변동에 기여한 부분의 상대적 크기를 분석하고 충격반응함수(Impulse Response Analysis)를 통해 한 변수의 충격에 다른 변수의 반응 경로를 파악함.

1) 분산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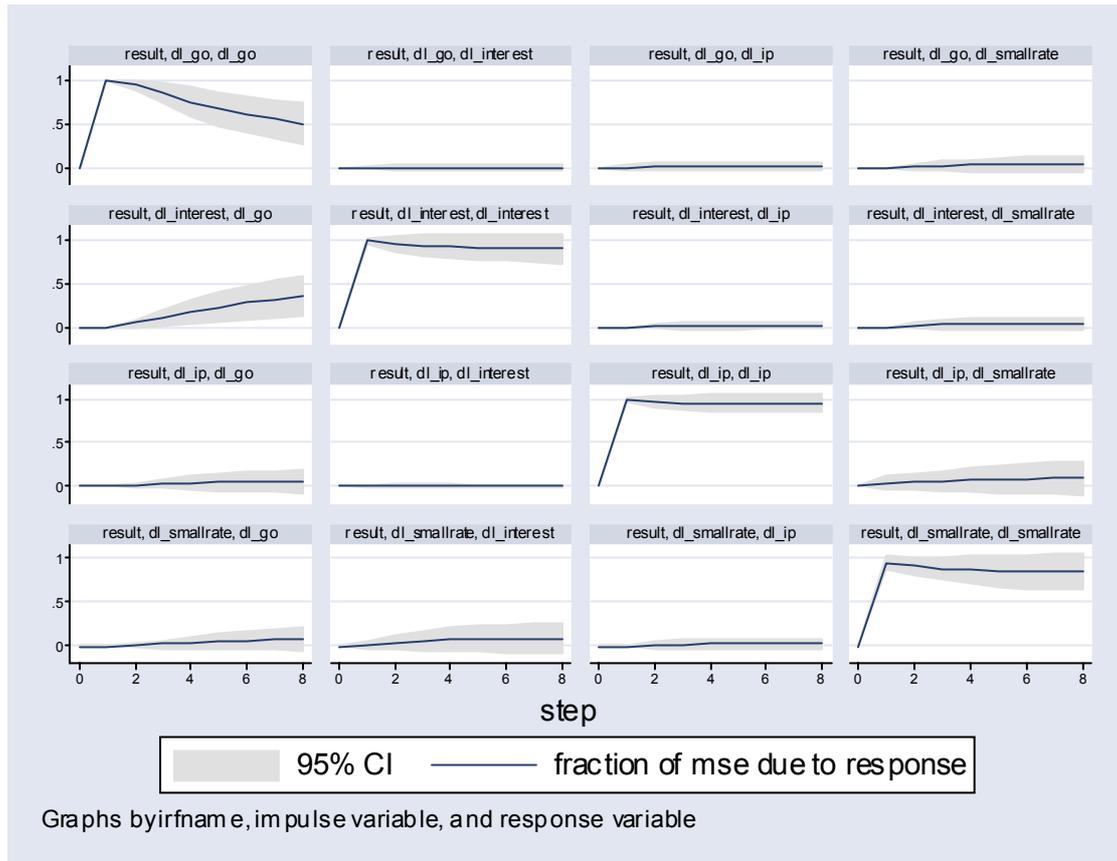
- 적정시차를 4로 설정하여 VAR모형을 추정, '콜레스키 분해' 실시
- 콜레스키 분해의 경우 실시기간을 각 변수의 비중이 충분히 안정적인 시점인 8기간으로 설정

□ 모형1 (신용보증잔액, 산업생산지수, 중기대출금리, 회사채이자율)의 분산분해

- 신용보증잔액은 1기 100%, 4기 65%, 6기 이후 50%, 8기에는 40%대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자기 자신에 의해서 설명되어짐. 신용보증잔액은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는 회사채 이자율(31%)이 가장 영향력이 큼.
- 산업생산지수는 1기 이후 계속해서 90%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자기 자신을 제외하면 신용보증, 중기대출금리, 회사채이자율에 의해 아주 미비한 영향을 받음.
- 회사채 이자율 또한 1기 이후 계속해서 90%이상을 자기 자신에 의해서 유지하며, 4기 이후로 중기대출금리는 10%를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자기 자신을 제외하면 신용보증, 중기대출금리, 산업생산지수에 의해 아주 미비한 영향을 받음.

- 중기대출금리 또한 1기 이후 계속해서 90%이상을 자기 자신에 의해서 유지하고 있음.

<그림 3-2> 모형 VAR-1의 분산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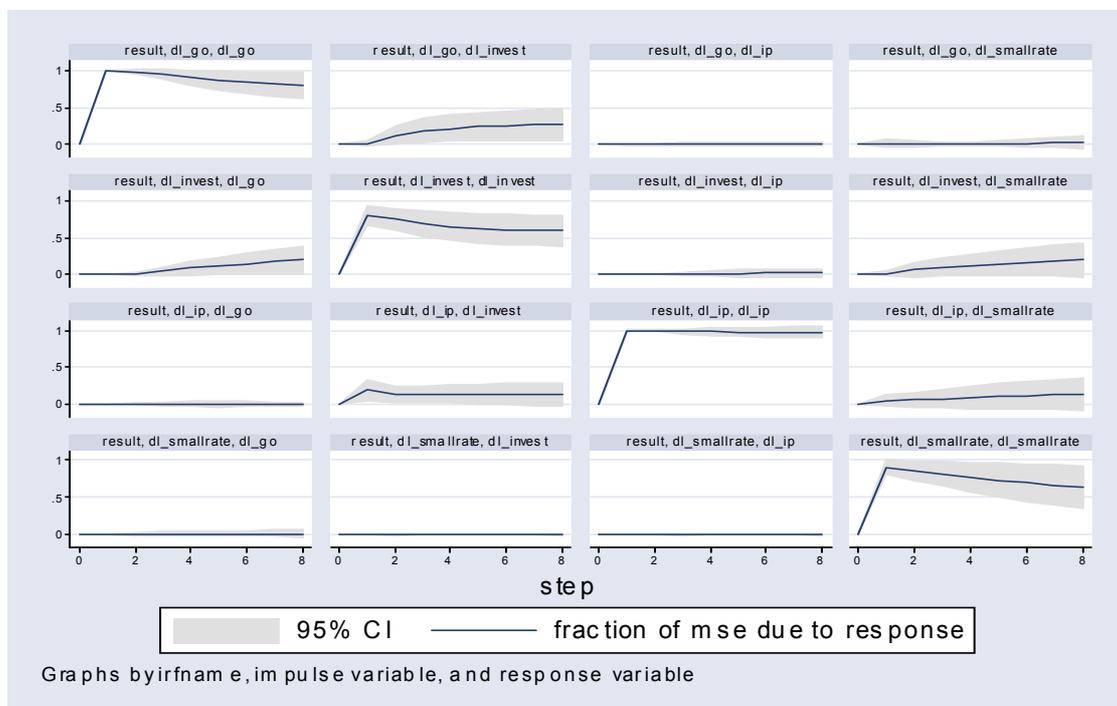
□ 모형2 (신용보증잔액, 산업생산지수, 중기대출, 설비투자)의 분산분해

- 신용보증잔액은 1기에서 8기까지 100%에서 75%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자기 자신에 의해서 설명되어짐. 신용보증잔액은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는 2기부터 회사채 이자율 (20%)이 가장 영향력이 큼.
- 서울설비투자지수는 1기에 85%를 유지하며, 그 이후 8기까지 65%를 자기

자신에 의해서 설명되어짐. 자기 자신을 제외하면 신용보증, 서울산업지수에 의해 10%이상의 영향을 받음.

- 중기대출금리 또한 1기 이후 계속해서 90%에서 75%이상을 자기 자신에 의해서 설명되어짐. 하지만 자기 자신을 제외하면 신용보증, 서울산업생산지수, 서울설비투자지수 의해 10%미만의 미비한 영향을 받음.

<그림 3-3> 모형 VAR-2의 분산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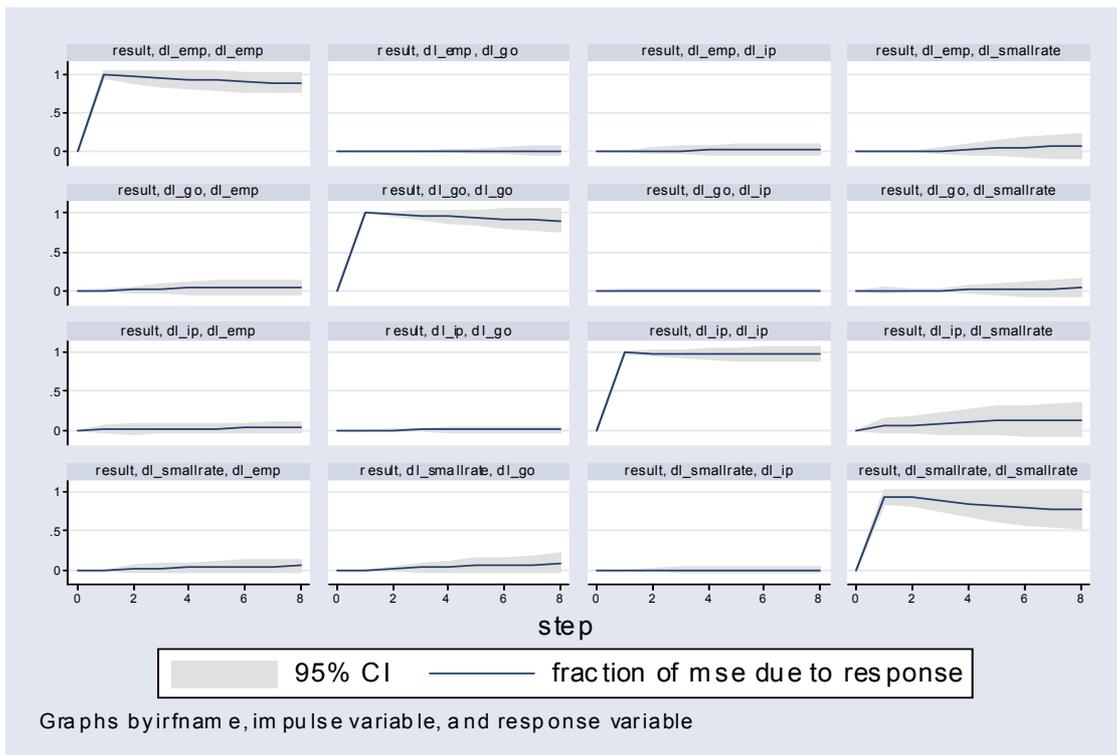


- 모형3 (신용보증잔액, 산업생산지수, 중기대출금리, 고용률)의 분산분해

- 서울시 고용률은 1기에서 8기까지 95%이상의 영향력을 자기 자신에 의해서 설명되어짐. 자기 자신을 제외한 신용보증, 산업생산지수, 중기대출금리는 거의 영향력이 없음.

- 신용보증, 산업생산지수, 중기대출금리 또한 90%이상의 영향력을 자기 자신에 의해서 설명되어짐. 하지만 자기 자신을 제외하면 서로간의 영향력은 아주 미비함.

<그림 3-4> 모형 VAR-3의 분산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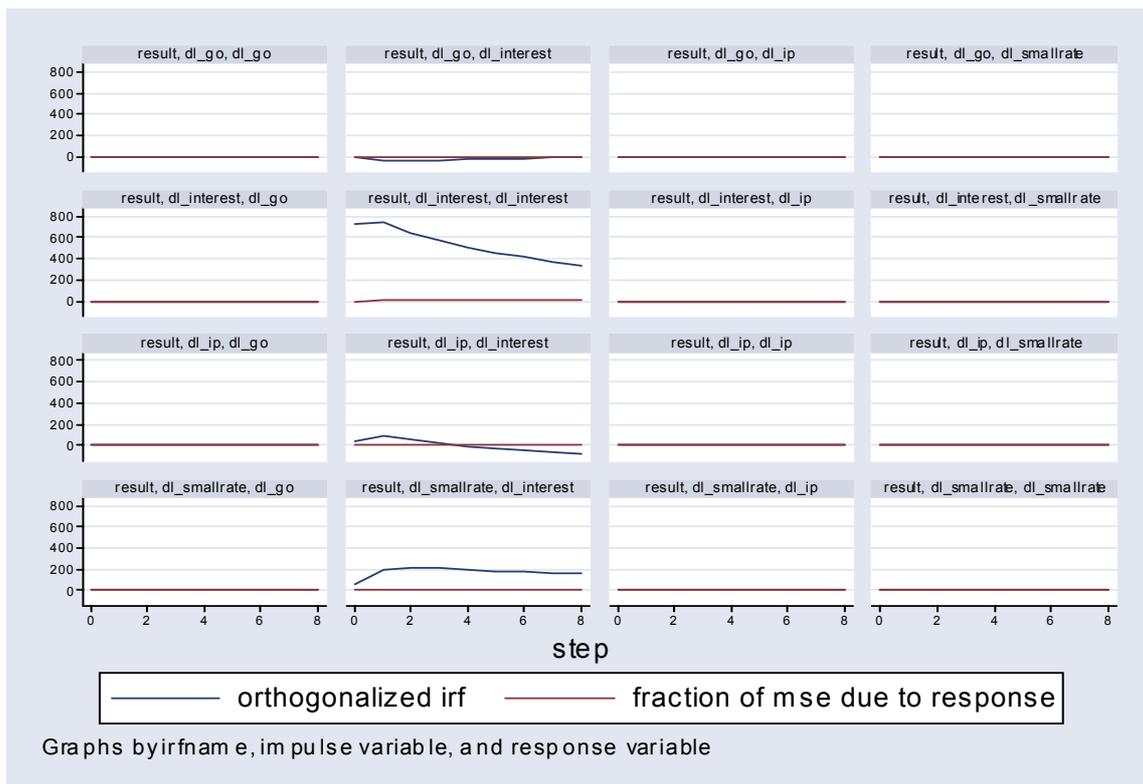


2) 충격반응분석

- 모형1 (신용보증잔액, 산업생산지수, 중기대출금리, 회사채이자율)의 충격반응함수
- 신용보증잔액의 충격에 대해 회사채 이자율의 충격반응은 1기에서 4기까지는 음(-)의 반응을 보이다가 5기 이후에는 대부분 충격이 사라져 0에 수렴함.

- 회사채 이자율의 충격반응에 있어서 다른 변수의 충격반응보다 그 자신의 충격반응이 크면서 음(-)의 반응으로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그림 3-5> 모형 VAR-1의 충격반응함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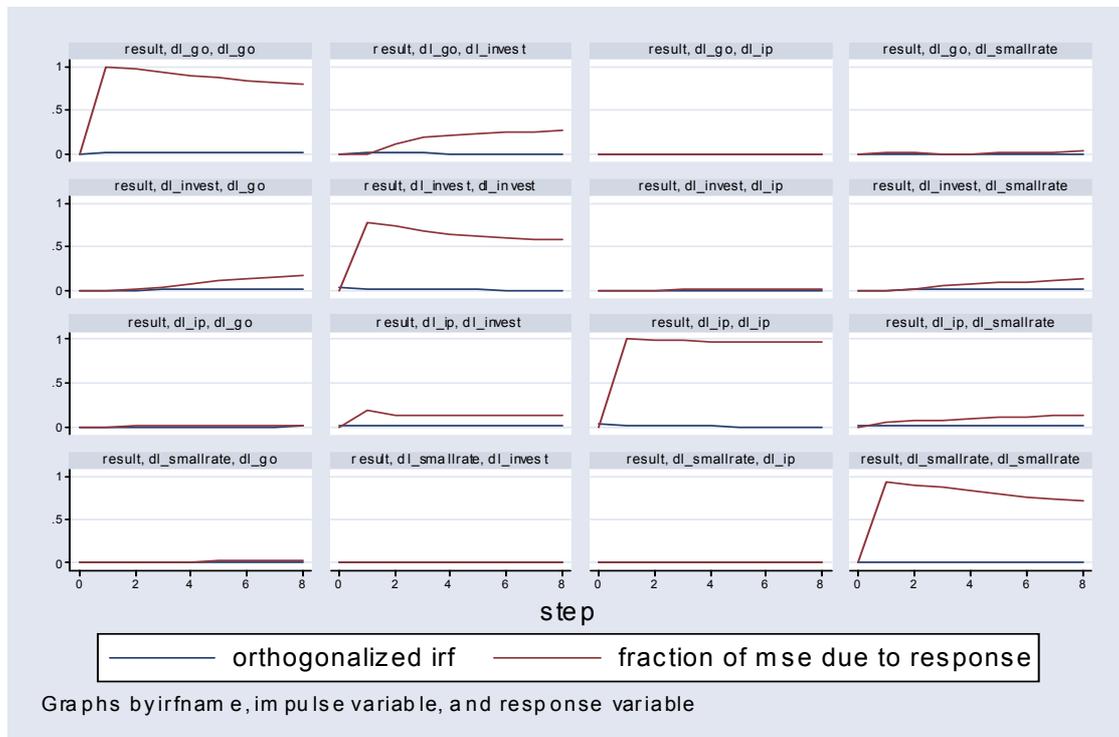


- 서울산업생산지수의 충격에 대해 회사채 이자율의 충격반응은 1기에서 4기까지는 양(+)의 반응을 보이다가 5기 이후에는 음(-)의 반응을 보이고 있음.
- 중소기업금리의 충격에 대해 회사채 이자율의 충격반응은 1기에서 8기까지는 음(-)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음.

□ 모형2 (신용보증잔액, 산업생산지수, 중기대출금리, 설비투자)의 충격반응함수

- 신용보증잔액의 충격에 대해 서울설비투자지수의 충격반응은 1기에서 음(-)의 반응을 보이다가 2기 이후에는 대부분 충격이 양(+)의 반응 양상을 보임.
- 서울설비투자지수의 충격반응에 있어서 다른 변수의 충격반응보다 그 자신의 충격반응이 크면서 양(+)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 서울산업생산지수의 충격에 대해 서울설비투자지수의 충격반응은 1기에서 8기까지는 양(+)의 반응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
- 중소기업금리의 충격에 대해 서울설비투자지수의 충격반응은 없으며 0에 수렴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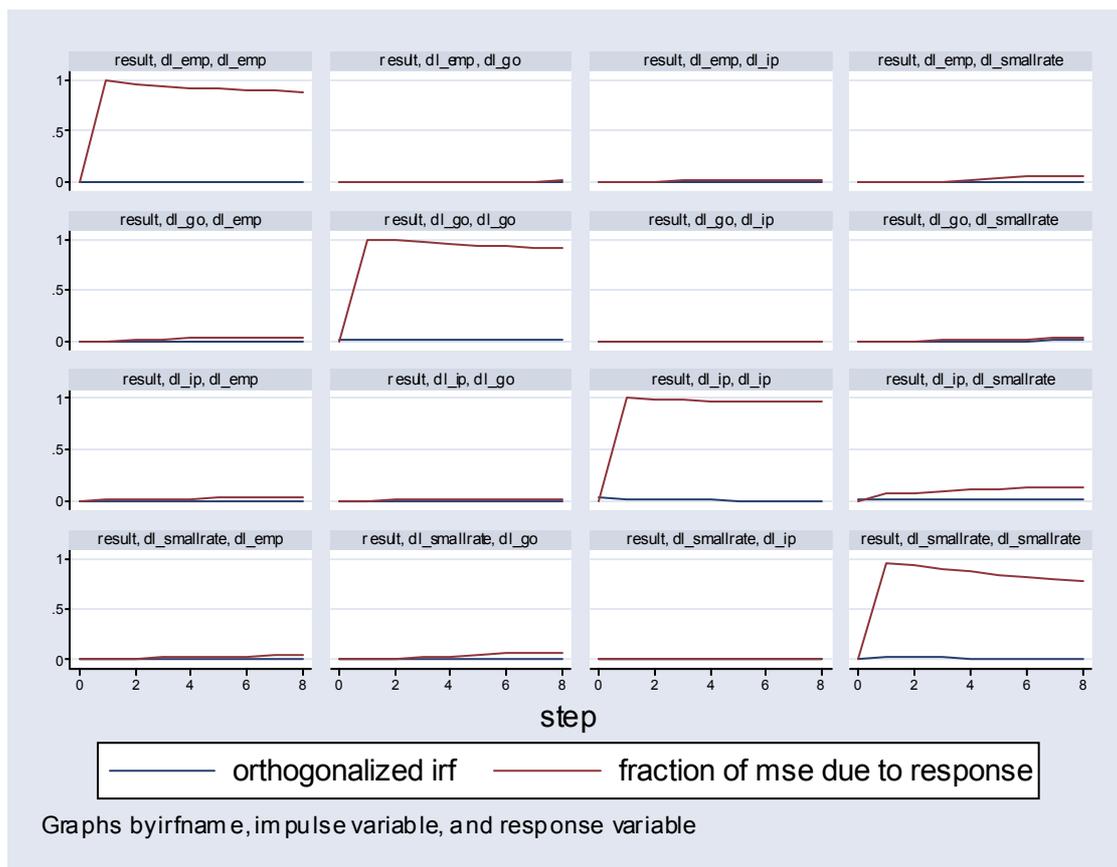
<그림 3-6> 모형 VAR-2의 충격반응함수



□ 모형3 (신용보증잔액, 산업생산지수, 중기대출금리, 고용률)의 충격반응함수

- 서울고용률의 충격반응에 있어서 다른 변수의 충격반응보다 그 자신의 충격 반응이 크면서 양(+)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 신용보증잔액, 서울산업생산지수, 중소기업금리의 충격에 대해 서울고용률의 충격반응은 1기2기에서 0에 수렴하여 별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3기 이후 대부분 충격이 미미한 양(+)의 반응 양상을 보이고 있음.

<그림 3-7> 모형 VAR-3의 충격반응함수



제3절 결론 및 시사점

- 신용보증은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서울설비투자증가와 고용률 증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하였음.
- 신용보증은 중소기업 금리인상 억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하였음. 즉,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경기불황기에는 규모가 축소되어 경기 순응적 대출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신용보증의 증가는 경제 침체기에 규모를 확대하여 금융시장의 “쏟림현상”을 보완함.

- 보증증가 ⇒ 서울시 고용·설비투자 증가 ⇒ 경제성장
- 보증증가 ⇒ 예금은행의 중소기업대출 금리 억제 ⇒ 서울시 고용·설비투자 증가 ⇒ 경제성장

- 각 변수의 충격에 대한 신용보증잔액, 산업생산지수, 중소기업 대출 금리의 충격반응에 있어서 다른 변수의 충격반응보다 그 자신의 충격반응이 크고 지속적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는 독립변수 간에 서로 영향을 미치며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쏟림현상의 가능성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제4장 신용보증에 대한 만족도 및 지원효과 분석

제1절 설문조사 개요

1. 조사의 개요

- 보증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재무자료를 이용하는 방식으로는 신용보증의 미시성과분석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통해 신용보증 이용고객이 평가하는 신용보증의 비재무적 정책성과를 측정함.
- 설문항목 구성
 - 신용보증의 이용현황: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이유, 보증지원 금액, 그리고 신용보증에 대한 대안적 자금 확보 방안.
 - 신용보증에 대한 이용만족도: 지원 절차의 간소화, 처리기간의 신속성, 지원조건, 보증금액의 규모, 그리고 보증 비용
 - 신용보증을 통한 경영개선 성과: 전체적인 경영개선 성과, 매출액 증가, 자금난 해소, 시설개선 및 기술투자, 그리고 고용안정 및 증대
- 설문대상과 방법 및 기간
 - 대 상 :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기업(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방 법 : 우편 및 전화 설문
 - 기 간 : 7월 6일 ~ 7월 29일
 - 응답자 : 200명/ 표본집단 1,000명(응답률: 20.0%)

2. 표본추출

- 모집단과 표본집단 : 모집단은 2007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까지 신용보증 이용자 73,897명이며, 표본집단은 모집단의 보증유형별, 지역별, 규모별, 업종별, 그리고 보증금액별 분포를 고려한 할당표본추출에 의해 구성.

<표 4-1> 모집단 및 표본집단의 지역별 분포

(단위: 명)

자치구	지역(모집단)		지역(표본집단)		합계
	일반보증	특례보증	일반보증	특례보증	
강남구	1,819	2,372	25	32	57
강동구	739	1,733	10	23	33
강북구	609	1,433	8	19	28
강서구	1,064	2,111	14	29	43
관악구	659	1,743	9	24	33
광진구	896	1,628	12	22	34
구로구	1,417	2,389	19	32	52
금천구	906	2,310	12	31	44
노원구	700	1,684	9	23	32
도봉구	503	1,538	7	21	28
동대문구	678	1,756	9	24	33
동작구	616	1,503	8	20	29
마포구	1,106	1,833	15	25	40
서대문구	648	1,385	9	19	28
서초구	1,306	1,953	18	26	44
성동구	905	1,620	12	22	34
성북구	669	2,153	9	29	38
송파구	1,442	2,186	20	30	49
양천구	833	1,770	11	24	35
영등포구	1,362	3,079	18	42	60
용산구	487	1,265	7	17	24
은평구	759	2,260	10	31	41
종로구	1,365	2,349	18	32	50
중구	1,783	3,270	24	44	68
중랑구	937	2,217	13	30	43
기타	114	35	2	0	2
합 계	24,322	49,575	329	671	1,000

○ 모집단 및 표본집단의 보증유형별·지역별 분포

- 신용보증 이용자 모집단 73,897명 중에서 일반보증에 해당하는 이용자가 전체의 32.9%에 해당하는 24,322명이며, 특례보증에 해당하는 이용자가 전체의 67.1%에 해당하는 49,575명임.
- 강남구, 구로구, 영등포구, 종로구, 중구 등이 상대적으로 신용보증 이용자가 많은 지역이고, 강북구, 도봉구, 동작구, 서대문구, 용산구 등이 상대적으로 이용자가 적은 지역임.
- 모집단의 보증유형별·지역별 분포에 맞춰 표본집단을 추출하였음.

<표 4-2> 모집단의 규모별·업종별 분포

(단위: 명)

구 분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일반	특례	일반	특례	일반	특례
농업, 임업 및 어업	69	64	4	3	0	0
광업	4	5	0	0	0	0
제조업	2,250	3,432	352	83	39	1
전기, 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3	7	1	1	0	0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26	19	15	0	13	0
건설업	664	1,854	122	37	3	0
도매 및 소매업	8,474	16,278	536	232	166	11
운수업	196	4,364	94	12	147	2
숙박 및 음식점업	4,655	10,351	215	216	10	2
출판	594	802	169	94	308	8
금융 및 보험업	2	0	0	0	0	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41	1,043	3	1	2	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90	1,081	152	77	62	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11	436	50	48	114	3
교육 서비스업	944	1,243	92	110	23	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9	58	10	5	2	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749	1,322	13	11	0	0
협회,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814	6,185	67	59	13	3
기타	0	5	0	1	0	0
합계	21,525	48,549	1,895	990	902	36

○ 모집단 및 표본집단의 규모별·업종별 분포

- 규모별로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집단이 70,074명으로 전체의 94.83%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소기업이 3.90%(2,885명), 그리고 중기업이 1.27%(938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 종사자가 전체의 34.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이 20.9%, 그리고 협회, 단체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이 1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4-3> 표본집단의 규모별·업종별 분포

(단위: 명)

구 분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일반	특례	일반	특례	일반	특례
농업, 임업 및 어업	1	1	0	0	0	0
광업	0	0	0	0	0	0
제조업	30	46	5	1	1	0
전기, 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0	0	0	0	0	0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0	0	0	0	0	0
건설업	9	25	2	1	0	0
도매 및 소매업	115	220	7	3	2	0
운수업	3	59	1	0	2	0
숙박 및 음식점업	63	140	3	3	0	0
출판	8	11	2	1	4	0
금융 및 보험업	0	0	0	0	0	0
부동산업 및 임대업	2	14	0	0	0	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	15	2	1	1	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	6	1	1	2	0
교육 서비스업	13	17	1	1	0	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	1	0	0	0	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	18	0	0	0	0
협회,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5	84	1	1	0	0
기타	0	0	0	0	0	0
합계	291	657	26	13	12	0

- 표본집단은 모집단의 규모별·업종별 분포를 고려하여, 규모별로는 소상공인 집단 948명, 소기업 집단 39명, 그리고 중기업 집단 12명을 추출하였으며, 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 종사자 348명,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 209명, 그리고 협회, 단체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종사자 110명 등을 추출.

○ 모집단 및 표본집단의 보증금액별 분포

- 신용보증 이용자 모집단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보증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이용자가 전체의 66.0%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모집단의 금액별 분포에 맞춰 표본집단을 추출.

<표 4-4> 모집단 및 표본집단의 보증금액별 분포

금 액 별	모집단		표본(1,000개)	
	일반보증	특례보증	일반보증	특례보증
1천만원 이하	2,794	46,004	38	623
2천만원 이하	7,712	1,552	104	21
3천만원 이하	5,935	812	80	11
4천만원 이하	1,439	199	19	3
5천만원 이하	3,219	616	44	8
1억 이하	1,908	325	26	4
2억 이하	953	67	13	1
3억 이하	178	0	2	0
3억 초과	184	0	2	0
합계	24,322	49,575	329	671

제2절 설문조사 분석결과

○ 설문조사 분석은 크게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한 분석과 집단별 구분에 따른 분석으로 이루어짐.

-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한 분석은 다시 신용보증 이용현황, 이용 만족도, 그리고 경영성과 분석으로 구성.
- 집단별 분석은 신용보증의 지원신청 이유에 따른 집단 구분과 보증지원 금액에 따른 집단별로 만족도 및 경영성과 분석을 비교.

1. 신용보증 이용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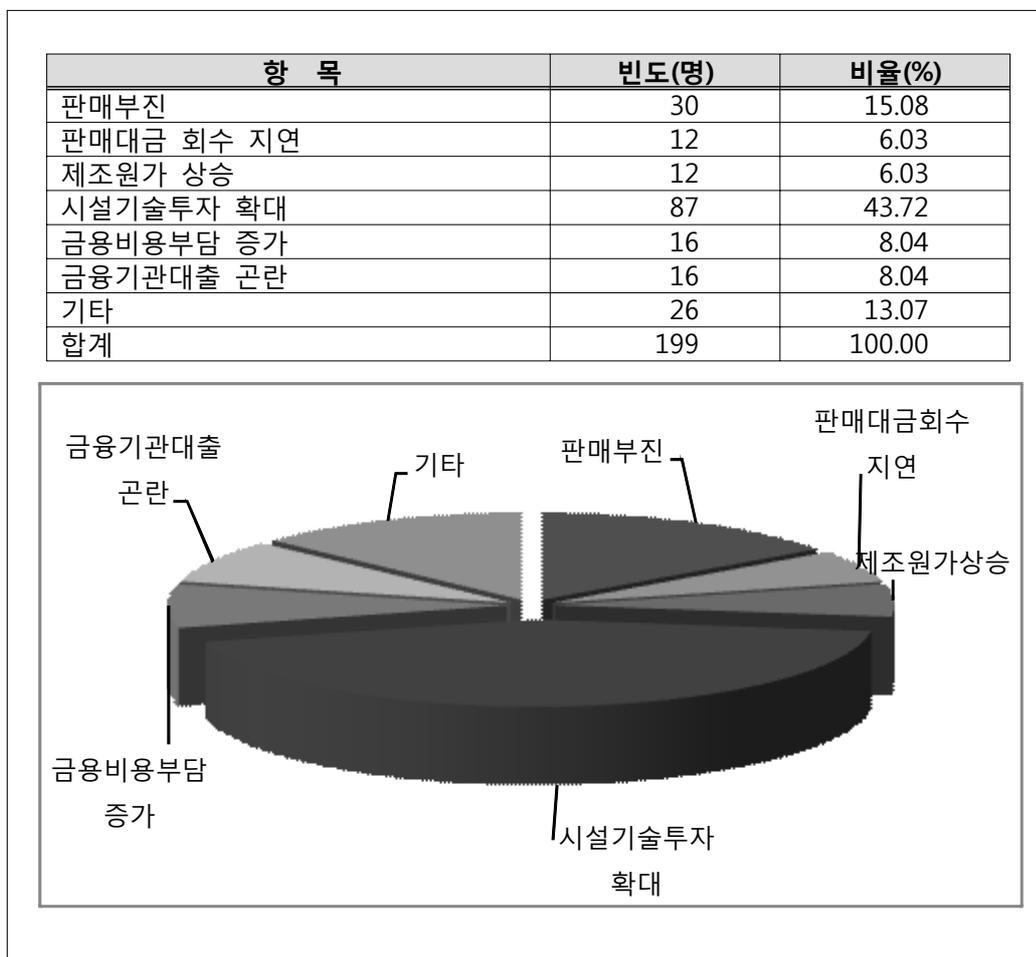
○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이유

-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3.72%(87명)가 시설 및 기술투자 확대를 제시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15.08%(30명)가 판매부진을 신용보증 지원의 이유로 제시함.

- 시설 및 기술투자가 높은 응답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사업 수행이 신용보증의 주요 수요임을 확인할 수 있음.

<표 4-5> 신용보증을 받은 이유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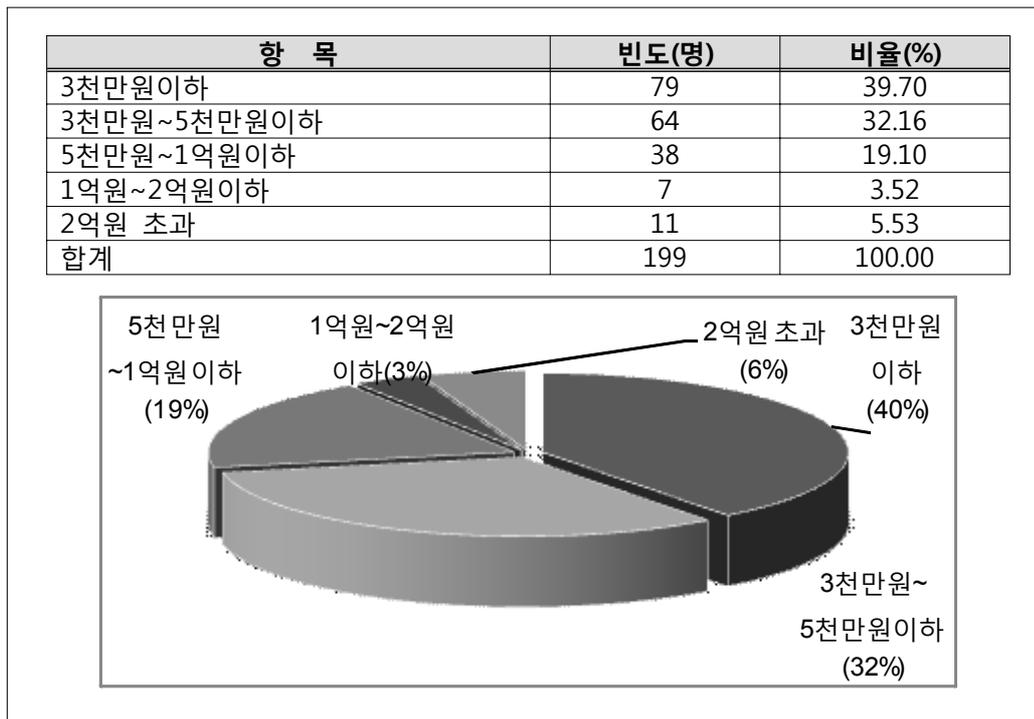


○ 신용보증지원 금액

- 신용보증 지원을 받은 금액에 대한 질문에서 ‘3천만원 이하’가 응답자의 39.70%(79명)로 가장 많고, ‘3천만원 ~ 5천만원 이하’가 32.16%, 그리고 ‘5천만원 ~ 1억원 이하’가 응답자의 19.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 응답자의 71.86%가 5천만원 이하의 보증지원을 받았으며, 90.96%가 1억원 이하의 보증지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이 주로 소액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됨.

<표 4-6> 보증지원 금액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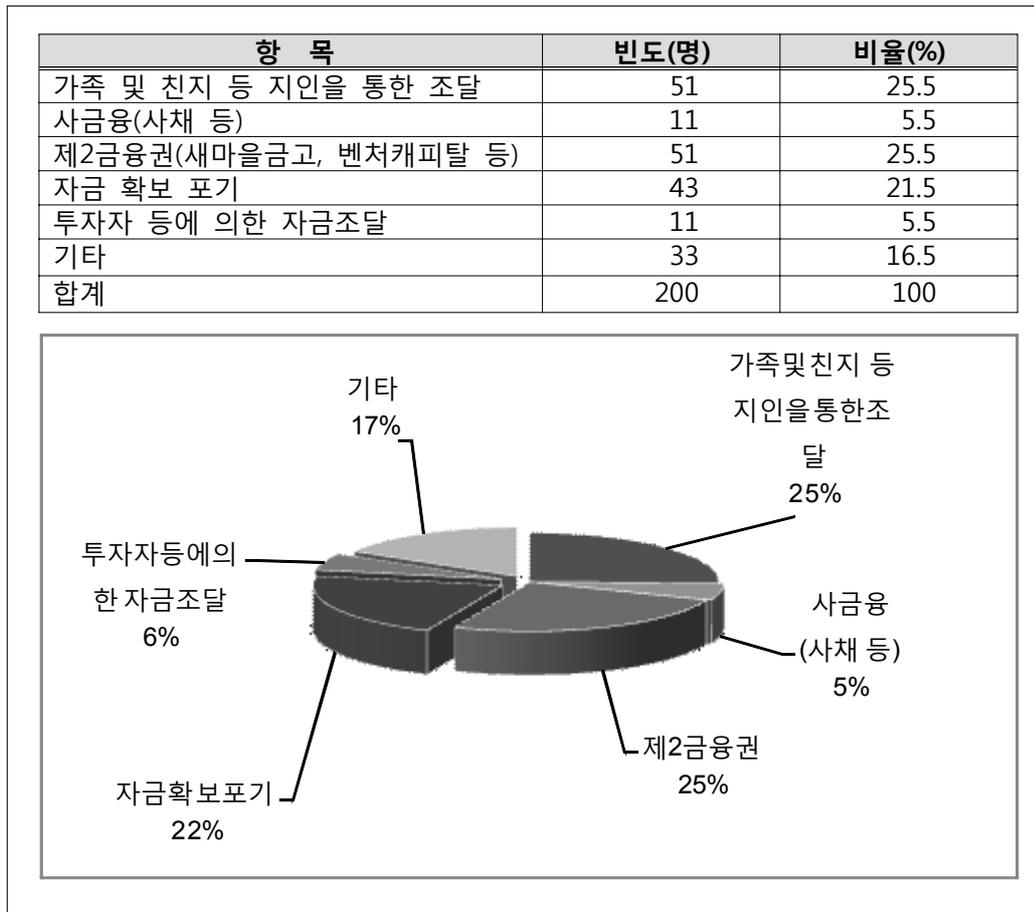


○ 대안적 자금 확보 방안

- 서울신용재단으로부터의 신용보증을 받지 못했을 경우의 대안적인 자금 확보 방안에 대해서 응답자의 25.5%가 ‘가족 및 친지 등 지인을 통한 조달’과 ‘제2금융권(새마을 금고, 벤처캐피탈 등)을 통한 자금 조달’을 지목한 것으로 조사됨.
- 특히 신용보증재단 이외의 자금 확보 방안이 부재한 경우, 즉 서울신용재단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지 못한 경우 자금 확보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응답도 전체의 2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신용보증재단 이외의 자금 확보 방안으로서 지인을 통한 조달이라는 비공식적인 자금 확보 방안과 자금 확보 포기의 비중이 전체의 47.0%에 해당

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이 소상공인 등에 대해 핵심적인 지원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4-7> 대안적 자금 확보 방안의 분포



2. 신용보증 이용만족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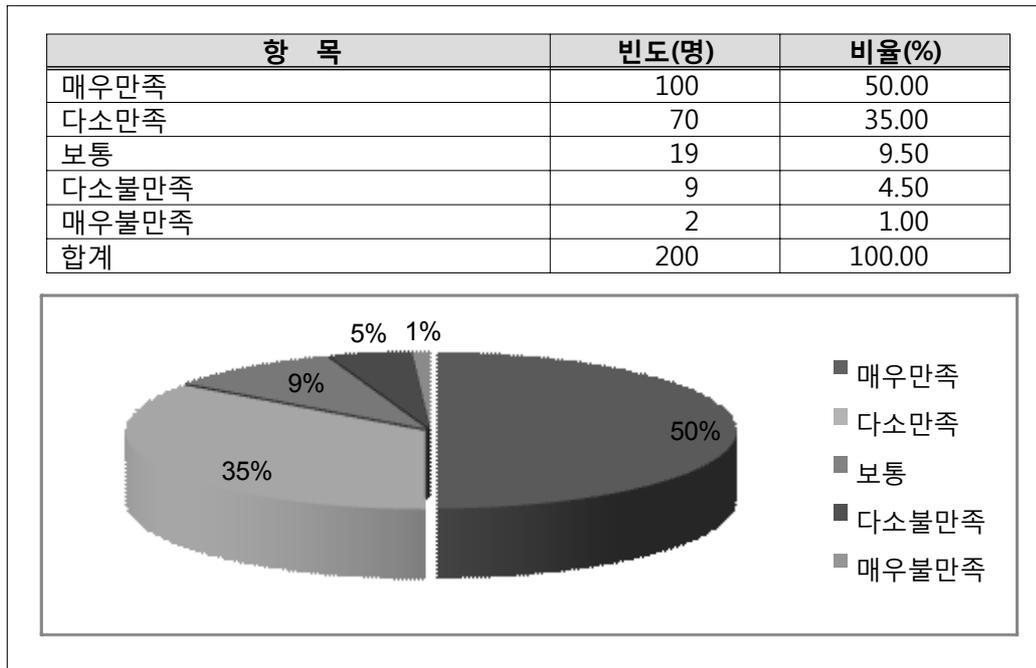
-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제공하는 신용보증에 대한 이용만족도를 지원 절차의 간소화, 처리기간의 신속성, 지원조건, 보증금액의 규모, 그리고 보증비용 등의 항목에 대해 조사함.

- 지원 절차의 간소화와 처리기간의 신속성 항목은 주로 신용보증과 관련한 절차와 형식적 측면에 관한 부분이며, 지원조건과 보증금액, 그리고 보증 비용 등은 신용보증의 실질적·내용적 측면에 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자 하는 항목임.
- 일차적으로 개별 항목별 만족도 조사결과를 분석한 후, 항목간 만족 수준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

○ 지원 절차의 간소화

- 서류의 접수와 심사, 그리고 방문 횟수 등 신용보증 지원 절차의 간소화에 대한 만족도 분석 결과, 응답자의 50.0%가 ‘매우 만족’을 35.0%가 ‘다소 만족’을 선택하여 만족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8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4-8> 지원 절차의 간소화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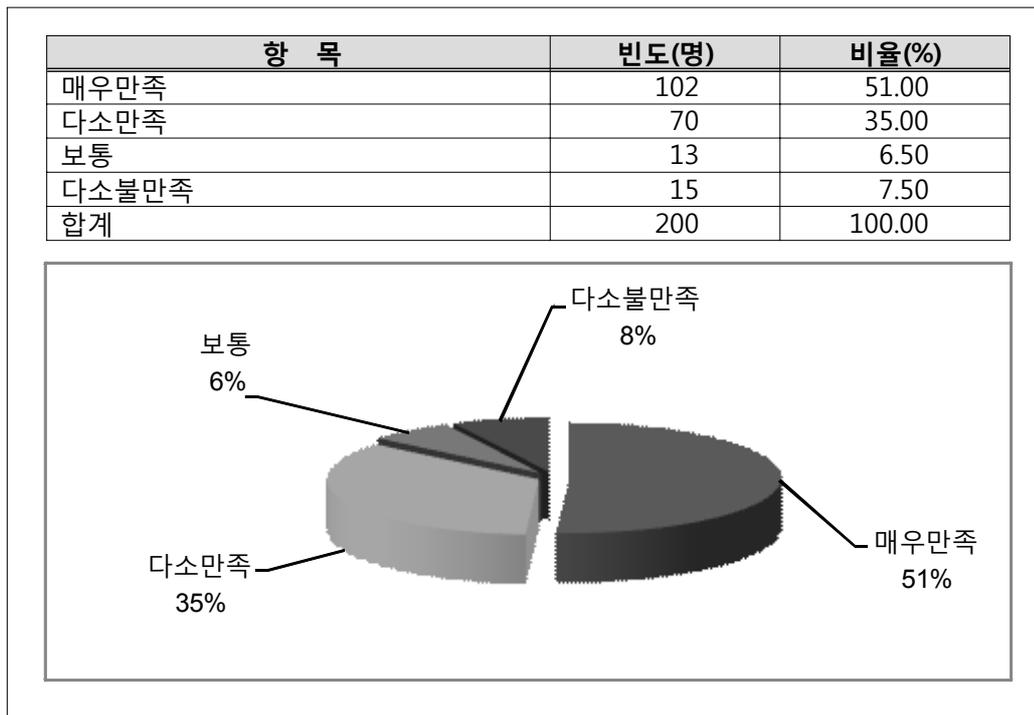
○ 처리기간의 신속성

- 신청에서 이용까지의 처리기간이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만족도 분석 결과, ‘매우 만족’과 ‘다소 만족’을 합한 ‘만족’의 응답이

전체의 8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됨.

- 한편, ‘매우 불만족’의 응답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다소 불만족’한다는 응답도 전체의 7.5%에 불과하여 전체적으로 만족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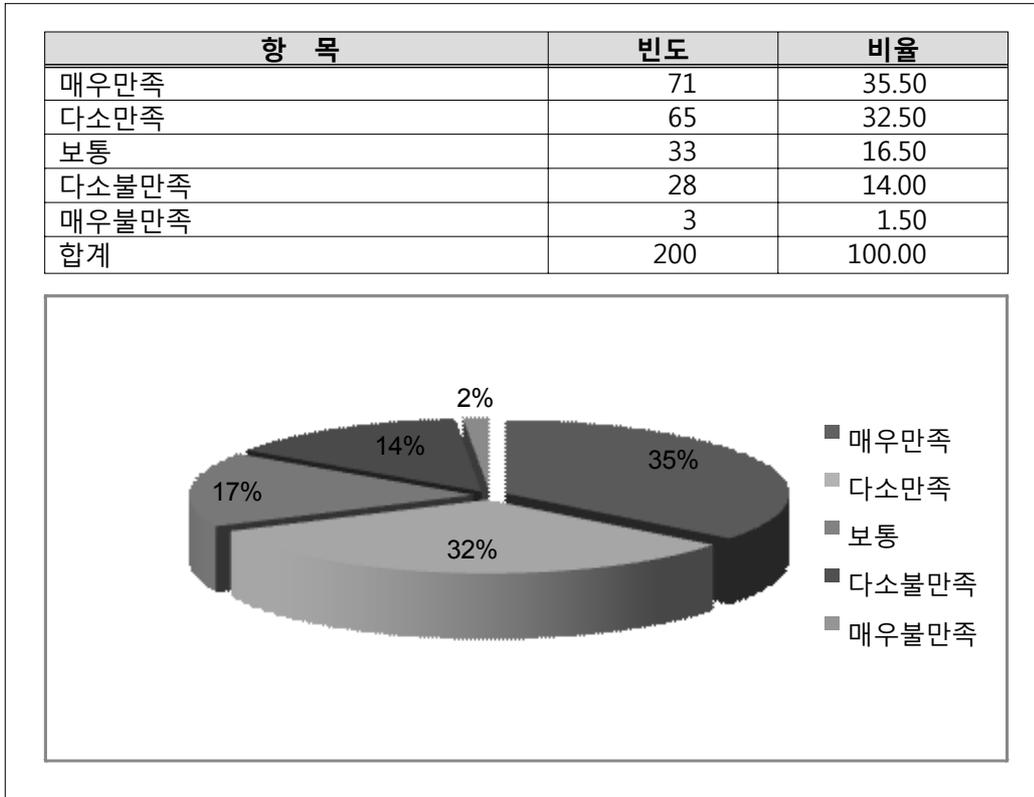
<표 4-9> 처리기간의 신속성에 대한 만족도



○ 지원조건

- 금리와 상환조건 등 신용보증의 지원조건에 대한 만족도 분석 결과, ‘매우 만족’이 전체의 35.5%, ‘다소 만족’이 전체의 32.5%를 차지하여 양자를 합해 도출한 만족한다는 응답(‘매우 만족’ + ‘다소 만족’)이 전체의 68.0%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됨.
- 이에 비해 불만족 한다는 응답(‘매우 불만족’ + ‘다소 불만족’)은 15.5%에 불과하여 전반적으로 만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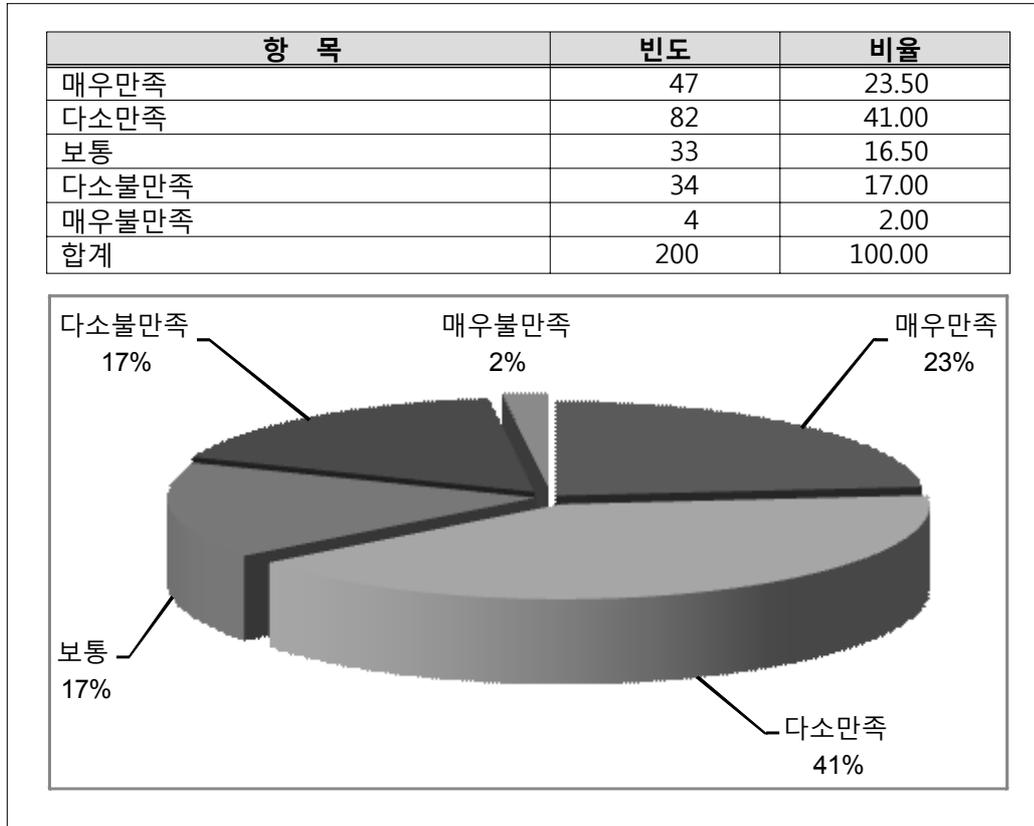
<표 4-10> 지원 조건에 대한 만족도



○ 보증금액의 규모

-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제공하는 신용보증금액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23.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소 만족’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41.0%를 차지하여 만족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64.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 이에 비해 ‘다소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을 합한 전반적인 불만족의 응답은 전체의 19.0%를 차지하고 있음.
- 전체적으로 불만족 한다는 응답보다는 만족한다는 응답의 비중이 훨씬 더 높게 보고되고 있지만(64.5%>19.0%), 앞선 지원절차나 처리기간, 그리고 지원조건 등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만족의 응답 비중이 낮고 불만족의 응답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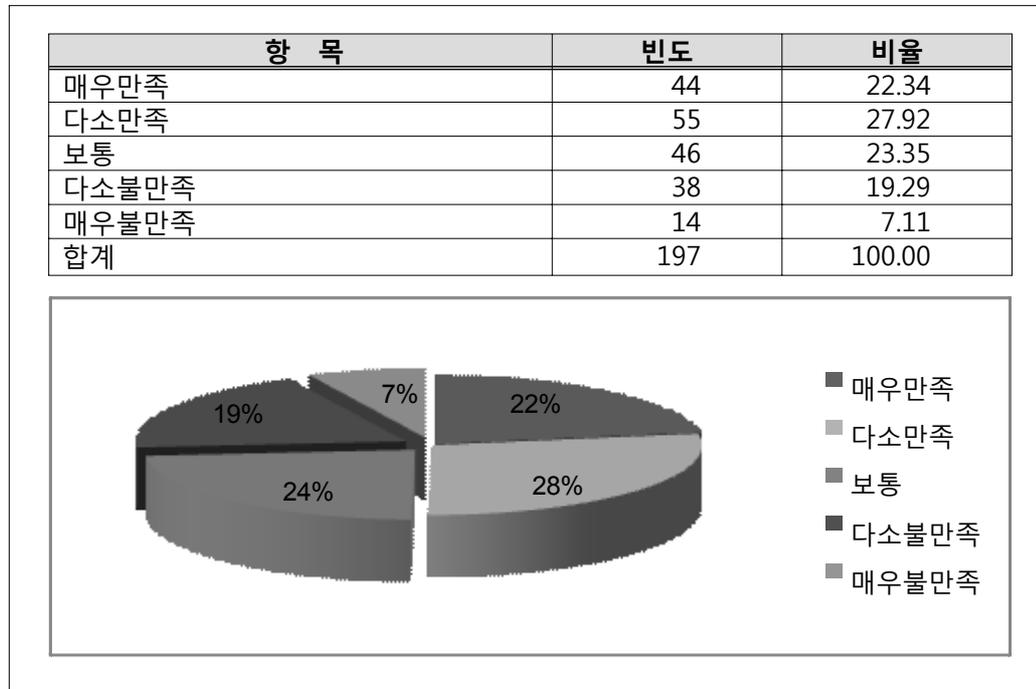
<표 4-11> 보증금액의 규모에 대한 만족도



○ 보증비용

- 신용보증에 대한 보증비용 측면에서의 만족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매우 만족’의 응답이 전체의 22.34%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소 만족’의 응답이 전체의 27.92%를 차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50.2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 이에 비해 ‘다소 불만족’의 응답은 전체의 19.29%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우 불만족’의 응답도 전체의 7.11%를 차지하여 전반적으로 불만족 한다는 응답의 비중은 26.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 결과적으로 만족 한다는 응답이 불만족 한다는 응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다른 항목에 비해서 만족의 응답 비중은 가장 낮고 불만족의 응답 비중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12> 보증비용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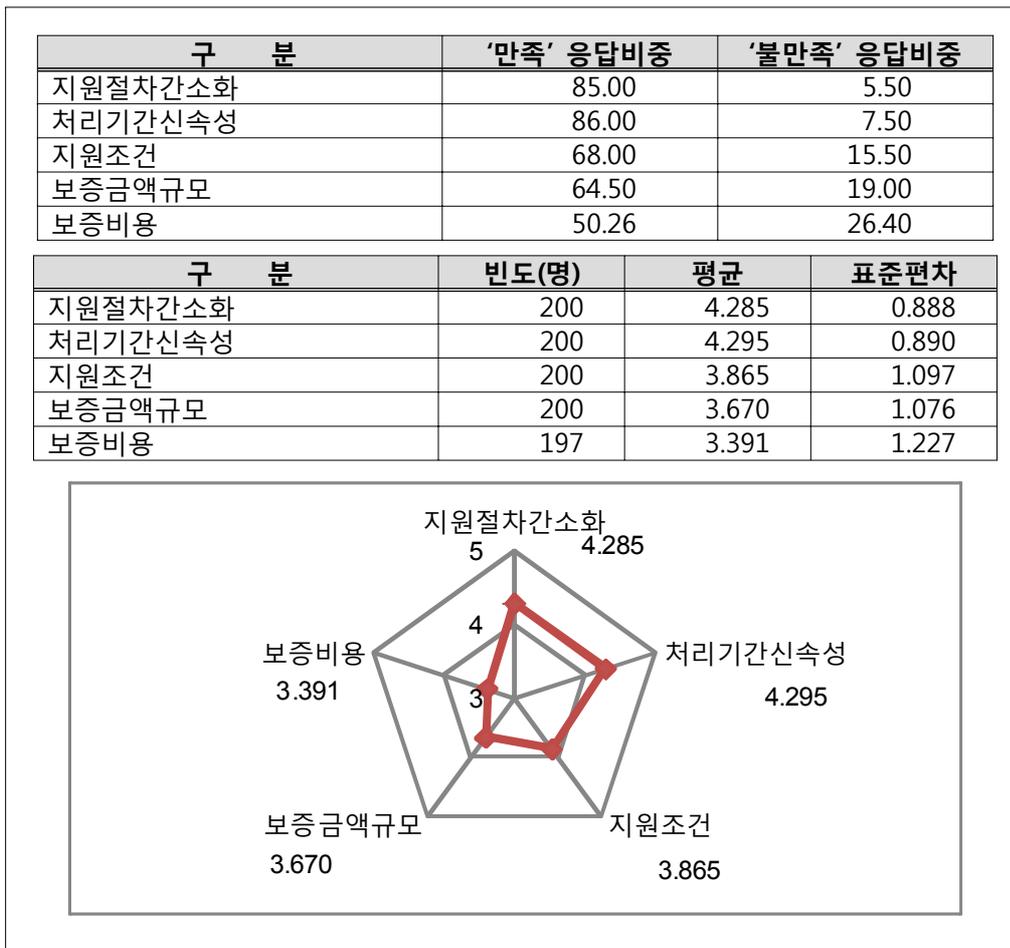


○ 만족도 비교

- 신용보증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 비교는 크게 (1) 항목별로 만족 한다는 응답비중과 불만족 한다는 응답 비중의 비교와 (2) 항목별 만족도 수준의 평균 비교의 두 가지 방식으로 수행됨.
-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제공하는 신용보증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 조사결과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모든 항목에서 만족 한다는 응답이 불만족 한다는 응답에 비해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만족의 수준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개별 항목별 만족도 수준을 비교하면, 지원 절차의 간소화와 처리기간의 신속성 항목은 상대적으로 만족의 수준이 높은 데 비해 지원조건과 보증금액의 규모, 그리고 보증비용 등에 대한 만족도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지원 절차의 간소화와 처리기간의 신속성 항목에 대한 만족 수준을 살펴 보면, 만족의 응답 비중이 전체의 85%를 상회하는 데 비해서 불만족의 응

- 답 비중은 10%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됨.
- 지원조건과 보증금액의 규모, 그리고 보증 비용에 대한 만족 수준을 살펴 보면, 만족의 응답 비중은 전체의 50~60%를 차지하는 데 비해서 불만족의 응답 비중은 15~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개별 항목에 따른 만족 수준의 이러한 차이는 크게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제공하는 신용보증의 절차적 측면과 형식적 측면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는데 비해서 신용보증의 실제적인 측면, 즉 보증의 내용적 측면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함.

<표 4-13> 신용보증에 대한 만족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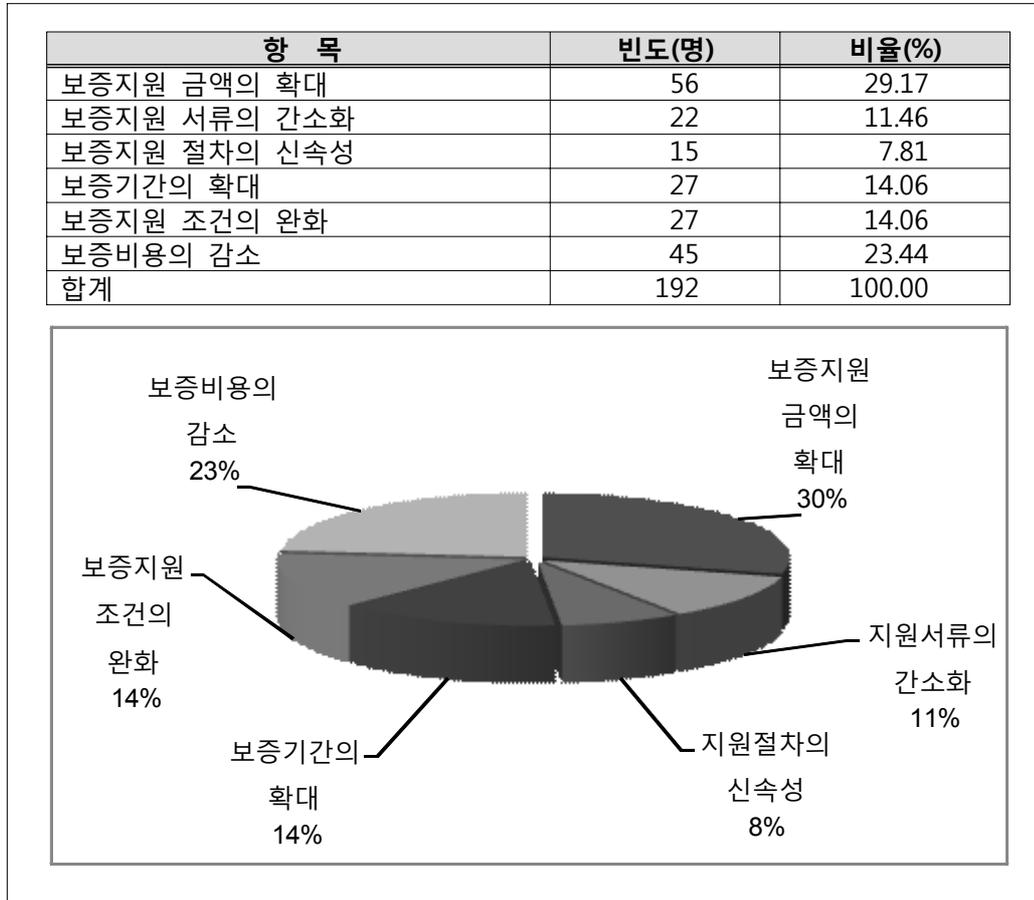


- 항목별 만족 수준에 대한 이상의 패턴은 개별 항목별 만족도의 평균을 비교 분석한 결과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음. 즉 지원 절차의 간소화와 처리기간의 신속성 항목은 만족도 평균이 4.2점대로 상대적으로 높은 데 비해서 지원조건과 보증금액의 규모, 그리고 보증 비용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3점대로 상대적으로 만족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음.
- 개별 항목별로 만족도의 수준을 살펴보면, 처리기간의 신속성에 대한 만족도 평균이 4.29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지원 절차의 간소화(4.285), 지원 조건(3.865), 보증금액의 규모(3.670)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보증비용에 대한 만족도 평균이 3.391로 만족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됨.

○ 현행 신용보증제도 개선사항

- 현행 신용보증제도의 개선사항에 대해서 응답자의 29.17%(56명)가 ‘보증지원 금액의 확대’를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제시하였으며, 응답자의 23.44%가 ‘보증 비용의 감소’를 시급한 개선 사항으로 지목하였음.
- 보증지원 금액과 보증 비용의 문제는 앞선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도 상대적으로 만족의 수준이 낮은 항목에 해당했던 것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판단됨.
- 다만 만족 수준에 대한 분석에서는 보증비용의 문제가 가장 만족 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이 보증금액의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선방안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는 양자의 순위에 변동이 있음.
- 이외에도 각각 14.06%의 응답자가 보증기간의 확대와 보증지원 조건의 완화를 시급한 개선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 앞선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보증지원 서류의 간소화와 보증지원 절차의 신속성은 시급한 개선과제 항목 중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우선순위를 보이고 있음.

<표 4-14> 신용보증제도 개선사항 분포



3. 신용보증 이용 후의 경영성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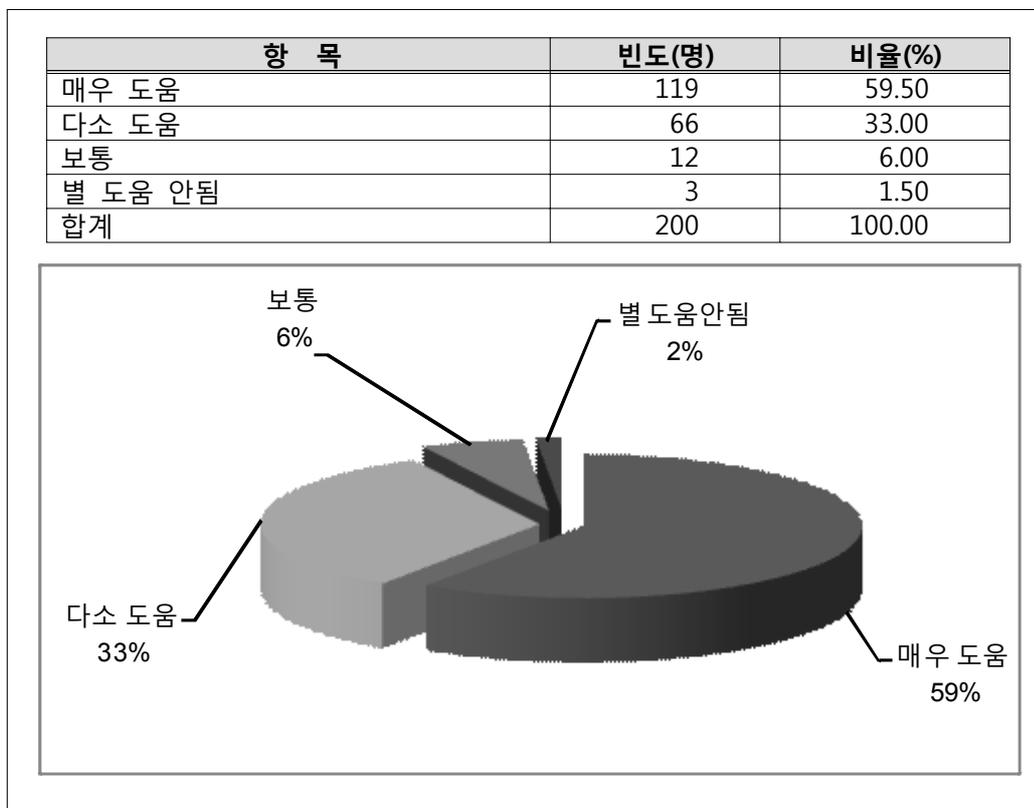
-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제공하는 신용보증의 경영성과를 전체적인 경영개선 에 대한 성과와 매출액 증가, 자금난 해소, 시설개선 및 기술투자, 그리고 고용안정 및 증대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자금난 해소와 매출액 증가의 항목은 단기적인 경영성과에 해당하며, 시설 개선 및 기술투자와 고용안정 및 증대의 항목은 중장기적인 경영성과에 해당하는 항목임.

- 일차적으로 전체적인 경영개선 성과와 개별 항목별 성과를 분석한 후, 항목간 성과 수준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

○ 전체적인 경영개선에의 역할

-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이 전체적인 경영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59.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소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자도 33.0%에 해당하여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자의 비중이 92.5%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이에 비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전무하며,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자도 1.5%에 불과하여 전체적으로 신용보증의 경영개선 성과가 긍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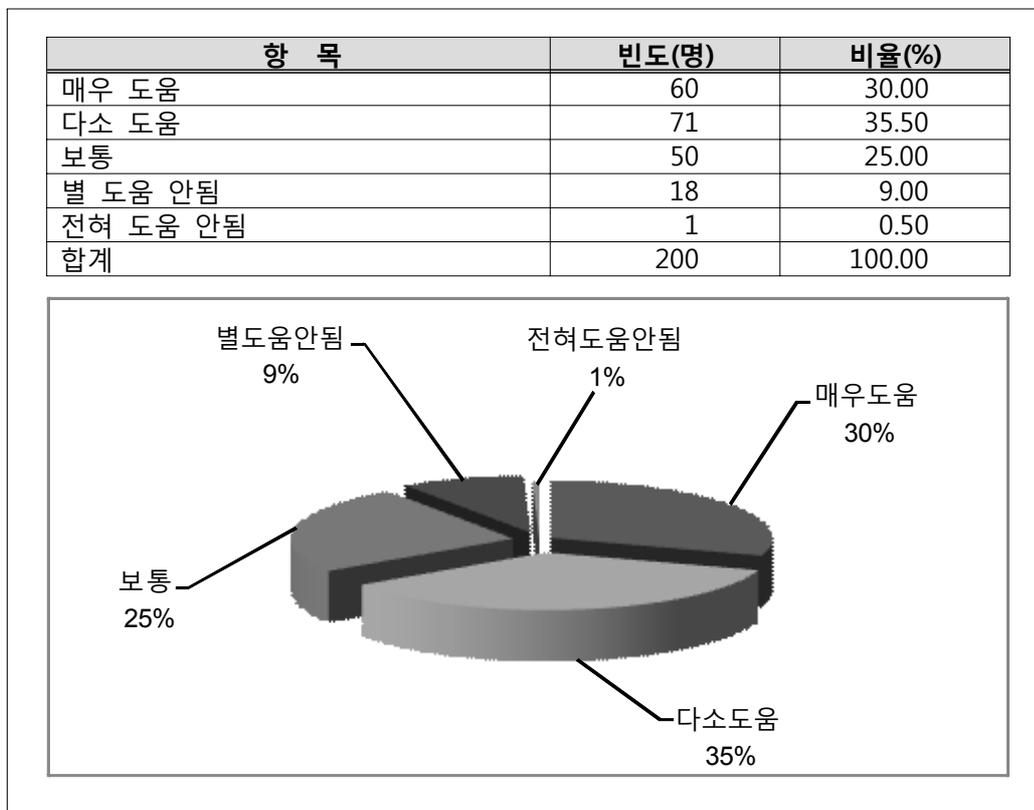
<표 4-15> 신용보증의 경영개선에 대한 도움 정도



○ 매출액 증가에 대한 도움

- 신용보증이 매출액 증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항목의 분석결과,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자와 ‘다소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자의 비중이 전체의 6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비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9.5%에 불과하여 신용보증의 매출액 증가에 대한 성과는 높은 것으로 판단됨.

<표 4-16> 신용보증의 매출액 증가에 대한 도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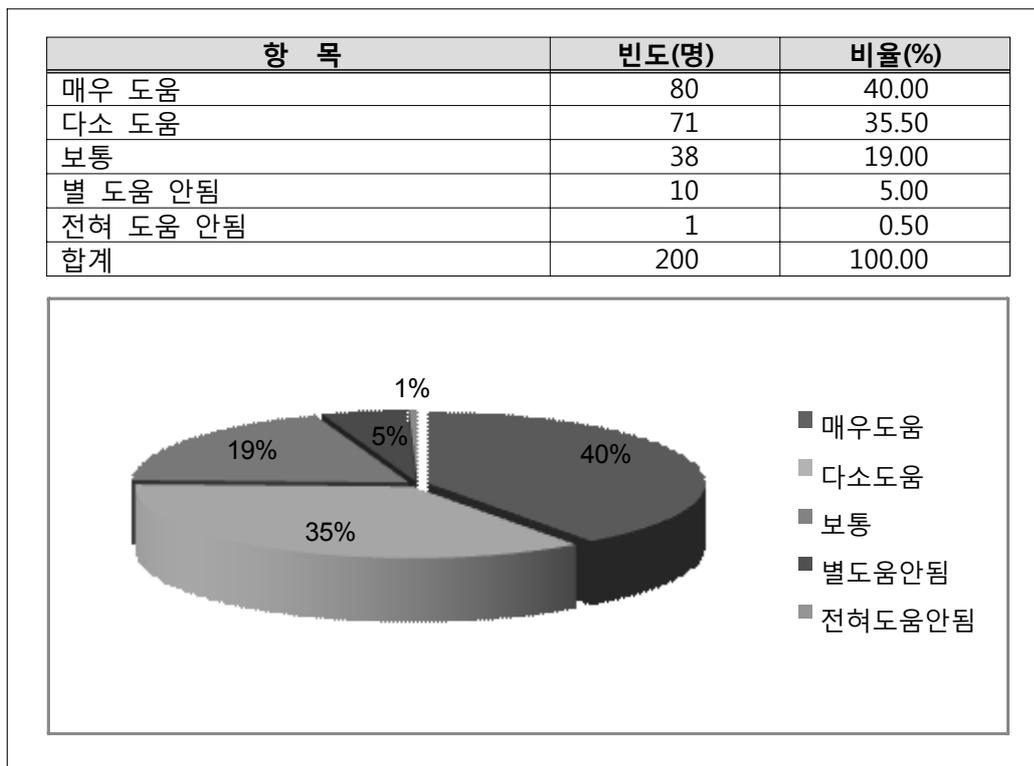


○ 자금난 해소에 대한 도움

- 신용보증이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된 정도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40.0%가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을, 35.5%가 ‘다소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을 제시하여, 전체 응답자의 75.5%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통해 자금난을 해소한 것으로 응답.

- 이에 비해 5.5%의 응답자만이 신용보증을 통한 자금난 해소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음.
- 결과적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제공한 신용보증의 자금난 해소의 성과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됨.

<표 4-17> 신용보증의 자금난 해소에 대한 도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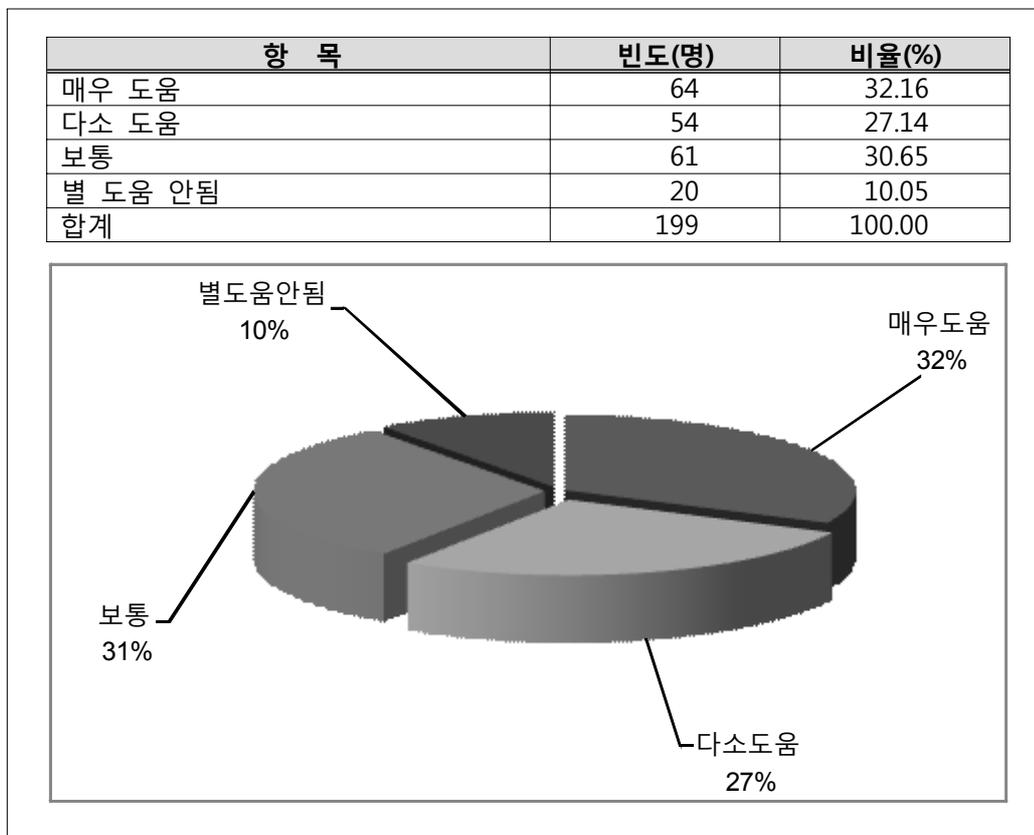
○ 시설개선 및 기술투자에 대한 도움

- 신용보증의 시설개선 및 기술투자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신용보증이 시설개선 및 기술투자에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의 32.16%와 ‘다소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의 27.14%를 합하여 59.3%의 응답자가 신용보증의 시설개선 및 기술투자에 대한 성과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조사됨.
- 이에 비해서 신용보증이 시설개선 및 기술투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전무하며,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전체의 10.05%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됨.

- 전체적으로 볼 때, 신용보증의 시설개선 및 기술투자에 대한 성과는 긍정적인 반응이 부정적인 반응에 비해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앞선 매출액 증가 항목과 자금난 해소 항목에 비해서 긍정적인 반응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더 낮고 부정적인 반응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4-18> 신용보증의 시설개선 및 기술투자에 대한 도움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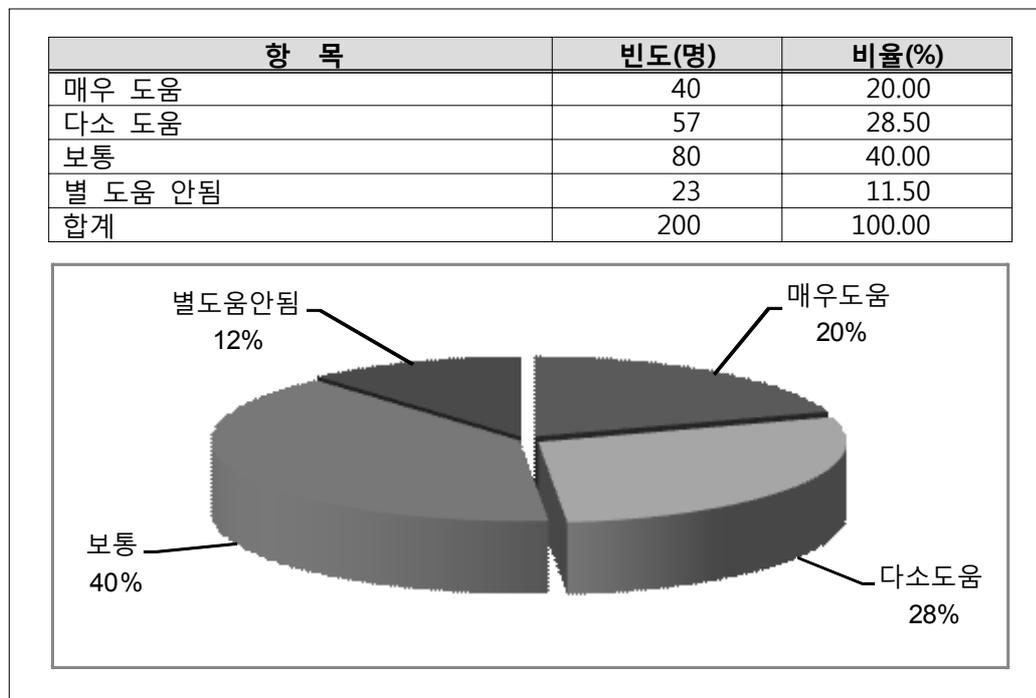


○ 고용안정 및 증대에 대한 도움

- 신용보증의 고용안정 및 증대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신용보증이 고용안정 및 증대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20.0%의 응답과 ‘다소 도움’이 되었다는 28.5%의 응답을 합하여 전체 응답자의 48.5%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됨.

- 이에 비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전무하며,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11.5%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됨.
- 전체적으로 볼 때, 신용보증의 고용안정 및 증대에 대한 성과는 긍정적인 반응이 부정적인 반응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전의 다른 항목에 비해서 긍정적인 반응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고 부정적인 반응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4-19> 신용보증의 고용안정 및 증대에 대한 도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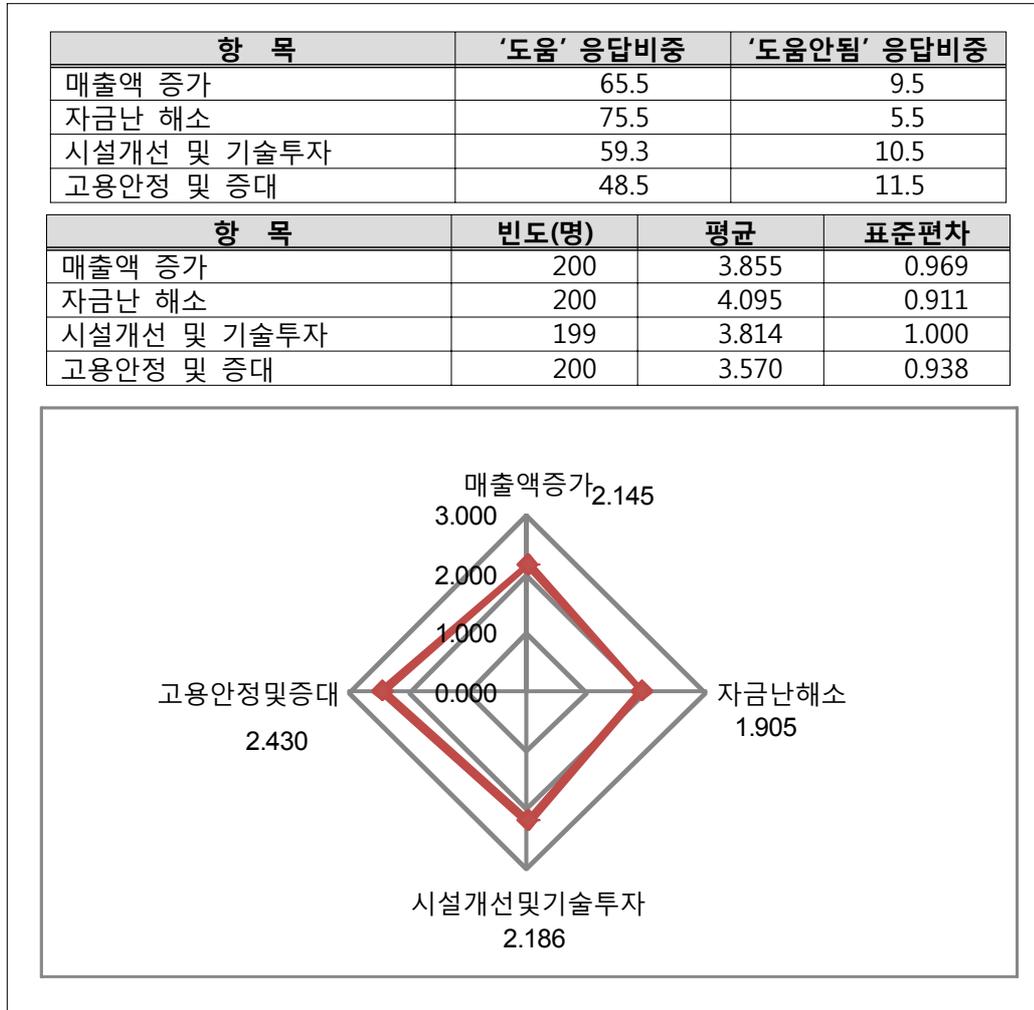
○ 경영성과 비교

- 신용보증의 경영성과에 대한 비교는 크게 (1) 항목별로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비중과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비중의 비교와 (2) 항목별 도움 수준에 대한 평균 비교의 두 가지 방식으로 수행됨.
- 신용보증의 경영성과에 대한 조사결과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모든 항목에서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용보증이 경영성과에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

고 있음이 확인됨.

- 개별 항목별 경영성과의 수준을 비교하면, 자금난 해소에 대한 성과의 수준이 가장 높고, 매출액 증가와 시설개선 및 기술투자 항목에 대한 성과는 중간 정도의 수준이며, 고용안정 및 증대와 관련된 성과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자금난 해소에 대한 신용보증의 성과는 ‘도움’의 응답이 전체의 75.5%이고 ‘도움 안됨’의 응답이 5.5%에 불과한 데 비해서 매출액 증가와 시설개선 및 기술투자에 대한 성과 수준을 살펴보면, ‘도움’의 응답은 60%대인데 비해서 ‘도움 안됨’의 응답은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장 장기적인 성과에 해당하는 고용안정 및 증대에 대해서는 ‘도움’의 응답이 50%에 미치지 못하는데 비해서 ‘도움 안됨’의 응답은 11.5%로 조사되었음.
- 개별 항목에 따른 도움 수준의 이러한 차이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제공하는 신용보증의 단기적인 성과(자금난 해소)와 장기적인 성과(고용안정 및 증대)에 대한 차이를 의미하는 것임.

<표 4-20> 신용보증 이후의 경영성과 비교



- 항목별 경영성과에 대한 이러한 패턴은 개별 항목별 성과 수준의 평균을 비교 분석한 결과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음. 즉 자금난 해소에 대한 성과 수준의 평균은 4.095로 상대적으로 높는데 비해서 고용안정 및 증대에 대한 성과 수준의 평균은 3.570으로 상대적으로 성과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음.

4. 신용보증 지원신청 이유와 만족도 수준 및 경영성과간의 관계

○ 신용보증 지원신청 이유에 따른 만족도 수준 비교

- 신용보증 지원신청 이유에 따른 만족도 수준의 비교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지원조건과 보증금액의 규모, 그리고 보증비용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신용보증 지원신청의 이유로 판매부진을 제시한 응답자 집단과 시설 및 기술투자 확대를 제시한 응답자, 그리고 금융기관 대출 곤란을 제시한 응답자 집단은 보증 비용에 대한 만족도의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이에 비해서 신용보증 지원신청의 이유로 판매대금 회수지연, 제조원가 상승, 그리고 금융비용부담의 증가를 제시한 응답자 집단에서는 보증금액의 규모에 대한 만족도의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신용보증 지원신청의 이유로 제조원가 상승과 금융기관 대출 곤란을 제시한 응답자 집단은 지원조건과 보증금액의 규모, 그리고 보증비용에 대한 만족도 수준 이외에 처리기간의 신속성에 대한 만족도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게 보고되고 있음. 특히 제조원가 상승을 신용보증 지원신청의 이유로 제시한 응답자 집단은 지원조건에 대한 만족도 수준에 비해 처리기간의 신속성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됨.
- 결과적으로 신용보증 지원신청의 이유에 따라 보증비용과 보증금액의 규모에 대한 만족도 수준에 있어서의 차이가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신용보증 지원신청의 사유에 따라 신용보증에 대한 기대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임.

<표 4-21> 신용보증 지원신청 이유에 따른 만족도 수준의 평균비교

신용보증 지원신청 이유	만족도				
	지원절차 간소화	처리기간 신속성	지원조건	보증금액 규모	보증비용
판매부진	4.10 (1.12)	4.37 (0.85)	3.60 (1.16)	3.53 (1.17)	3.18 (1.16)
판매대금 회수 지연	4.25 (0.87)	4.42 (0.51)	3.92 (0.90)	3.42 (1.16)	3.67 (1.07)
제조원가 상승	4.50 (0.80)	3.92 (1.16)	4.33 (0.78)	3.50 (1.09)	3.75 (0.87)
시설기술투자 확대	4.30 (0.88)	4.37 (0.79)	3.86 (1.12)	3.82 (1.07)	3.47 (1.24)
금융비용부담 증가	4.50 (0.52)	4.25 (0.93)	3.81 (1.11)	3.38 (1.02)	3.75 (1.06)
금융기관대출 곤란	4.19 (0.98)	3.69 (1.25)	3.63 (1.31)	3.75 (1.18)	3.31 (1.49)
기타	4.27 (0.83)	4.50 (0.86)	4.19 (0.90)	3.65 (0.94)	2.96 (1.31)
합계	4.28 (0.89)	4.30 (0.89)	3.87 (1.09)	3.67 (1.08)	3.40 (1.23)

주: 괄호 안의 값은 표준편차.

○ 신용보증 이용 만족도 측정 항목에 따른 지원신청 이유 집단의 분포

- 지원절차의 간소화에 대해서 제조원가의 상승과 금융비용 부담의 증가를 신용보증 지원신청의 사유로 제시한 집단의 만족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 비해서 판매부진을 사유로 제시한 집단의 만족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처리기간의 신속성에 대해서 판매대금의 회수 지연을 신용보증의 신청 사유로 제시한 집단의 만족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는데 비해 금융기관의 대출곤란을 사유로 제시한 집단의 만족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지원조건에 대한 만족 수준은 제조원가 상승 때문에 신용보증의 지원을 신청한 집단이 가장 높고, 판매부진을 사유로 제시한 응답자 집단의 만족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보증 금액의 규모에 대해서는 시설 및 기술투자의 확대를 사유로 제시한 집단의 만족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금융비용 부담의 증가를 사유로 제시한 집단의 만족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됨.
- 보증비용에 대해서는 제조원가의 상승이나 금융비용부담의 증가로 인해

신용보증의 지원을 신청한 집단의 만족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는데 비해서 판매 부진을 사유로 제시한 집단의 만족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개선사항 비교

- 신용보증 지원신청 이유에 따른 신용보증제도의 개선사항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 곤란으로 인해 신용보증의 지원을 신청한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집단이 일차적으로 보증지원 금액의 확대를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 곤란을 신용보증 지원신청의 이유로 제시한 집단은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보증비용의 감소를 제시하는 것으로 보고됨.
- 신용보증 지원신청의 이유로 판매 부진을 제시한 응답자 집단은 보증지원 금액의 확대 이외에 보증기간의 확대와 보증비용의 감소를 개선사항으로 제시한 응답자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으며, 시설 및 기술투자 확대를 위해 신용보증 지원을 신청한 응답자 집단에서는 보증지원 금액의 확대를 개선사항으로 제시한 응답자와 보증비용의 감소를 시급한 개선사항으로 제시한 응답자의 비중이 동일함.

<표 4-22> 신용보증 지원신청 이유에 따른 개선사항의 비중분포

신용보증지원이유	신용보증제도개선사항					
	지원금액 확대	지원서류 간소화	지원절차 신속성	보증기간 확대	지원조건 완화	보증비용 감소
판매부진	31.03	3.45	6.90	20.69	17.24	20.69
판매대금회수지연	45.45	9.09	9.09	9.09	18.18	9.09
제조원가상승	41.67	0.00	16.67	16.67	16.67	8.33
시설기술투자확대	23.81	19.05	5.95	11.90	15.48	23.81
금융비용부담증가	43.75	0.00	6.25	18.75	12.50	18.75
금융기관대출곤란	12.50	12.50	12.50	6.25	12.50	43.75
기타	34.78	8.70	8.70	17.39	4.35	26.09
합계	29.32	11.52	7.85	14.14	14.14	23.04

○ 경영성과 비교

- 신용보증으로 인한 전반적인 경영개선 성과에 대해서 판매대금 회수 지연을 신용보증 지원신청 사유로 제시한 집단이 가장 높은 평가를 제시하고 있으며(4.67), 그 다음이 금융기관 대출 곤란을 사유로 제시한 집단(4.63), 판매 부진을 사유로 제시한 집단(4.60), 시설 및 기술투자의 확대 혹은 금융비용 부담의 증가를 사유로 제시한 집단(각각 4.44)의 순으로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보고하고 있음.
- 특히 제조원가의 상승으로 인해 신용보증 지원을 신청한 집단의 경우가 신용보증으로 인한 전반적인 경영개선 성과에 대해서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부정적인 응답을 제시한 것으로 보고되었음(4.25).

<표 4-23> 신용보증 지원신청 이유에 따른 경영성과 수준의 평균비교

신용보증지원 이유	경영성과				
	전반적 경영개선	매출액 증가	자금난 해소	시설개선 및 기술투자	고용안정 및 증대
판매부진	4.60 (0.56)	3.57 (0.77)	4.13 (0.82)	3.66 (0.90)	3.57 (0.90)
판매대금회수지연	4.67 (0.49)	4.08 (0.79)	3.92 (0.90)	3.67 (0.98)	3.75 (0.75)
제조원가상승	4.25 (0.75)	3.33 (0.98)	3.92 (1.08)	3.17 (0.94)	3.25 (0.87)
시설기술투자확대	4.44 (0.77)	4.01 (0.96)	4.17 (0.92)	4.13 (0.96)	3.70 (0.95)
금융비용부담증가	4.44 (0.63)	3.94 (1.00)	4.06 (0.77)	3.44 (0.89)	3.31 (0.79)
금융기관대출곤란	4.63 (0.62)	3.44 (1.21)	3.63 (1.09)	3.50 (1.15)	3.19 (0.98)
기타	4.62 (0.57)	3.96 (0.96)	4.31 (0.84)	3.69 (0.97)	3.62 (1.06)
합계	4.50 (0.68)	3.85 (0.97)	4.10 (0.91)	3.81 (1.00)	3.57 (0.94)

주: 괄호 안의 값은 표준편차.

- 판매 부진을 신용보증 지원신청 사유로 제시한 집단은 자금난 해소에 대한 성과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한 데 비해서 매출액 증가와 고용안정 및 증대에 대한 성과를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함.
- 판매대금 회수지연을 신용보증 지원신청 사유로 제시한 집단은 매출액

- 증가를 가장 긍정적인 경영개선의 성과로 제시하고 있으며, 시설개선 및 기술투자에 대한 성과에 있어서 가장 부정적인 응답을 제시하고 있음
- 제조원가 상승을 신용보증 지원신청의 사유로 제시한 집단의 경우도 시설개선 및 기술투자에 대한 성과를 가장 부정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자금난 해소에 대한 성과를 가장 긍정적으로 제시함.
 - 신용보증 지원신청의 이유로 시설 및 기술투자 확대나 금융비용 부담의 증가, 혹은 금융기관 대출의 곤란을 사유로 제시한 집단들은 자금난 해소에 대한 성과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고용안정 및 증대에 대한 성과를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5. 보증지원 금액에 따른 만족도 및 경영성과 분석

○ 만족도 비교

- 신용보증 지원금액에 따른 항목별 만족도 수준을 살펴보면, 먼저 모든 집단에서 일관되게 보증 비용에 대한 만족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4-24> 신용보증 지원금액에 따른 만족도 수준의 평균비교

신용보증지원금액	만족도				
	지원절차 간소화	처리기간 신속성	지원조건	보증금액 규모	보증비용
3천만원이하	4.30 (0.92)	4.43 (0.81)	3.97 (1.12)	3.59 (1.15)	3.52 (1.13)
3천만원~5천만원이하	4.14 (0.94)	4.27 (0.86)	3.77 (1.16)	3.73 (1.06)	3.25 (1.36)
5천만원~1억원이하	4.45 (0.69)	4.18 (0.95)	3.82 (0.93)	3.71 (1.01)	3.47 (1.11)
1억원~2억원이하	4.43 (1.13)	4.14 (1.21)	3.43 (1.40)	3.43 (0.98)	3.00 (1.15)
2억원 초과	4.45 (0.69)	4.18 (0.98)	4.09 (0.94)	3.82 (1.08)	3.30 (1.64)
합계	4.29 (0.89)	4.31 (0.88)	3.86 (1.10)	3.67 (1.08)	3.39 (1.23)

- 신용보증 지원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집단의 경우는 처리기간의 신속성에 대한 만족 수준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고, 5천만원 이하인 집단의 경우는 지원절차의 간소화에 대한 만족 수준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개선사항 비교

- 모든 집단이 보증지원 금액의 확대를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의 1순위 혹은 2순위로 일관되게 지목하고 있음.
- 보증지원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한 집단의 경우는 보증기간의 확대를 가장 시급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지목한 응답자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보증지원 금액이 3천만원 ~ 5천만원인 응답자 집단의 경우는 보증비용의 감소를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신용보증 지원금액이 5천만원 ~ 2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집단은 보증지원 금액의 확대 이외에 보증지원 조건의 완화를 시급한 개선사항으로 제시한 응답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4-25> 신용보증 지원금액에 따른 개선사항의 비중분포

보증금액	신용보증제도개선사항					
	지원금액 확대	지원서류 간소화	지원절차 신속성	보증기간 확대	지원조건 완화	보증비용 감소
3천만원이하	26.32	13.16	5.26	22.37	11.84	21.05
3천만원~5천만원이하	25.42	8.47	11.86	3.39	10.17	40.68
5천만원~1억원이하	44.74	10.53	10.53	5.26	18.42	10.53
1억원~2억원이하	28.57	14.29	0.00	14.29	28.57	14.29
2억원 초과	18.18	18.18	0.00	45.45	18.18	0.00
합계	29.32	11.52	7.85	14.14	13.61	23.56

○ 경영성과 비교

- 신용보증 지원금액에 따른 경영개선 성과 인식을 살펴보면, 지원금액이 1억원 ~ 2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집단의 전반적인 경영개선 성과에 대한 인식이 가장 긍정적인 데 비해서(4.57), 지원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집단의

경영개선 성과에 대한 인식이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1.64).

- 모든 집단에서 자금난 해소에 대한 성과 평가가 가장 긍정적인데 비해 고용안정 및 증대에 대한 성과 평가가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4-26> 신용보증 지원금액에 따른 경영성과 수준의 평균비교

지원금액	경영성과				
	전반적 경영개선	매출액 증가	자금난 해소	시설개선 및 기술투자	고용안정 및 증대
3천만원이하	4.49 (0.73)	3.84 (0.97)	4.08 (0.90)	3.85 (0.98)	3.53 (0.90)
3천만원~5천만원이하	4.56 (0.56)	3.80 (0.96)	4.09 (0.94)	3.73 (0.99)	3.63 (0.93)
5천만원~1억원이하	4.47 (0.60)	4.05 (0.80)	4.13 (0.840)	4.00 (0.93)	3.63 (1.00)
1억원~2억원이하	4.57 (0.53)	3.86 (1.07)	4.14 (0.90)	3.29 (0.95)	3.29 (1.11)
2억원 초과	4.36 (1.21)	3.64 (1.50)	4.09 (1.22)	3.91 (1.38)	3.64 (0.92)
합계	4.51 (0.68)	3.85 (0.97)	4.10 (0.91)	3.82 (0.99)	3.58 (0.93)

제3절 분석결과 종합

- 이 연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신용보증 이용현황과 이용 만족도, 신용보증으로 인한 경영개선 성과, 그리고 현행 신용보증제도의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였음.

- 신용보증 이용현황에 대한 분석결과 종합
 - 응답자 집단을 대상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신용보증 지원을 받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시설 및 기술투자 확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유로 제시되었음(43.72%).
 - 보증지원을 받는 금액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71.86%가 5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보증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이 소액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신용보증재단 이외의 대안적 자금 확보 방안으로서 응답자의 25.5%는 가족 및 친지 등 지인을 통한 조달을, 21.5%는 자금 확보의 포기를 응답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이 소상공인 등에 대한 핵심적인 자금 조달원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

- 신용보증 이용만족도에 대한 분석결과 종합
 -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제공한 신용보증에 대한 만족도를 지원절차의 간소화와 처리기간의 신속성, 지원조건, 보증금액의 규모, 그리고 보증 비용의 항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만족 한다는 응답이 불만족 한다는 응답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전체적으로 만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됨.
 - 개별 항목간 만족 수준을 비교하면, 신용보증의 절차적 측면에 해당하는 지원절차의 간소화와 처리기간의 신속성 항목은 상대적으로 만족의 수준이 높은 데 비해서 신용보증의 내용적 측면에 해당하는 지원조건과 보증금액의 규모, 그리고 보증 비용의 항목은 상대적으로 만족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신용보증 지원신청 이유에 따른 항목별 만족도 수준의 비교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신용보증 지원신청 사유로 판매부진, 시설 및 기술투자 확대, 혹은 금융기관 대출 곤란을 제시한 응답자 집단은 보증 비용에 대한 만족도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판매대금 회수지연, 제조원가 상승, 혹은 금융비용부담의 증가를 사유로 제시한 응답자 집단에서는 보증금액의 규모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신용보증을 이용하는 집단의 이용사유와 신용보증의 지원 내역 혹은 방식간의 체계적인 연계를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신용보증 지원금액에 따른 항목별 만족도 수준의 분석 결과 모든 집단에서 일관되게 보증비용에 대한 만족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신용보증 이후의 경영성과에 대한 분석결과 종합

- 신용보증을 통한 경영개선 성과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인 경영개선의 성과에 대해서 응답자의 92.5%가 긍정적인 응답을 제시함.
- 신용보증을 지원받은 이후의 경영성과를 매출액 증가와 자금난 해소, 시설 개선 및 기술투자, 그리고 고용안정 및 증대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모든 항목에서 도움이 된다는 응답 비중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 비중에 비해 높게 나타나 신용보증 지원의 경영성과에 대한 응답자 집단의 긍정적인 평가가 확인됨.
- 경영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개별 항목간 상대적인 차이를 살펴보면, 자금난 해소에 대한 경영성과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제시한 데 비해 고용안정 및 증대와 관련된 경영성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의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됨.
- 신용보증 지원신청 이유에 대해서 판매부진을 제시한 집단에서는 매출액의 증가와 고용안정 및 증대에 대한 성과 평가가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판매대금 회수지연과 제조원가의 상승을 지원신청의 사유로 제시한 집단은 시설개선 및 기술투자에 대한 경영개선의 성과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제시하였음. 나머지 사유에 해당하는 집단들은 모두 고용안정 및 증대에 대한 성과를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음. 결과적으로 신용보증 지원신청의 사유가 신용보증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신용보증 지원금액에 따른 경영성과 평가 결과, 모든 집단에서 고용안정 및 증대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보고되었음. 결과적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과 고용안정 및 증대를 연계할 수 있는 인센티브 마련 등의 시책이 필요함.

○ 현행 신용보증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분석결과 종합

- 현행 신용보증제도의 개선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보증지원 금액의 확대(29.17%)와 보증비용의 감소(23.44%)가 상대적으로 시급한 개선사항으로 제시되었음.
- 신용보증 지원신청 사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 곤란을 제시한 응답자 집단은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으로 보증비용의 감소를 제시하였으며, 나머지 집단은 일관되게 보증지원 금액의 확대를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으로 제시함.
- 신용보증 지원금액에 따른 개선사항의 조사결과, 모든 집단이 보증지원 금액의 확대를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의 1순위 혹은 2순위로 일관되게 제시하였음.
- 보증지원을 받은 개별기업들의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미시성과를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는 고객의 대부분이 재무제표를 보유하지 않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므로 설문조사를 통해 신용보증 성과를 측정하고자 함.

제5장 해외 신용보증제도의 비교¹⁹⁾

제1절 신용보증제도의 유형²⁰⁾

- 신용보증제도는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복합적이고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특성 때문에 체계적으로 분류하기가 쉽지 않으며, 오늘날 전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신용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각 국가의 신용보증제도 운용방식이 상이한 것은 그 나라의 경제발전과정, 사회·문화적 특성, 정치체제 등의 차이에서 기인하기 때문임

- 신용보증제도의 정의는 국가마다 다르지만 다양한 정의 속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음
 - 첫째, 신용보증제도는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을 제공하여 금융접근성을 높임
 - 둘째, 담보력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제도금융권으로부터 대출 등을 받을 수 없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증대함
 - 셋째, 신용보증제도는 독립된 공적 보증기관 또는 공적 자금을 의해 운용되는 공적 시스템으로서 각 국가는 자국의 특성에 맞는 보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신용보증제도는 운용주체 및 운용메커니즘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회원(중소기업)들의 출연이나 출자를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는 상호보증제도(mutual guarantee scheme)
 - 정부의 출연내지 출자를 재원으로 하여 독립된 보증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공공보증제도(public guarantee scheme)

19) 신용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내부자료를 참고로 재구성하였음.

20) 남기정(2007). 「해외보증제도 비교」. 신용보증기금 「코딩리서치」.

- 독립된 보증기관 없이 정부의 프로그램으로 운용되는 용자보증제도(loan guarantee scheme)

<표 5-1> 신용보증제도의 유형

구 분	상호보증제도	공공보증제도	용자보증제도
운용주체	중소기업단체	독립된 보증기관	은행
보증형태	기관보증 및 정부재보증	기관보증	정부보증
보증대상	회원기업	불특정 기업	불특정 기업
공 신 력	소	대	중
보증금액	소	대	중
신용조사 보증심사	형식적	필수적	없음
보증활용	중	대	소
운용국가	유럽 지역	아시아 지역	미주 지역

자료: 신용보증기금(2006), 「세계의 신용보증제도」, p.21

- 상호보증제도는 근대적 신용보증제도 중에서 가장 오래된 형태로서 회원(중소기업)들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가 회원의 금융기관 대출을 보증해 주는 제도임
 - 상호보증제도는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등 유럽 국가에서 주로 운용되고 있으며, 최근 일부 중남미 국가에서도 도입·운용하고 있음
 - 상호보증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회원기업들의 감시와 통제를 통해 대출금 상환을 보장하고, 정보의 비대칭성과 관련된 문제들을 극복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임
 - 하지만 회원기업들의 상호부조적 관행 때문에 동일 기업당 보증규모가 작고, 회원기업에게만 이용자격이 주어진다는 한계가 있음
- 공공보증제도는 별도로 독립된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보증을 공급하는 형태로서 주로 아시아 지역에서 널리 운용되고 있음

- 공공보증제도는 보증채무이행의 최종적인 책임을 정부 등 공적 기관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떠맡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보증제도에 비해 공신력이 매우 높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보증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음.
 - 아시아의 한국, 일본, 대만 등은 독립된 보증기관이 보증을 담당하는 형태를 띠고 있으며, 주로 정책금융을 통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보완하는 형태로 유지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신용보증협회가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하고, 일본정책금융공고가 신용보증협회가 보증한 보증에 대한 재보험을 하는 2중적 구조임.
 - 대만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이 주로 위탁보증 형태로 보증을 공급하고 있으며, 최근 직업보증의 확대를 기하고 있음.
- 용자보증제도는 자격요건, 보증한도 등 일정한 보증조건을 미리 정해두고 보증실무처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요건을 충족시키는 대출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고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임
- 용자보증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별도의 독립된 신용보증기관을 설립하지 않고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 형태로 운용됨
 -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금융기관과 포괄적인 신용보증협약을 체결하고 거의 대부분의 보증실무를 위탁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창구는 협약금융기관임

제2절 일본의 신용보증제도

1. 신용보증제도의 의의

- 1953년 특수법인의 설립을 통해 현대적 의미의 보증제도 도입
 - 독일식 신용보증제도를 기본으로 1937년 동경신용보증협회를 설립하여 기관보증제도를 도입하였음.
 -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1950년 초 중소기업의 금융문제를 돕기 위해서 전국단위의 신용보증제도를 구상하였고, 1953년 신용보험협회법이 제정되고, 1958년 중소기업신용보험공고가 설립되었음.
 - 이에 따라 신용보험제도와 신용보증제도의 2원적 신용보증제도를 갖추게 되었음.

- 1990년대 이후 장기불황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
 - 장기적 경제불황으로 중소기업이 위기에 처하자 20조엔 규모의 보증여력을 새롭게 확보하는 등 제도를 손질함.
 - 1998년 보증한도를 기존의 2배로 확대하는 등의 특별보증을 실시
 - 2000년에는 순수신용보증한도를 8000만엔으로 증액하고, 보증대상을 확대

- 중소기업금융공고(JASME) 설립
 - 기존의 중소기업지원기구인 중소기업신용보험공고(Japan CIC), 중소기업사업단(JSBC), 섬유산업구조개선사업협회를 통합해 단일기관으로 출범.
 - 기존의 중소기업신용보증공고에서 인수한 신용보험업무를 포함해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도, 인력훈련, 상호부조 같은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

- 다층적인 자원조성
 - 일본은 정책금융공고(JFC)의 대출 및 채보증, 지방정부의 출연금, 금융기

- 관의 출연금과 부담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음.
- 한국의 경우 대부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마련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재원조성 방안이 좀 더 다층적이라고 할 수 있음.

<표 5-2> 일본 신용보증협회의 기본재산 및 출연 현황

(단위 : 백만엔,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기본재산	1,363,743		1,394,883		1,427,763	
기금	431,799		436,015		443,953	
금융안정화특별기금	56,066		50,517		45,890	
기금준비금	875,878		908,351		937,919	
출연금 합계	766,675	100	771,175	100	775,679	100
지방정부	606,367	79	607,924	79	608,255	78
- 현	512,962	67	514,002	67	514,181	66
- 소도시	93,405	12	93,922	12	94,073	12
금융기관	158,483	21	162,426	21	166,607	22
기업단체	825	0.1	825	0.1	817	0.1

자료 : 황인국(2008). 「한국·일본·대만의 신용보증제도 비교」. 코딯리서치. p.45

- 지방정부가 78%, 금융기관이 22%를 출연하여 한국보다 정부의 출연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일본정부는 지방정부를 통해 보증협회기금에 대한 보조를 시행하는 것 이외에 2005년부터는 자연재해, 거래처 도산 등으로 인한 특례보증에 의한 추가적인 손실보상 보전금을 지원하는 등 보증협회의 위험도를 상당부분 흡수하고 있음.

2. 신용보증제도 운용체계

- 중소기업금융공고와 신용보증협회의 2원적 운용체계를 가지고 있음.
 - 중소기업금융공고는 1999년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중앙정부가 전액출자하였으며, 보증협회에 대한 신용보험, 지역별 벤처재단 보증에 대한 보험업

- 보증료 징수를 금융기관이 대행하고, 보증신청을 보증협회외에 지방자치단체 혹은 금융기관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음.

3. 신용보증제도 운용현황

1) 보증규모 및 보증이용율

- 2007년 29조 4천억엔(약298조원) 규모의 보증 실시
 - 신용보증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중 세계 최대 규모를 운용중임.
 - GDP 대비한 보증잔액은 2007년 기준 5.7%로 조금씩 감소추세
 - 2001년 37조엔의 보증잔액을 정점으로 조금씩 보증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해 2006년에 29조 3천억엔, 2007년에 29조 4천억엔의 보증잔액을 기록
 - GDP 대비 보증잔액도 2001년 7.44%를 정점으로 매년 조금씩 감소추세를 보이면서 2006년에 5.75%, 2007년에는 5.72%를 기록
- 중소기업의 대출 잔액 가운데 보증이용율은 2007년 11.4% 기록
 - 일본전체 중소기업의 대출잔액과 보증이용율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 2001년 전체 중소기업 대출규모는 316조 2천억엔이었고, 이 가운데 보증이용율은 11.7%였으며
 - 2007년에는 전체 중소기업 대출규모 257조 4천억엔 가운데 보증이용율은 11.4%를 보임.
- 보증업체수를 기준으로 한 보증이용율은 2007년 37.5%
 - 2001년 전체 중소기업 4,837개 가운데 보증을 이용한 업체수는 2,103개 기업으로 업체수를 기준으로 한 보증이용율은 43.5%임.
 - 2007년에는 전체 중소기업 4,198개 가운데 1,574개 기업이 보증을 이용하여 이용율 37.5%를 기록함.

2) 운용배수, 보증료 및 대위변제

- 2007년 일본의 보증 운용배수는 20.6배에 이룸
 - 2001년 운용배수 26.4배를 정점으로 매년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7년에는 20.6배를 기록하였음.
 - 일본은 정부가 보증협회를 재보증하는 재보증 비율이 70% 정도로 높아 보증협회의 실질적 운용배수는 평균 6.8배에 불과하여 매우 안정적인 수준이라 할 수 있음.

- 2006년 기존의 고정 보증료 체계를 변동 보증료율 체계로 변경함.
 - 기존에는 보증료 1.35%, 보험료 0.87%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였으나, 2006년 새로운 변동 보증료율 체계를 도입하였음.
 - 신용 리스크에 따라 9단계로 세분화하고 신용 리스크에 따라 보증료를 0.5%에 2.2%로 차등화하고, 보험료도 0.15%에서 1.59%사이로 차등화함.

- 대위변제율은 평균 2.9%, 순대위 변제율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01년에서 2007년 사이 대위변제율은 최고 3.8%에서 최저 2.3% 사이를 유지하였으며 평균적으로 2.9% 수준의 대위변제율을 보임.
 - 일본의 보증은 담보를 설정하는 비중이 높아 담보채권 위주로 회수활동을 활발하게 행하고 있으나, 1998년과 2001년 사이에 실시된 「금융안정화특별보증」 이후 담보부 보증이 감소하고 있어 대위변제 가능성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임.

- 보증협회채권추심(주) (CGS : Credit Guarantee Service Inc.)
 - 오랜 장기불황으로 대위변제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보증 부실이 문제가 되면서 일본의 지역 보증협회가 공동출자를 통해 채권추심을 하기 위해 2001년 CGS를 설립하였음.

- 이에 따라 2007년 구성권 수탁잔고는 3.3조엔, 회수실적은 총회수 금액의 20%를 넘는 486억엔에 이릅니다.

4. 정책적 시사점

○ 상향식 보증규모 결정방식

- 한국의 경우 재단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보증규모와 예산 등에 있어 중앙정부 혹은 각 지역재단의 경우 지방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어 중앙집권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 일본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지역 보증협회가 지방정부와 협의하여 보증규모를 결정하고, 전체 보증규모의 결정도 지역별 보증협회의 계획을 제출받아서 결정하는 상향식 형태를 취하는 특징이 있음.

○ 높은 수준의 담보부 보증비율

- 일본의 보증은 담보를 설정하는 비중이 높아 담보채권 위주로 회수활동을 활발하게 행하고 있어 사고발생시 대위변제 가능성이 높은 장점이 있음.
- 하지만, 경제위기와 이에 따른 재정지원 확대를 위해 1998년과 2001년 사이에 실시된 「금융안정화특별보증」 이후 담보부 보증이 감소하고 있어 대위변제 가능성이 증가하는 등 건전성 악화가 예상된다.

제3절 독일의 신용보증제도

1. 신용보증제도의 현황

- 1930년 유한회사 성격의 보증협회를 설립한 것이 독일 신용보증제도의 효시
 - 1929년 경제공황의 여파로 실업자 증가, 중산층 붕괴 등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지역상공회의소와 수공업회의소를 중심으로 고용을 확대하고 회원기업의 갱생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
 - 보증협회는 공황 극복을 위한 임시방편으로 실업문제가 현저한 일부 공업도시에서만 설립된 한계로 인해 1940년까지 라인·마인보증협회를 제외한 모든 보증협회들이 폐쇄됨

- 오늘날 독일 신용보증제도의 전신은 1953년에 설립된 신용보증조합(KGG : Kreditgarantie Gemeinschaften GmbH)으로 알려져 있음
 - 수공업계 신용보증조합의 설립을 시발로 상공인연합회 등 타업종단체로 확산되었고, 이후 각 주정부 단위 경제단체들의 조합으로 발전

- 1970년 이후 신용보증조합은 보증은행(Bürgschaftsbanken)으로 이름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 1980년대에는 업종단체별 이익단체의 특성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산업전체를 지원하는 금융기관으로 발전되었으며, 독일 은행법과 바젤 I의 규제를 받게 됨
 - 1990년에는 전체 보증은행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보증은행 설립이 확대됨
 - 현재 전국 16개주에 22개 보증은행이 산재하여 각 주의 중소기업에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있음

<표 5-3> 독일의 주별 보증은행 현황

(단위: 개, 백만유로)

지 역(州)	보증은행수	업체수	보증잔액	신규공급
바덴-뷔르템베르크 ²¹⁾	1	11,082	1,287.9	281.3
바이에른	2	2,267	360.5	68.1
베를린	1	1,899	206.5	48.0
브란덴부르크	1	1,803	239.8	61.0
브레멘	1	349	45.9	11.5
함부르크	1	3,007	265.3	75.0
헤센	1	1,970	226.9	37.0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1	1,630	194.7	26.7
니다작센	1	2,059	230.4	44.9
노르트하인- 베스트팔렌	2	4,230	417.1	92.7
라인란트-필츠	2	1,653	229.9	67.1
자를란트	2	156	19.7	5.7
작센	1	3,079	424.8	77.9
작센-안할트	1	2,403	358.9	66.7
쉬레스비히-홀스타인	1	2,671	337.5	76.9
튀링겐	1	2,289	296.9	53.8
조지알비르트샤프트 ²²⁾	1	214	56.3	8.7
합계(2006년)	22	42,661	5,199.3	1,04.2

자료: 독일 보증은행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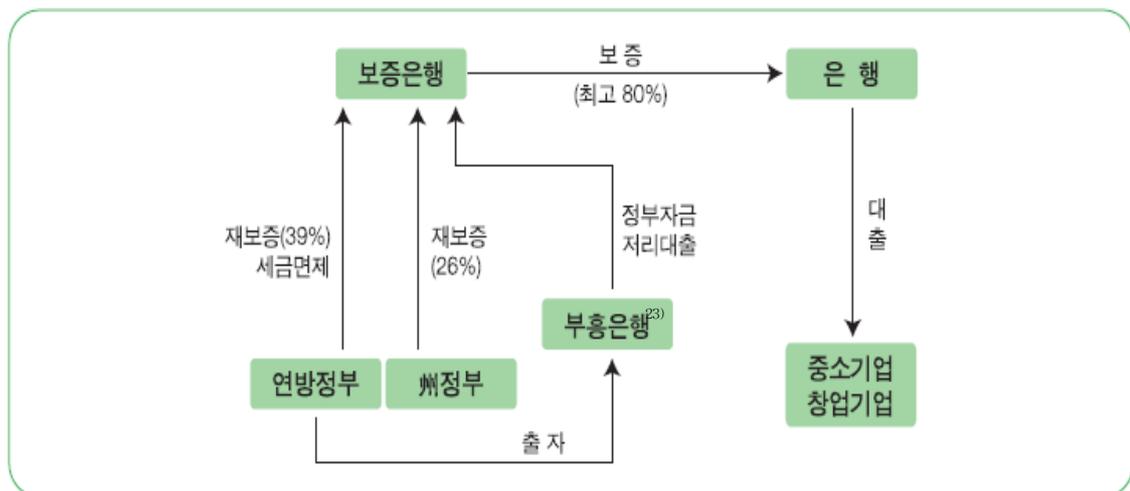
2. 운용체계

- 독일의 보증제도는 재보증(counter guarantee)과 부흥은행을 통한 정부 특별자금의 저리대출 등에 의해 간접적으로 재정을 지원

- 21) 바덴-뷔르템베르크 주(Land baden-württemberg) 보증은행은 독일 보증은행 중 최대 규모로 전체 보증잔액 중 25%를 차지하고 있음.
- 22)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병원, 훈련기관, 휴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의 투자 및 건설을 지원하는 사회경제보증은행(Guarantee Bank for Social Economy)으로 주별로 설립된 다른 보증은행과 달리 관할구역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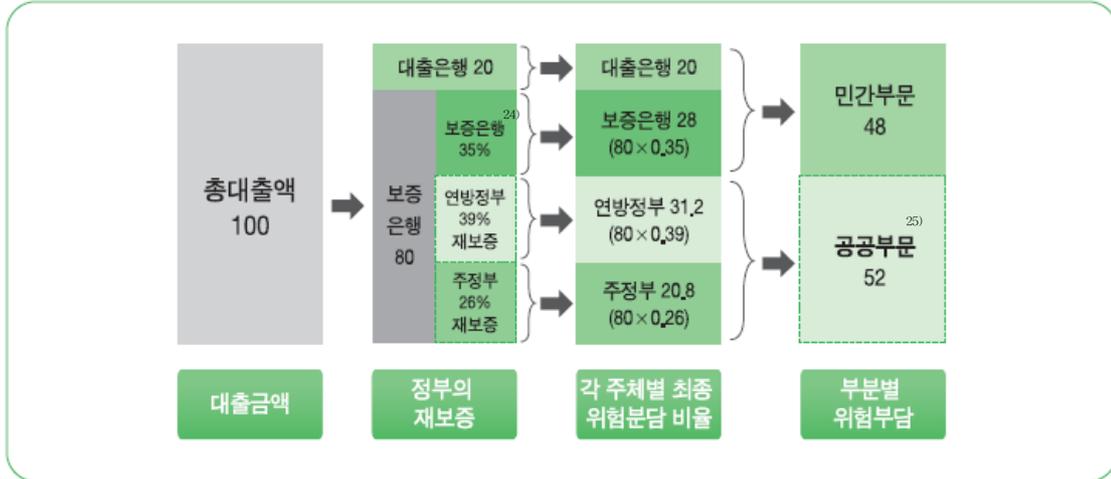
- 보증은행은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의 대출에 대해 최고 80%를 보증하고 연방정부 39%, 주정부가 26%를 각각 재보증(재보증 합계 65%)
 - 재보증을 감안한 각 주체별 실질적인 보증책임 비율은 보증은행 28%, 연방정부 31.2%, 주정부 20.8%임 (정부의 책임비율 합계 52%)
- 보증부 대출 절차는 ① (기업) 대출신청 ➡ ② (채권은행) 신용조사 후 보증신청 ➡ ③ (보증은행) 보증심사 및 재보증신청 ④ (연방정부·주정부) 재보증 승인 ➡ ⑤ (보증은행) 보증은행 승인 ➡ ⑥ (은행) 대출실행의 단계로 이루어짐.

<그림 5-2> 독일 보증제도의 구조



23) 부흥은행(KfW : 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은 독일 경제부흥을 목적으로 1948년 "KfW 법률"에 의거 설립된 공공법인으로 중소기업·주택·환경보호 사업지원, 개도국원조 및 금융협력, 수출 및 프로젝트 금융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80%,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방정부가 KfW의 모든 채무를 보증

<그림 5-3> 재보증 시스템의 책임분담 비율



○ 보증제도의 운영에 공적 부문의 지원방법은 대체로 아래의 4가지 방법에 의해 이루어짐

- 독일의 경우 재보증, 저리자금 대출, 세금면제의 방법으로 보증은행을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공적 지원의 강화로 유럽에서 상호보증 제도가 가장 발달한 나라로 평가되고 있음

공적 지원방식	지원효과
① 재보증	민간 보증기관에 보증을 제공 - 보증기관의 신용위험을 감소시키고, 보증여력을 증가
② 저리자금 대출	저리의 정책자금을 보증기관에 대출 - 보증기관의 재무적 부담을 경감 - 보증료를 인하하여 중소기업의 보증이용 접근성을 높임
③ 무상출연	무상출연에 의해 보증기관의 기본재산 확충 - 재보증, 저리자금 대출에 비해 비용부담이 큼
④ 세금 혜택	보증기관의 세금을 감면 혹은 면제 - 이익의 재투자를 가능하게 함

24) 구동독지역에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통상 연방정부 48%, 주정부 32%(합계 80%)의 비율로 서독지역 보다 재보증 비율이 높음. 공공부문의 최종 위험분담은 80×80%=64로 서독지역보다 높음.

25) 법정운용배수는 35배임(보증은행이 35%의 책임을 분담하는 점을 감안할 때 보증은행의 실제 운용배수는 바젤II 기준에 따라 35×0.35=12.5배로 운용

- 보증은행은 경제단체 및 은행 등의 출자에 의해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성격의 자조적(self-help) 기관으로서 민간(private) 특수은행으로 분류
 - 연방은행감독원의 허가를 얻어 설립되어 대출보증, 리스보증, 투자회사의 중소기업 지분투자에 대한 보증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며, 대출이나 예금의 취급은 금지
 - 보증은행의 출자자는 수공업협회와 조합, 상공인협회, 자유업·조정업자협회, 경제인협회, 은행, 금고, 은행협회 및 보험회사 등임
 - 주주총회, 이사회, 감독위원회 및 보증심의위원회 등 4개의 주요 의사결정 기구를 보유함.
 - 보증심의위원회는 보증결정, 보증운용에 있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구로 분야별 경제단체 전문가, 주주 금융기관 및 주정부에서 파견된 대표자 등 7~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수결원칙에 의해 의안을 결정하되 주정부 파견위원이 거부권 행사 가능

<그림 5-4> 보증심의위원회의 구성



- 보증은행은 은행법의 규제를 받으므로 일반 은행이 준수해야하는 지급준비율과 최소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의 8%)을 유지해야함.
- 보증은행은 독일 정부의 신용평가 등급인 AAA로, 보증부대출의 위험가중치는 20%를 적용받음.
- 보증대상기업은 독일 소재 중소기업, 자유직업인 및 창업기업으로 사실상 모든 업종이 보증대상임.

- 주별로 지역별 관할구역제(single guarantee bank per bundesland)로 운영되어 경쟁시스템이 없는 독점체제를 유지
 - 한 주내에 2개의 보증은행이 있는 경우에도 업종별로 사업영역이 구분되어 있고, 주정부의 엄격한 관리감독으로 보증은행간 경쟁을 지양함(pacts of no competition).
- 보증제도의 운영재원은 납입자본금, 적립금, 보증료 및 등록료 수입 외 유가증권 및 은행예치금의 이자수입 등 자산운용수익 등으로 조성
- 이익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한 후 대손충당금 설정부족액 또는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
- 보증은행은 국책은행인 부흥은행(KfW)을 통한 유럽부흥프로그램(ERP ; European Recovery Program) 특별자금의 저리융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
- 저리에 의해 조달한 장기차입금과 이익잉여금으로 주식, 회사채, 금융상품 등에 투자하여 투자이익을 보증운용 재원으로 활용
- 투자방침은 운영위원회의 엄격한 가이드라인에 의해 결정되어 시장위험을 통제하며, 감독기구는 주기적으로 가이드라인에 대한 규제를 통해 통제함.
- 보증은행 손익계산서의 주요항목으로는 보증료수익, 투자수익, 인건비, 관리비, 대손상각비 등임.
- 보증료는 0.8%~1.5%이고, 보증금액이 아니라 전체 대출금액에 대해 부과됨.
 - 보증료는 신용분석사(credit analyst)가 결정하며 대개의 경우 고정요율 체계로 신용등급, 대출기간, 대출금액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님.
 - 최근 일부 보증은행의 경우 신용등급별로 차등화된 보증료 체계를 도입할 계획을 추진 중임.
 - 매년 부과되는 보증료 외에 보증승인시에 보증금액의 1%에 해당하는 등록비(processing fee)를 1회에 한해 지불해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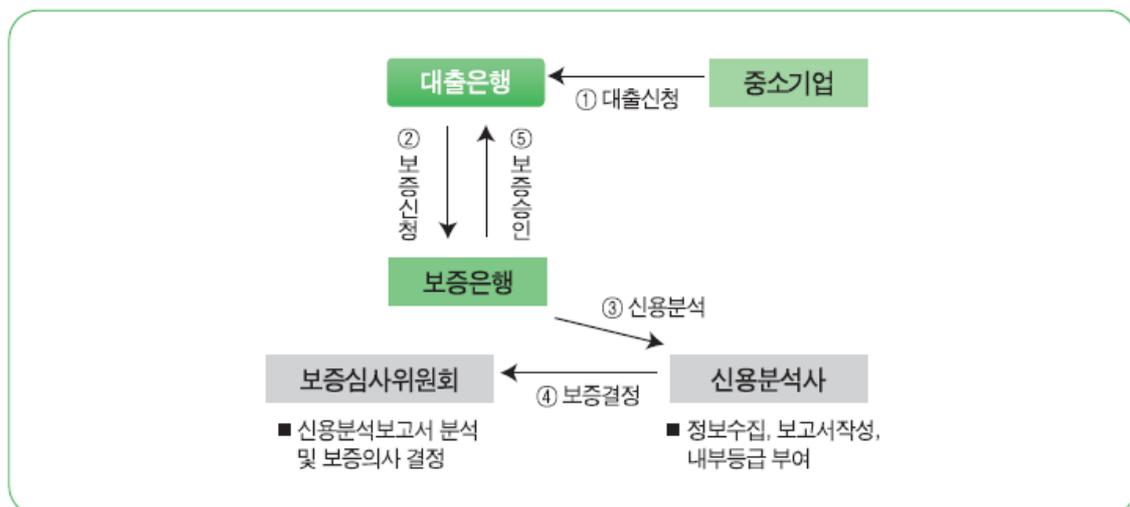
- 등록비는 보증을 거절하더라도 반환하지 않으며, 보증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등록비의 50%를 반환함.
- 투자에 의한 수익은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자본수익 등이 있으며 이는 보증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수익원임.
- 투자수익으로 운영비용을 조달하며 보증료 수준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기업의 보증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일부 대위변제 비용도 충당함.

3. 보증절차

1) 보증신청 절차

- 통상 중소기업이 은행에 먼저 대출을 신청하고, 은행이 기업의 신용을 분석한 후 담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은행이 보증은행에 보증을 신청
- 중소기업이 대출은행을 경유하여 보증을 신청하게 되는 간접방식의 절차임.

<그림 5-5> 보증절차(간접방식)



- 몇몇 보증은행의 경우 중소기업이 보증은행을 직접 접촉하여 보증서를 발급 받은 후 대출받을 은행을 접촉하는 직접방식²⁶⁾을 도입
 - 주거래은행과의 거래관계가 없어 은행에 직접 대출을 신청하는데 애로가 있는 창업 중소기업 등에 유용한 방법으로 활용됨
 - 보증서는 통상 3개월의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중소기업이 보증서(담보)를 가지고 대출은행을 선택하여 대출조건 등을 협의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입장에서 자금조달이 유리
 - 직접방법에 의한 보증신청의 경우 보증한도가 주별로 다양하지만 대개 8만유로~25만유로 사이로 업력이 짧고 은행과의 거래관계가 길지 않은 창업 중소기업의 소액자금 위주로 운용
 - 2007년 7월을 기준으로 22개 보증은행 중 12개(55%)가 직접방법을 도입하였으며, 브란덴부르크주 보증은행의 경우 2006년도 총 보증신청 597건 중 291건(48.7%)이 직접방법에 의한 것임(거절율 53%)
 - 직접방법의 도입으로 기존의 간접방법에 의해 보증신청이 가능한 기업들도 보증은행에 직접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보증은행의 심사부담·비용 상승, 보증신청 거절율의 증가로 인한 단점 등이 발생

<표 5-4> 직접방법(BoB)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유리	보증은행의 기업심사 비용 증가 및 등록비 인상
은행의 거래비용 경감 - 대출은행의 신용조사 등 비용절감	주거래은행을 통한 기업의 사전심사가 불가능
보증은행이 경영지도 등 부가서비스제공	보증은행의 보증거절율 증가에 따른 평판 훼손

- 최고 보증한도는 1백만유로, 대출금액의 80%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보증은행은 중소기업, 특히 창업기업 보증을 주로 취급

26) 은행을 거치지 않은 보증(surety without a bank)이라는 뜻의 독일어“Bügschaft ohne Bank”의 머리글자를 따서 BoB방식이라고 함

- 운전자금, 고정자산 투자, 기계설비 도입, 무형자산, 사업전환, 구조조정 자금 등 보증대상 기업과 자금에는 제한이 없음.
- 거래대상 금융기관에 제한은 없으나 주요 상업은행은 대기업 자금공급이 중심이므로 통상 중소기업을 주로 상대하는 지역은행, 즉 저축은행, 협동은행 등과의 거래가 발달되어 있음

2) 보증심사 및 승인절차

- 대출은행은 신청기업을 사전심사(preliminary screening)한 후 보증은행의 보증심사에 관련서류 일체를 송부
 - 보증은행은 서류심사 후 추가 정보가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현장실사를 실시하나 인력의 제한으로 현장실사가 필수는 아님
- 신용분석사는 심사에 필요한 정보 일체를 수집한 후 표준적인 절차에 따라 보증신청기업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 수집된 정보의 정리·요약, 내부등급 산출, 신청기업에 대한 추천서의 내용 등을 포함

<표 5-5> 신용분석보고서의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대출조건	보증승인시 기업이 준수해야할 재무비율 등 보증기간동안 기업의 신용도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부과하는 대출조건을 명시
제3자의 신용기록	주거래은행, 상공회의소, 국세청 등의 의견과 관련 기록
담보	신청기업의 담보에 대한 내용 (대출위험의 경감을 위한 보완 심사)
사업계획분석	모든 신청기업이 상세한 사업계획(business plan)을 제출

- 신용분석사는 정보를 수집하고 대출기업의 신용상태를 조사하지만 최종 보증승인은 보증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 보증심사위원회는 표준절차와 약식절차가 있음.

<표 5-6> 표준 심사와 약식심사의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표준심사위원회 (Standard Credit Committee)	- 주주, 경제성, 재무성, 보증은행의 대표로 구성 (보증은행의 위원은 거부권 행사 가능) - 1개월에 1번씩 위원회 개최 - 신용분석보고서(credit report) 준비기간까지 감안하면 통상 보증승인에 3주~2개월 소요
약식심사위원회 (Simplified Credit Committee)	- 재무성, 경제성, 보증은행의 대표, 신용분석사로 구성 - 1주일에 1번 위원회 개최 - 15만유로 이하의 보증신청건 심사 - 보증승인에 필요한 기간은 2주일 이내

- 보증이 심사위원회에서 승인되면 보증수수료, 보증비율 등의 보증조건과 함께 모든 관련서류를 대출은행에 송부

<표 5-7> 보증승인 조건의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보증료 등	- 0.8%~1.5% - 등록료 1%
보증비율	- 50%~80%(보증한도 1백만유로) - 평균 보증비율 65%
보증기간	- 최장 25년 이내
담보 등	통상 담보를 공유(부실방생시 담보의 처분 후 잔액에 대해서 보증비율에 따라 위험을 분담)
대출조건	대출취급시 기업이 준수해야 할 재무비율 등

- 최근 바젤Ⅱ의 도입과 함께 보증은행연합회, 보증은행, 전문 컨설팅회사가 협력하여 등급평가지시스템을 도입
 - 등급평가지시스템은 비재무모형, 재무모형, 외부정보의 분석 3개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듈별 가중치는 업력과 평가목적에 따라 다름
 - 최종 신용평가는 각 모듈별 가중치에 의해 0~100의 점수로 환산되어 점수에 따라 부실율을 반영하여 1~13의 등급으로 구분
 - 보증은행 포트폴리오의 50% 이상이 5~6등급 사이에 분포되어 있음(등급이 낮을수록 충당금 적립비율이 올라감)

- 15만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의 등급은 위험관리부에서 주기적으로 신용등급을 재평가(최소 1년주기)

<표 5-8> 신용평가시스템의 구성

구 분	내 용
비재무평가 (qualitative analysis)	- 경영진의 자질, 전문성 - 조직(organizations) - 회계, 자금관리, 내부통제, 위험관리 - 거래처와의 관계(구매처, 판매처) - 투자 등 사업계획
재무평가 (quantitative analysis)	- 각종 재무비율 분석
산업분석 (external information)	- 산업전망

<표 5-9> 신용평가시스템의 기업별 가중치

구 분	최초평가지			재평가지	
	창업기업	1~3년 업력	그 외	1~3년 업력	그 외
비재무평가	60%	30%	35%	35%	40%
재무평가	-	45%	50%	45%	50%
산업분석	40%	25%	15%	20%	10%
합 계	100%	100%	100%	100%	100%

4. 정책적 시사점

1) 시장원리와 공공적 목적의 조화

- 독일 신용보증제도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조화를 이루는 상호보증제도로 유럽내에서 가장 발달된 보증제도로 평가
 - 독일의 보증기관은 당초 민간부문의 자조적 기관인 보증협회 ➡ 주정부 단위 경제단체들의 이익단체 성격의 신용보증조합 ➡ 독일 은행법의 규제를 받는 보증은행으로 조직의 체계가 발전되어 왔음.

- 보증기관의 조직체계가 현행과 같이 발전되어 온데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보증과 저리자금 대출에 의한 공적지원이 결정적 역할을 하였음
- 독일 재보증 시스템의 책임분담 비율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48:52의 비율로 공공부문의 책임분담이 민간부문보다 다소 높음
 -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독일 상호보증제도에서는 공공부문의 역할이 민간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舊동독지역에 대한 재보증 비율 확대, 지역별 보증은행 외에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경제 보증은행(Guarantee Banks for Social Economy)을 운영하는 등 정책적인 부문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음

2) 보증제도 운영의 측면

- 보증제도의 성립과 관련하여서는 독일의 상호보증제도와 한국의 공공보증제도는 각자 다른 출발점에서 태생하여 시장원리와 공공적 역할의 조화라는 방향을 지향하면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
 - 독일의 경우 정부의 간접지원 방식에 의한 공공부문의 참여, 한국의 경우 금융기관 출연제도에 의한 민간의 참여를 통해 각각 재원의 안정적인 확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보증제도가 조기에 정착
- 경제규모를 기준으로 보증의 운용규모를 보면 독일은 GDP 대비 보증잔액이 0.26%에 불과하고, 저축은행 등 지역 금융기관 위주로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
 - 2004년 기준 신용보증부 대출 취급 금융기관은 저축은행 46%, 협동은행 33%, 민간 시중은행 14%, 투자회사 7%로 저축은행과 협동조합 중심으로 대출이 취급 되고 있음
 - 자금용도별로는 창업자금이 33%, 기업인수 자금이 18%, 기존 회사의 투자 및 운전자금이 49%임

- 보증절차의 경우 독일은 보증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고 대위변제 절차 등 제도운영이 한국보다 비효율적임
 - 독일의 경우 약식심사의 경우 2주일, 표준 심사의 경우 3주~2개월 가량 소요되는 것 외에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협회의 추천절차 등 제출서류와 기업의 준비절차가 까다로움
 - 또한 보증의 주요고객인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① 담보처분후에 대출금 전액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② 금융기관의 대출 회수노력에도 불구하고 1년간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는 경우에 대위변제를 신청할 수 있는 등 보증의 상품성 측면에서 비효율적임
 - 한편, 독일 보증제도의 대위변제율은 3~6%대로 알려져 있으며 2004년의 경우 총 대위변제금액은 252백만유로(한화 3,500억원)로 보증잔액(5,038백만 유로) 대비 대위변제율은 5%임

- 과거 10년간 추이를 보면, 1990년대에는 연간 승인건수가 7,000건을 초과하였으나, 2000년 이후 승인건수가 감소하였다가, 2004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임
 - 2000년 이후 승인건수와 신규공급 감소의 주요원인은 독일경제의 침체와 중소기업의 창업 부진임
 - 경기침체기에 보증공급이 감소하고, 경기상승기에 보증공급이 증대되는 경기순응적인 보증정책으로 경기의 변동성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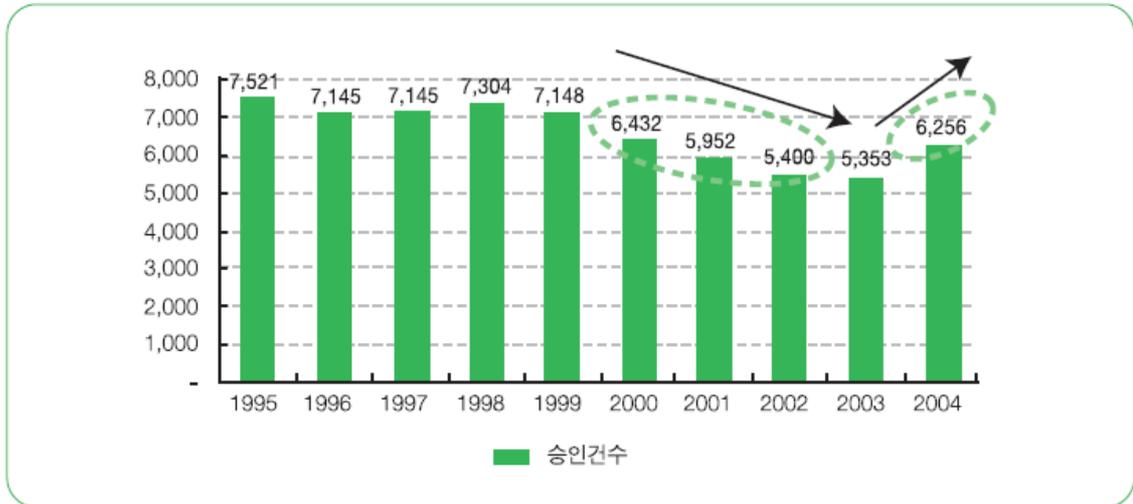
<표 5-10> 독일보증은행의 실적 현황

(단위: 천유로)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기본재산	250,985	260,000	280,000	290,000	300,000	300,000
보증잔액	4,952,169	5,102,565	5,112,670	5,040,719	5,038,136	5,135,702
신규공급	1,054,169	1,016,093	923,068	906,095	1,037,500	1,114,600

자료: 독일 보증은행협회(VDB)

<그림 5-6> 독일보증은행의 보증승인 건수(1995~2004년)



제4절 미국의 신용보증제도

1. 신용보증제도의 의의

- 1953년 중소기업청(SBA) 출범
 -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지원하던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을 통해 보다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한 것이 신용보증의 효시

- 별도의 보증기금제도가 없는 예산에 의한 보증지원
 - 미국의 경우 우리와 같이 일반적인 신용보증기금을 조성하지 않고, 매년 정해진 비율에 따라 연방예산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정부의 예산으로 재원을 조성하는 특징에 따라 정부출연비율이 사실상 100%라고 할 수 있는 특수한 형태로 분류될 수 있을 것임.

- 보증참여 은행에 대한 간접지원
 - 보증제도의 활성화와 보증제도에 참여하는 은행에 대한 지원을 위해 보증은행이 취급하는 보증부대출의 증권화를 통해 개별 은행들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있음.
 - 각 은행들은 보증부대출을 증권화하여 이를 매각하는 방법으로 유동성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

2. 신용보증제도 운용체계

1) 보증대상기업 및 보증절차

○ 보증대상기업

- 미국의 보증제도는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함.
- 이에 따라 일반적인 루트를 통해 제도 금융권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저신용의 영세소기업, 여성사업가, 소수민족사업가, 장애인사업가, 퇴역군인사업가 등이 주된 보증이용 대상자임.
- 우리 신용보증제도와 유사하게 대출, 부동산 개발업, 투기자본, 다단계판매업, 도박, 불법사업 등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보증절차

- 미국은 신용보증을 받으려는 기업이 대출기관(인증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대출기관이 직접 중소기업청에 보증을 신청하는 방식
- 보증절차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청의 금융기관에 대한 위탁범위와 처리과정, 신청서류 등에 따라 표준절차, 인정금융기관경유, 우대금융기관경유, 간이보증, 신속절차의 5가지로 구분될 수 있음.

○ 5가지 보증절차

- 표준절차 :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보증절차로 대출기관에서 기업 소재지 중소기업청에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중소기업청이 관련 사항을 검토하여 보증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통상 10일 이내 처리가 원칙
- 인정절차 :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과거 보증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우수 대출기관의 경우에는 대출기관의 심사분석 자료를 신뢰한 중소기업청이 형식적인 서류절차만 실시한 후 3일 이내에 보증절차를 마무리하는 방식임.

- 우대절차 : 최우수 보증실적을 보유한 대출기관의 경우 보증 전과정을 중소기업청이 해당 대출기관에 위임하여 통상 1일 정도 만에 보증절차가 마무리 되는 방식
- 간이절차 : 대출신청금액이 비교적 소액(15만 달러 이하)이 경우에 신청기업이 대출기관의 신용 요건에 맞으면 중소기업청이 85%까지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약식 보증절차를 의미함.
- 신속절차 : 우대대출기관이 대출보증의 전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신속보증, 저개발지역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정부기관이 대출기관과 더불어 기술교육과 지원을 병행하는 지역활성화 신속보증을 적용되는 절차임.

○ 제출서류 및 검토사항

- 대출기관에 따라 일률적이지 않고 다소 상이한 특징을 보임.
- 일반적으로는 재무제표, 부채상황일정, 외상매출 및 매입 명세표, 리스명세표, 대표자사업투자내역, 추정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 대표자개인금융자산명세표, 대표자 이력서 등을 제출함.
- 중소기업청은 제출받은 서류를 바탕으로 대표자의 신용도 및 인격, 대표자의 사업에 대한 태도, 대출상환능력, 재무의 건전성, 대표자의 사업 기여도, 지분참여 현황 및 대출금액의 적정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담보의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증 여부를 결정함.

3. 신용보증제도 운용현황

1) 보증료, 보증한도, 보증기간

○ 보증료

- 중소기업청은 보증 및 관련 사무처리 비용으로 보증료와 서비스료를 대출기관을 상대로 징수하며, 이를 대출기관은 중소기업청이 정한 범위내에서 해당 기업에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대출신청금액을 기준으로 15만 달러 이하의 소액인 경우 보증금액의 2.0%를 보증료로 징수하고, 15만 달러 이상 70만 달러 이하의 경우 2.5%, 그리고 7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를 보증료로 징수하고 있음.²⁷⁾
- 이외에도 해당 금융기관은 매년 보증잔액의 0.5%의 수수료를 중소기업청에 납부해야 함.

○ 보증한도

- 일반적으로 기업의 보증한도는 100만 달러, 보증대출한도는 200만 달러로 설정하고 있으며, 자금의 종류나 대출보증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보증한도를 갖고 있음.
- 이에 따라 보증책임비율도 달라지는데 통상 보증금액이 적을수록 보증책임 비율은 최고 90%까지로 높고, 보증금액이 큰 경우 40%까지 낮게 책정되고 있음.
- 보전비율이 90%로 가장 높은 보증은 수출운전자금보증, 이행보증의 일부 등이고, 15만 달러 이하의 일반보증이나 간이보증의 경우에도 보전비율이 85%로 상당히 높은 수준임.

○ 보증기간

- 통상 운전자금의 경우 5~10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부동산구입 혹은 기계구입과 같은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최장 25년까지 장기보증을 실시하기도 함.
- 같은 기간 동안에 대출금은 대출상환계획표에 따라 정기적으로 분할 상환되는 것이 원칙임.

2) 이자율, 담보 및 대위변제

○ 이자율

27) 신용보증기금(2003). 「보증월보」 참고.

- 기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출금리는 대출기간과 금액에 따라서 최고상한선을 설정하고 기업과 금융기관 사이의 협상에 따라 이 상한선 이하에서 결정됨.
- 고정금리는 대출기간과 금액에 따라 2.25~4.75%의 차등화 된 가산금리를 더해서 결정하고, 변동금리의 경우 분기별로 이자율을 계산해서 공고하고 있음.

○ 담보

- 대출보증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모든 자산을 담보물로 제공하고, 이 담보물에는 대표자 개인자산도 제공할 수 있음.
- 일정 수준이상의 물적/인적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담보 부족만을 이유로 대출을 거부할 수는 없음.

○ 대위변제

- 대출기간 경과 후 60일이 지나면 중소기업청에 대출기관이 대위변제를 청구하고, 중소기업청은 30일 이내에 보증채무를 이행함.
- 보증채무 이행의 범위는 원금에 대출금이자를 합한 전체금액에 대한 보증책임비율로 결정됨.

3) 운용실적

○ 2004년 126억 달성

- 일반 보증부대출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4년을 기준으로 72,179건에 126억 달러의 보증실적을 기록하고 있음.

○ 특별보증 프로그램 운용

- 2008년 국제적인 금융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미국은 전액보증 제도를 도입하고, 대출이자와 보증료를 면제하는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가동하였음.

- 중소기업 경영안정화 특별보증은 2009년 3월부터 2010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특별보증 프로그램으로 2억 5,500만 달러를 한도로 기존 사업자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용도로 지원하기 시작하였음.
- 보증기간은 5년이며 이 기간동안 중소기업청이 이자를 전액지원함.
- 과거 미국은 9·11테러 직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특별보증을 도입한 사례가 있음.

4. 정책적 시사점

○ 예산에 의한 보증지원

- 현대적인 보증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주요국의 경우 일정한 기금을 조성하거나 민간의 출연금을 함께 조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과 비교해서 미국의 경우 예산으로 보증을 지원하는 것을 특별한 사례라 할 수 있음.
- 정부의 예산으로 보증지원을 행하는 경우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손쉽게 반영되는 장점이 있으나, 자원조성의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최근에는 보증제도의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청이 독점적으로 행사하던 보증결정권한을 금융기관에 위임하는 등 노력하고 있음.

○ 특별보증제도의 도입

- 9·11테러 및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보증제도를 도입한 사례가 있음.
- 특히 최근의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입한 경영안정화 특별보증의 경우 미국 역사상 최초로 전액보증 제도를 도입하고, 같은 기간 동안 이자도 전액 보조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제도를 도입한 특수한 경험임.
- 하지만 9·11 이후 상원의 중소기업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일부 보증 운용에 있어 도덕적 해이가 발견되는 등 특별보증제도의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됨.

제5절 대만의 신용보증제도

1. 신용보증제도의 의의

- 1974년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SMEG) 설립
 - 대만의 경제부 산하에 재단법인형태로 설립된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SMEG)이 주로 위탁보증의 형태로 보증을 공급중에 있음.
 - 협약을 맺은 41개 금융기관과 신용보증 협약을 맺고, 이들 은행의 지점망을 이용해서 보증을 지원하는 형태

- 한국의 신용보증제도가 모델
 - 대만보다 한 발 앞서 시행된 한국의 신용보증제도를 모델로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일반적인 보증이외에도 청년창업 대출, 전통산업 보증 등의 특별보증 프로그램도 활용하고 있음.
 - 재원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의 출연금으로 구성되며, 보증비율 및 각종 보증프로그램도 한국과 유사한 특징

- 위탁보증 위주의 보증제도
 -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위탁보증을 주로 실시하고 있으나, 90년대에 접어들어서 보증공급 절차를 신속하게 하고, 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직접보증 업무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중소기업의 현황
 - 2007년을 기준으로 대만에는 전체 사업체 가운데 97.6%인 1,237개 업체가 중소기업이고, 중소기업의 종사자 수는 7,939명으로 전체 종사자 수의 77.1%에 이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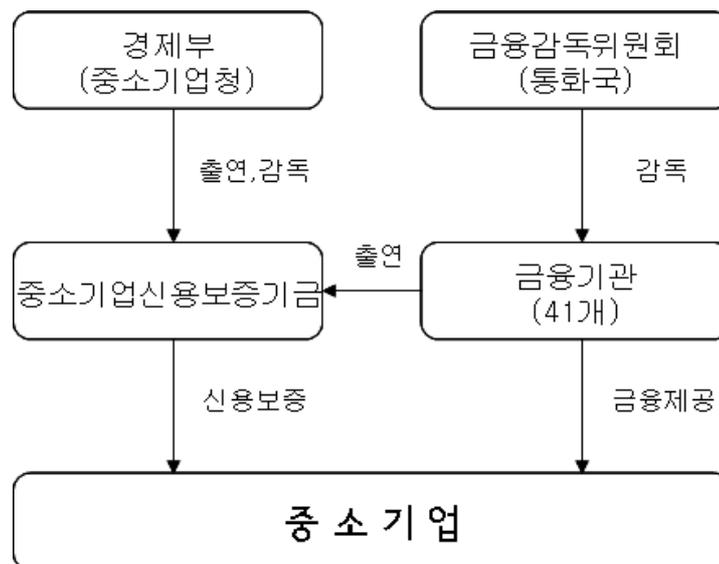
2. 신용보증제도 운용체계

1) 신용보증제도의 운영체계

○ 기본재산 현황

- 대만은 중앙정부 및 금융기관의 임의 출연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정부 출연비중은 약 80%로 한국의 60%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음.
- 2007년 기본재산은 22,374백만 대만원 수준임.

<그림 5-7> 대만 신용보증제도의 운영체계



○ 운영주체

- 한국과 일본 등 다른 아시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독립된 보증기관에 의한 보증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로 정책금융을 통한 중소기업의 자금지원 형태라고 할 수 있음.
- 다만 위탁보증이 주된 보증형태라는 점이 한국과 일본과 비교해서 주요한 차이점임.

○ 보증대상 등

- 일반보증은 업력 및 종업원 기준으로 보통 1년 이상의 업력을 갖고 제조업의 경우 200인 미만 사업장이 주된 보증대상임
- 제조업은 자기자본이 8천만 대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비제조업과 소기업의 경우는 매출액이 각각 1억 대만원 미만, 350만 대만원 미만이어야 보증 대상에 포함됨.
- 특별보증의 경우 별도의 기금으로 운영되고 그 대상도 각기 다르게 운용됨.

3. 신용보증제도 운용현황

○ 보증규모 및 이용율²⁸⁾

- 2007년 기준으로 대만의 보증규모는 3,600억 대만원(약12조원규모)에 이르고, 이는 GDP 대비 2.9%에 해당함.
- 2003년 이후 GDP 대비한 보증잔액 비중이 급증하는 추세였으나 2007년 감소세로 전환되었음.
- 보증이용율은 2001년 업체수를 기준으로 5.9%였으나, 2007년 당시에는 12.5%가 업체가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5-11> 대만의 보증잔액 및 이용율 추이

(단위 : 조NT\$, 천개,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보증잔액	0.15	0.15	0.20	0.29	0.37	0.40	0.36
GDP대비 비중	1.47	1.50	1.88	2.64	3.25	3.37	2.85
중기대출잔액	3.32	2.82	2.81	2.77	2.56	2.83	3.09
보증업체수	64	78	100	126	146	156	155
보증이용율(업체수)	5.9	7.1	8.7	10.8	11.9	12.5	12.5

28) 황인국(2008). 「코딯리서치」. 신용보증기금을 재구성.

○ 신용보증 절차

- 보증신청 및 조사 : 통상 금융기관을 경유하고, 중소기업지원기관 혹은 기금에 직접 신청도 가능함. 조사는 서류조사가 원칙이며 위탁보증은 금융기관이 직접, 직접보증의 경우 4천만 대만원 이상이거나, 5%의 표본에 대해서는 무작위로 현장조사를 병행함.
- 보증심사 : 보증심사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자격심사와 재무제표 등 재무상황과 건전성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구성됨.
- 대위변제 : 5개월 이상 연체되거나, 폐업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보증기금에 채무이행을 청구하고, 구상채권의 행사는 금융기관에 위탁해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

○ 운용배수, 보증료 및 대위변제

- 대만은 2003년 이후 보증잔액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면서, 2005년 운용배수가 20배를 초과하였으며, 기본재산 확충과 경기성장 둔화 등으로 보증잔액이 감소하면서 2007년에는 운용배수가 20배 이내로 감소하였음.
- 보증종류에 따라 보증료에 차등을 두고 있으며, 일반 대출보증의 경우 0.75~1.6%의 보증료를 설정하고 있으며, 영상 및 방송산업 우대대출 보증의 경우 예외적으로 3%까지 보증료를 징수하기도 함. 반면에 학자금대출 신청 및 해외경험을 위한 청년대출보증의 경우에는 교육부가 보증료를 지급해 실질적으로 보증료 부담없이 대출이 가능함.
- 해마다 대위변제율은 감소하고 있으며 2007년 기준으로 2.1%의 대위변제율을 기록하고 있음. 또한 대만의 경우 대위변제 심사가 무척 까다롭고 거절율이 10% 이상으로 높으며 인력부족으로 대위변제 기간도 상당기간 소요되는 특징을 보임.

4. 정책적 시사점

○ 단독 보증기관의 운용

- 대만은 경제부에서 단독적으로 기금을 운영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단독 보증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특징을 보임.
- 중앙집권적인 지원체계를 보이고 정부비중이 높은 것도 특징이라 할 수 있음.

○ 신속지원에 한계

- 대만은 산업의 특성상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가 정착되어 있으나, 2003년 이후 급증하는 보증규모에 비해 위탁보증 위주로 운영되면서 신속하고 강력한 지원에 한계점을 보이고 있어, 대만 보증제도의 특징이자 강점인 강력한 중앙집권적 지원제도의 특성을 살리고 있지 못함.

제6절 프랑스 · 영국의 신용보증제도

1. 프랑스의 신용보증제도

- 중세시대 자조적 기업 집단까지를 포함할 경우 프랑스의 신용보증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다고 할 수 있음.
- 1900년 초 프랑스 중소기업이 자금난 극복을 위해 가족 혹은 민간 조합을 결정하면서 민간 주도의 근대적 신용보증제도가 태동했다고 평가됨.
 - 조합원들에 요구에 따라 법률적인 지위를 가진 협동신용보증회사를 설립
 - 1917년 협동신용보증회사에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는 법률의 통과로 수공업자상호보증회사(SOCAMAS)가 출범
 - 신용협동조합과 유사시기에 보증부대출을 담당하기 위해 출범
- 1953년 프랑스공업회의소대표자회의(APCMF), 무역수공업회의소(CTC), 업종간수공업자보증회사(SIAG)가 설립
- 2004년 SIAG와 SIAGI가 SIAGI로 합병됨
- 3가지 프랑스 신용보증기관
 - 1943년 법률 제정으로 설립된 SIAGI는 창립회원이 75%, 일반금융기관이 22.5%, OSEO Garantie가 2.5% 주식을 보유중이며, 수공업자, 무역업자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업종간 간접상호보증의 형태로 운영됨
 - OSEO Garantie는 지분의 60% 가까이를 정부가 출자하고, 나머지 약 40%를 금융중재기관의 재정지원을 받아서 운영중임. 가장 큰 공공보증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을 보증하기 위한 정부의 각종 기금관리를 직접 담당하고 있음.

- SOCAMAS는 1917년 설립되어 각 지역에서 운영되는 단위조직의 협동조합성격의 법률적 지위를 갖고, 상공회의소에 등록된 모든 수공업자들이 이용할 수 있음.

○ 보증실적 및 보증료

- 2004년을 기준으로 55억 유로의 보증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보증 기업은 46,600건에 이룸
- 보증종류에 따라 달리 징수되는 보증료는 개발보증의 경우 보증잔액의 0.6%, 이전보증의 경우 0.7%, 창업보증은 0.9%로 설정됨.

2. 영국의 신용보증제도

○ 금융기관의 재정 부담이 없는 재정에 의한 지원

- 미국과 유사한 형태로 정부의 재정 및 용자로 재원을 마련해 아시아 국가 들처럼 금융기관이 출연 등의 형태로 재정 부담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보증대상 및 보증실적, 보증료

- 종업원 200인 이하, 혹은 매출액 500만 파운드 이하 등으로 보증대상 기업을 정하고 각 보증건당 5,000파운드에서 25만파운드까지 보증한도액을 두고 있음.
- 2004년 기준으로 4억 8천파운드의 보증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보증건수로는 7,130건에 해당됨.
- 일반적으로 대출잔액의 연 2.0%의 보증료를 보증을 받은 기업체의 부담으로 징수하고 있으며, 대출금리는 기본금리에 추가적으로 0.5~1.0%의 가산금리를 더하여 대출하고 있음.

○ 제도 및 운영상 특징

- 시장을 우선시하는 경제적 전통에 따라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다소 늦은 시점에 보증 제도를 도입하였음.
- 기타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신용보증의 비중이 낮다는 특징
- 중소기업국에서 보증부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대출기관을 사전에 승인해 대출을 시행하는 형태상 특징이 있음.

제6장 지역신용보증제도의 운용효율화 방안

제1절 신용보증 운용방식의 효율화 방안

1. 보증지원 금액의 확대

- 앞의 설문조사에서 신용보증제도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가장 많은 56명 (29.17%)이 ‘보증지원 금액의 확대’를 지적²⁹⁾하고 있어(표 4-14 참조), 신용보증 고객들에게 가장 절실한 보증금액의 상향 조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설립된 이후 10년간 재단이 신용보증할 수 있는 한도는 최고 4억원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그간 물가상승이나 영업규모 확대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최흥기 외, 2009).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한도가 4억원을 초과하고 있어 이를 지역신보에서 보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보증 초과금에 대해서는 중앙회의 재보증이 제한되어 사실상 지역신보가 4억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대해서는 보증을 꺼리고 있는 실정임³⁰⁾.
- 그러나 정부는 금융위기에 따른 자금시장 경색으로 중소기업 등의 금융애로가 지속되자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 확대방안’ (2009.2.12)을 마련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을 개정(6.30)하여 소

29) 재단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해 신용보증 이용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보증금액 확대’를 26.2%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응답하였음(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7: 102).

30)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의하여 자금을 지원받는 소기업등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 및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4억원을 초과하여 신용보증 최고한도의 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16조), 승인절차가 매우 복잡하여

기업 등에 대한 보증한도를 현행 4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하였음.

- 이상의 조치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수출감소와 내수침체 가속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각종 중소기업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판단됨.
 - 그러나 정부가 지역신보의 보증한도를 획일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지역 물가 수준과 상승률, 영업규모 확대, 지역신보의 보증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신용보증의 최고한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이 있어야 할 것임.
- 또한, 금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동일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한도 확대 조치³¹⁾도 경제회복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지원 절차의 간소화 방안

- 고객들이 보증심사를 위해 제출하는 서류준비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보증심사의 장기화에 따라 소요자금의 적기 미대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고객이용의 편의와 업무효율성을 제고토록 함.
- 궁극적으로는 고객이 신청하는 서류의 ZERO화를 목표로 보증서류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신속한 보증지원을 통해 최단기내에 보증공급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등 고객 중심의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중점 추진해야 함.

31) 매출액별 지원 한도를 매출액 1/6~1/3에서 1/2 수준까지 확대하였고,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방지를 위해 도입된 부분보증제도의 적용 범위도 과거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로 확대하였음.

1) 신청 서류의 최소화

- 현재 재단에서 신용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보증신청서, 임차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금융거래확인서 등의 4종류의 서류를 요구하고 있음.
- 기존에는 10종의 서류를 제출받았으나, 2006년에는 이를 6종으로 축소하였고, 2007년에는 현재의 4종으로 축소하였음.

<표 6-1> 제출서류 간소화 추진현황

당 초 서 류 【 10 종 】	1 단 계 【 6 종 】	2 단 계 【 4 종 】
1. 신용보증신청서	1. 신용보증신청서	1. 신용보증신청서
2. 임차계약서사본	2. 임차계약서사본	2. 임차계약서사본
3. 사업자등록증사본	3. 사업자등록증사본	3. 사업자등록증사본
4. 금융거래확인서	4. 금융거래확인서	4. 금융거래확인서(일부 징구 생략) ^{주)}
5. 재무제표	5. 재무제표	
6. 주민등록등본	6. 주민등록등본	
7. 사업자등록증명원		
8. 부가세신고서		
9. 부동산등기부등본		
10. 기업실태표		

주) 여신거래기관별 대출금액이 1천만원이하이거나, 전자금융거래확인서 발급기관에 대해서는 징구 생략(신한, 외환, SC제일, 국민은행)

- 현재 타 지역재단은 소액보증 기준으로 인천·대구 10건, 부산·대전 9건, 경기 8건의 신청서류를 접수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청서류는 상당히 간소화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³²⁾.
- 그러나 고객신청서류 ZERO화라는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전자보증 취급기관의 확대, 전자방식에 의한 서류징구방식의 도입, 행정정보 공동이용 범위의 지속적인 확대 등으로 제출 서류의 축소와 통합을 추진하도록 함.

32) 이로 인해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11.46% 만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 고객이 원할 경우에는 방문상담이나 전화 상담으로 대체토록 하고, 보증신청서 및 관련 서류(임차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우편, 인터넷, 팩스 접수를 활성화하도록 하여 영업점 방문상담 절차를 과감히 생략하도록 함.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발급기관의 확대(4개 은행에서 전 시중은행)로 해당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확인서 징구를 생략하고 공동이용 행정정보의 지속적인 확대를 추진함.
- 또한 소액심사대상범위의 확대로 서류제출 간소화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재단직원이 현장방문시 신청서류 및 약정서류를 접수하도록 하는 ‘무방문 현장접수제도’의 확대도 함께 추진해나가야 함.

2) 보증처리기간의 단축

- 재단은 그동안 신속한 보증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보증서류 접수에서 심사승인까지 이르는 소요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자금의 적시지원을 위한 업무시스템 개선에 노력해 왔음.
 - 영업일 기준으로 2006년에 8.2일이 소요되던 보증처리기간이 2007년 6.9일, 2008년에는 4.5일로 단축되는 등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음.
- 그러나, 2008년도 하반기부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대규모 특례보증시행으로 인해 적정처리건수를 초과하는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보증처리기간의 장기화로 상당한 고객 불편을 초래하였음.
 - 2009년도 1/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상담 4.9배, 접수 7.5배, 공급 4.6배 증가하였음.³³⁾

33) 경기침체에 따른 신용보증 증가 현황

구 분	상 담	접 수	공 급
2008년 1/4분기	7,888	4,168	3,546
2009년 1/4분기	38,606	31,438	16,467
증 감	4.9배	7.5배	4.6배

※ 접수 : '08년 4/4분기 4,406건 → '09.1월 5,580건 → '09.2월 12,773건 → '09.3월 13,085건

- 이러한 경기변동 상황에 따른 보증처리기간의 장기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담 및 서류접수, 신용조사와 보증심사 등에 대한 보증처리업무 중 표준화되고 단순반복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계약직원의 활용이나 과감한 외부위탁(out-sourcing)을 통해 처리기간 지연을 방지해야 할 것임.
- 보증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5천만원 이하의 소액보증 이용객에 대해서는 신용조사와 심사절차를 대폭 간소화시킨 ‘소액보증 심사시스템’을 확대하고, 앞에서 제시한 제출서류 간소화와 전자보증 협약기관의 지속적인 확대, 외부 신용평가기관 정보활용 등을 통한 업무 효율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소상공인들이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보증지원을 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3. 보증료의 적정운용 방안

1) 보증료의 인하 방안 검토

- 보증료는 재단의 주 업무인 소상공인 등의 여신에 대한 보증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피보증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정부와 서울시, 금융기관 등의 출연금과 더불어 재단의 기본재산의 원천임.
- 이러한 보증료는 재단이 보증채무를 대신 갚아야 할지도 모르는 위험부담을 지는 것과 재단의 지급능력을 이용하는 대가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음.
- 그러나, 제4장의 신용보증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보증 비용의 감소’가 두 번째 높은 순위(23.44%)로 지적한 바 있고, 특히 5천만원 이하의 소액보증 고객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난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증료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서울신용보증제도에 대한 평가 및 운용 효율화 방안 연구

- 현재 재단의 보증료는 기준보증료율 1.0%를 중심으로 최저 0.5%에서 최고 2.0% 범위 내에서 보증금액, 보증기간, 중복보증, 신용도 등을 반영하여 차등 적용하고 있음.
- <표 6-2>와 같이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의 재단의 평균보증료율은 1.16%로 큰 변동이 없으며,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이 일치하는 손익분기점 수준의 보증료율은 3.25%로 실제 보증료율의 1/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³⁴⁾.

<표 6-2> 손익분기점 수준의 보증료율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평균
영업수익(a)	8,864	11,326	11,262	10,459	16,040	15,573	21,100	26,159	35,784	17,396
-보증료(c)	817	2,166	3,286	3,859	4,272	6,062	8,073	9,649	13,364	5,728
-이자수익 ³⁾	8,047	9,160	7,949	6,338	11,304	8,796	12,096	15,384	20,264	11,038
-수입수수료	0	0	0	262	464	715	931	1,126	1,149	516
-기타	0	0	27	0	0	0	0	0	1,007	115
영업비용(b)	3,246	10,869	23,723	48,805	44,399	33,172	26,553	25,580	33,840	27,799
-대위변제손실 ²⁾	1,334	7,103	18,418	41,521	35,481	20,578	11,502	7,475	11,391	17,200
-재보증료	327	883	1,363	1,753	1,973	2,619	3,336	3,900	4,826	2,331
-관리업무비	1,585	2,881	3,939	5,528	6,942	9,970	11,708	14,187	17,570	8,257
-기타	0	2	3	3	3	5	7	18	53	10
영업손익(a-b)	5,618	457	-12,461	-38,346	-28,359	-17,599	-5,453	579	1,944	-10,402
보증공급액(d)¹⁾	78,656	162,510	243,516	291,662	381,524	555,631	730,269	856,924	1,160,256	495,661
평균보증료율(c/d)	1.04	1.33	1.35	1.32	1.12	1.09	1.11	1.13	1.15	1.16%
손익분기점 비율(b-(a-c))/d	-6.10	1.05	6.47	14.47	8.55	4.26	1.85	1.06	0.98	3.25%

주 1) 보증공급액 = (직전년도 보증잔액 + 당해연도 보증공급금액/2 - 당해연도 보증해지금액)

2) 대위변제손실액 = 대위변제 순증액으로 반영

3) 신용보증의 리스크는 보증료 수입으로 총당해야 하므로 이자수익은 적정 보증료율을 결정하는데 있어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산출계산의 편의상 포함시킴.

34) 2007년도와 2008년도에는 대위변제순증율이 낮아 평균보증률이 손익분기점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대위변제순증율이 높아 평균 보증료율보다 손익분기점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음. 따라서 보증료율은 경기변동적 속성에 민감하므로 특정연도를 기준으로 인상 또는 인하를 결정하는 것은 곤란하며 수 개년에 걸친 추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함.

- 이처럼 낮은 수준의 보증료율 적용은 지금까지 신용보증의 공공성이 강조되어 온 결과로, 보증료 수입이 신용보증 운용의 기본재원으로서의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해 왔음을 의미함³⁵⁾(정인라 2006: 30).
 - 낮은 보증료율은 보증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감소라는 긍정적 측면보다는 보증상환을 하지 않으려는 도덕적 해이와 위험에 대한 책임회피라는 부작용이 더욱 크게 작용하기도 함(남주하, 2005)
 - 중소기업의 보증에 대한 과잉 수요를 수반하게 되어 신용위험이 높은 중소기업도 신용보증을 얻기가 수월해지고 이는 필연적으로 보증사고의 증가와 대위변제의 증가로 귀결되고(이기영, 2006: 214), 민간신용보증시장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음.

- 이로 인해 신용보증기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보다 강조하는 ‘보증료율의 현실화’ 주장도 제기되기도 하지만(산업연구원, 2001), 신용보증제도가 공공성을 강조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보증료율을 현실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임.
 - 보증료율을 과다하게 올리면 이에 따른 역선택 효과³⁶⁾로 오히려 수익률 자체가 악화될 소지도 있음(이기영, 2006: 220).

- 한편, 재정경제부가 민간기관에 의뢰하여 중소기업, 금융기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1%~1.5% 보증료율을 적정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어³⁷⁾, 2009년 2월 현재 재단의 평균 보증료율(1.23%)³⁸⁾은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됨.

35) 낮은 보증료율은 보증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감소라는 긍정적 측면보다는 보증상환을 하지 않으려는 도덕적 해이와 위험에 대한 책임회피라는 부작용이 더욱 크게 작용하기도 함(남주하, 2005). 또한 중소기업의 보증에 대한 과잉 수요를 수반하게 되며 신용위험이 높은 중소기업도 신용보증을 얻기가 수월해지고 이는 필연적으로 보증사고의 증가와 대위변제의 증가로 귀결됨(이기영, 2006: 214).

36) 보증료율을 지나치게 올리면 채무불이행 확률이 낮은 기업은 필요 없이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신용보증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반면, 채무불이행 확률이 높은 기업은 여전히 신용보증을 적극적으로 선호하게 되어 전체 보증기업의 대위변제율이 올라갈 수 있음.

37) 재정경제부(2005.6.23).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편방안”

38) 한편, 재단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준보증료율인

- 또한, 2009년도 보증금액 기준으로 보증료율을 0.1%p 인하 시 약 41억원의 보증료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³⁹⁾, 이럴 경우 기본재산 감소에 따른 재단에 대한 추가출연 등의 별도의 자원보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상과 같이 재단의 보증재원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보증료율의 인상과 인하를 결정할 경우에는 보증료의 수익자부담의 원칙과 보증운용의 효율성이라는 측면과 공적 신용보증기관으로서의 재정자립 달성과 공공성 추구라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적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보증료율 산정방식의 개편

-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재단의 보증료는 기준보증료율 1.0%를 기준으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기업의 신용도, 보증금액, 보증기간 등에 따라 연 0.5%~2.0%까지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음.
 - 즉, 신용등급별 ‘차등보증료율’(-0.3~+0.7%)에서 ‘가산보증료율’을 합산한 후에 ‘차감보증료율’을 감산하여 보증료를 산출하고 있음.

<표 6-3> 보증료 가산 및 차감 요인

가산 대상		가산 요율	차감 대상	차감 요율
보증 금액별	1억원 초과	0.1%	장애인 기업	0.3%
	2억원 초과	0.2%	전자상거래 보증 (BB등급 이상)	0.2%
보증 기간별	3년 초과 5년 이하	0.1%	창업 5년 이내 여성기업	0.1%
	5년 초과 7년 이하	0.2%	전액해지조건인 신규 시설자금보증	0.1%
	7년 초과	0.3%	재해중소기업(특례보증)	기준보증료율- 0.5%
신보/기보 거래중인 기업	0.1%			

1.0%로 평균 보증료율을 인하하여 보증료부담을 완화할 계획임.

39) 12,800억원(2009년도 보증금액) × (기준보증료율 1% - 인하보증료율 0.9%) × 3.2년 (보증기간, 적수납부기준) = 4,058백만원

- 그러나,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보증금액 및 기간 등에 따라서는 보증료를 차별화하고는 있지만, 대상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차별화하는 사례는 거의 없음⁴⁰⁾(박형근외, 2007).
- 중소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보증료율을 차등하는 이유는 보증대상의 역선택 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도 있음.
 - 그러나, 현재와 같이 보증료율을 신용도에 따라서 미세 조정하는 정도로는 보증위험의 적정 관리가 사실상 매우 어려우며, 그렇다고 기업 신용도에 따라서 3~4배 정도로 보증료율을 차등하는 방안도 역시 중소기업의 입장을 감안해 볼 때 채택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임(산업연구원, 2001: 143).
 - 또한, 신용도에 따른 보증료율 차등화는 은행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또다시 금리 차등화가 이루어지므로 기업신용에 대한 심사 중복과 은행의 여신심사 기능발달 저해, 중소기업의 부담 증대 등의 문제가 있게 됨.
- 따라서 신용도에 따른 차등 보증료율 적용은 보증제도 자체의 근본적인 개선은 아니며 중소기업 부담만 가중시키므로, 이를 보증료 산출식에서 제외하고 보증금액과 보증기간에 따라서 보증료율을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또한, 신용 있는 중견 중소기업들이 보증대상에서 졸업하지 않고 공적 신용 보증체제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어 한정된 보증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도 문제임.
 - 보증연장에 따른 보증료율을 인상(예, 매년 0.1%p~0.2%p)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신용 있는 중소기업들의 보증수요를 축소시키고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40) 일본 중소기업공고 종합연구소(2004.12)에 따르면, 우리나라만 보증료를 신용도에 따라 차별화하는 유일한 국가임.

4. 신용보증 대출방식의 전환

-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중앙정부의 신용보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서울 소재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 자금지원의 중심적인 위치와 역할을 담당해 왔음.
- 그러나 현재 소상공인 지원자금의 경우 일회성 대출이 대부분으로, 이러한 일회성 지원방식으로는 신청자에 대한 정확한 신용평가나 자금 유용 및 불법 전용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하기 어려움(김석진외, 2003: 153).
 - 미국의 경우 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소액대출 지원을 활용하는데 실제로 소기업청의 단계별 자금지원은 최초의 대출이 \$100~5,000에 이르는 매우 적은 규모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지원자금의 회수의지와 노력여하에 따라 점차 자금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단계별 정책을 핵심으로 하고 있음(중소기업청, 2000).
- 따라서, 창업단계의 신용보증에서 출발하여 중소기업의 발전, 성장, 성숙기에 이르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적합한 신용보증 정책을 도입해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이럴 경우 고객에 대한 신용상태를 다기간에 걸쳐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양질의 신용평가 자료를 축적할 수 있어 평가의 질을 높이고 신용정보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으며 단기사고의 예방으로 기금의 부실화도 방지할 수 있음.
 - 또한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일정기간 동안 연체 없이 상환한 기업에 대하여는 차기 대출시 지원규모의 확대, 연대보증인의 면제, 서류준비 간소화 등의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유망한 기업을 발굴하고 부실대출을 줄일 수 있음.

- 한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력으로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 함⁴¹⁾.
 - 재단에서는 일부기업이 보증서를 장기간 이용하는 것을 억제하고 신규 기업에 보증지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6년 한도의 보증졸업제를 시행해 왔으나, 2005년 2월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폐지하였음.
 - 그러나, 한정된 보증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더 이상의 보증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중소기업은 평가 선발하여 공적 신용보증 대상에서 졸업시키는 제도를 재도입할 필요가 있음.

5. 사후관리 시스템의 강화

- 보증재원의 효율적 운영과 보증 효과의 제고를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보증금을 지원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자금의 적정 사용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함.
- 현재 재단의 신용보증은 기업규모별로는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소액보증, 자금용도별로는 임금이나 이자의 지불 또는 원재료의 매입 등 사업운영상 필요로 하는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이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대단히 높음.

41) 그러나, 현재의 신용보증시스템에서는 이들 중견 기업들에게 지속적으로 신용보증을 하는 것이 재단과 중소기업, 민간금융기관 모두에게 이득이 됨. 즉 재단은 대위변제의 위험 없이 안정적인 보증료 수입을 확보할 수 있고, 중소기업은 장기 저리의 정책자금을 이용하게 되며, 금융기관은 안정적으로 대출 수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임. 그러나 제한적인 보증재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라는 측면에서 보면 공적인 신용보증제도의 도입 취지에 위배됨.

- 재단은 보증신청기업체에 대한 심사시 신용보증 약정서상 ‘자금용도 준수의무’ 조항 등 사전적인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을 뿐, 신용보증 지원 이후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여부에 대한 확인은 사실상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
 - － 이로 인해 보증을 지원받은 업체 또한 기업주는 부동산 투기 등 당초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여도(정인라, 2006: 36-37) 이를 사후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이처럼 보증심사와 대출과정에서 고객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자금이 집행되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출기관 또한 대출이자의 납부 외에는 별다른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은 한정된 보증재원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한 문제로 판단됨.

- 따라서, 일정 금액의 이상의 보증잔액(예, 1억원 이상)이 남아있는 보증업체에 대해서는 매년 자금사용내역 확인자료를 제출토록 하거나 대출자금의 용도외 사용 등 부당행위 적발시 대출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등의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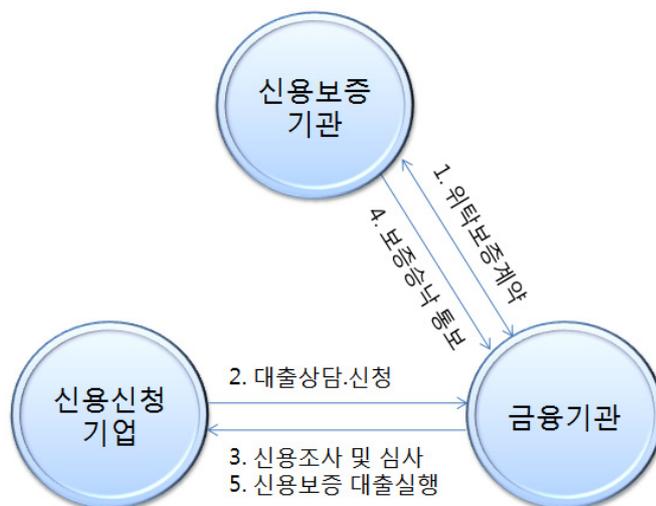
- 한편, 2008년 하반기 이후부터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대위변제금과 구상채권의 급증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됨.
 - － 전문지식을 가진 회수요원의 확충, 고질적인 구상채권의 아웃소싱, 관련 공공기관(예, 연기금관리공단)과 비금융정보 보유 민간기관(예, 백화점, 대형마트 등), 민간신용정보회사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등을 통한 효율적인 구상채권 관리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임.
 - － 구상채권을 회수하면 회수금액만큼 기금이 늘어날 뿐 아니라 구상채권 상각 총당금이 줄어들어 기본재산이 늘어나게 되어 보증여력이 증가하게 되어 보증재원의 건전한 유지와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업무임.

제2절 위탁보증제도 도입방안

1. 위탁보증의 개요

- 우리나라에서 활용하고 있는 보증운영 체계는 크게 직접보증과 위탁보증으로 구분할 수 있음.
- － 직접보증방식은 신용보증 신청에서부터 발급까지 모든 과정을 신용보증기관에서 직접 처리하는 보증방식임.
- － 위탁보증방식은 신용보증기관과 금융기관이 신용보증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관을 대신하여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직접 신용보증을 취급하는 보증제도로서 금융기관은 대출업무와 신용보증업무를 겸하여 취급하게 됨.
- － 즉, 은행에서 대출받고자 하는 기업이 은행창구에서 자금차입과 담보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제도로 금융기관과 신용보증기관이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부분보증으로 운영하고 있음.

<그림 6-1> 위탁보증방식의 절차



- 현재 공적 신용보증기관 중 신용보증기금만이 「신용보증기금법」 제32조에 따라 1976년부터 신용보증 업무 자체를 외부에 위탁하는 업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위탁범위는 1억원 이하의 운전자금 대출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신용조사, 보증료 등 수납, 부실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토록 하고 있음.
 - 보증비율은 80%의 부분보증이며 기업은행 외 5개 은행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보증료의 10%를 수탁은행에 위탁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음.

<표 6-4> 위탁보증과 직접보증 제도의 비교(신용보증기금)

구 분	직접 보증	위탁 보증	
		일반위탁	특정위탁
보증한도	일반한도 30억원	1억원	2억원
보증비율	85%* (신용등급에 따른 차등적용)	80%	85%
취급기관	시중은행	기업, 국민, 부산, 광주, 대구, 전북	기업은행, 우리은행

* 2009.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보증비율 95%~100% 적용

- 신용보증기금이 제공하는 보증방식 중에서 위탁보증의 비중은 낮으며 보증기구가 직접 여신결정과정에서 참여하는 직접 보증의 비중이 매우 높음.
 - 2008년 말 현재 신용보증기금의 위탁보증 규모는 5,190개 업체에 3,074억 원으로 전체 보증금액 대비 1.0% 수준에 불과함.

<표 6-5> 신용보증기금의 취급부문별 보증현황(잔액기준)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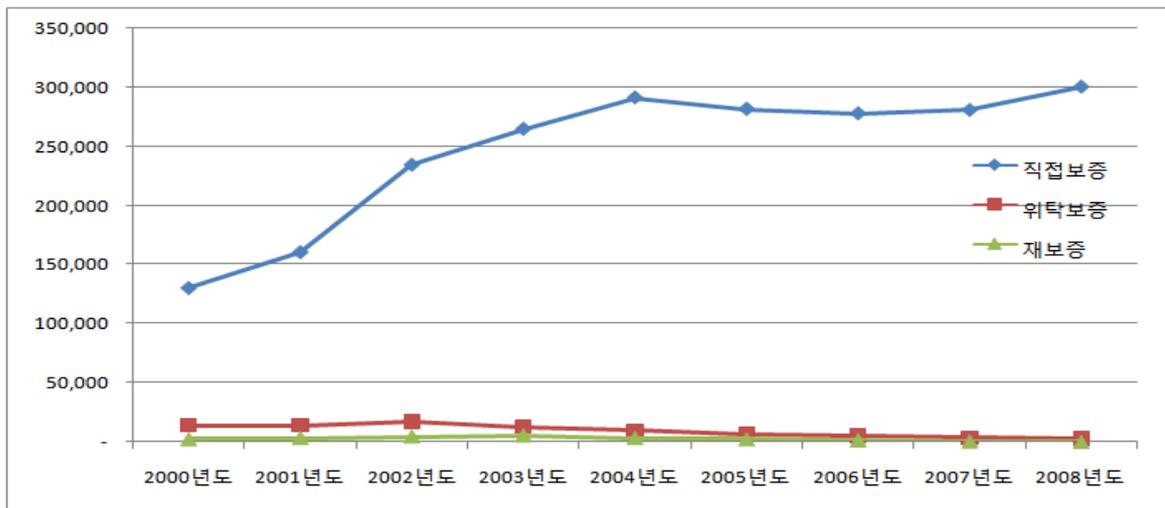
구 분	2000	2002	2004	2005	2006	2007	2008
직접보증	130,144	234,574	291,625	281,971	278,202	280,995	300,747
위탁보증	14,528	17,719	9,965	7,341	5,615	3,837	3,074
재보증	2,377	4,592	3,558	2,216	1,426	590	47

자료 : 신용보증기금, 각 연도 연차보고서

- 2000년도 이후 취급 보증금액의 추이를 살펴보면, 직접보증은 꾸준한 상승 곡선을 그리는 반면에 위탁보증은 2002년을 정점으로 하여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음.
- 이로 인해 총보증잔액에서 위탁보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19.2%에서 2000년 9.9%, 2002년 6.9%, 2005년 2.5%, 2008년 1.0%로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임.

<그림 6-2> 취급부문별 보증금액의 추이(2000~2008)

(단위 : 억원)



- 이상과 같이 위탁보증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수탁기관의 여신담당 직원이 보증심사관련 규정을 숙지해야 하는 부담과 보증위탁계약위반에 따른 면책(面責)되는 불이익,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보증업무 감독과 주의의무상의 부담 등의 복합적 이유로 인해 위탁보증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임.
- 또한 경영합리화를 목적으로 인력감축을 한 위탁기관이 고유업무 외에 사후 관리 등의 업무까지 부담해야 하는 위탁보증 보다는 신용보증재단의 직접보증을 원하고 있으며, 보증료의 10%에 불과한 위탁수수료에 비해 신용조사, 보증심사 등의 위탁보증을 따른 비용부담이 큰 반면 수익성은 낮고, 보증비

율도 80%로 직접보증 95%에 비해 낮아 부족한 금액은 은행에서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로 보전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수탁기관이 소극적임.

2. 위탁보증의 장·단점 분석

- 위탁보증의 장점은 대출 신청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의 고객들이 인근의 시중은행 지점망을 이용하여 보증서류 접수와 상담, 보증심사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거래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임⁴²⁾.
- 또한 보증기관의 업무량의 분산시키고 관리 업무비를 절감시킬 수 있고, 경기변동 상황에 따라 증감하는 보증업무를 별도의 조직과 인력을 조정하지 않고도 탄력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음⁴³⁾.

<표 6-6> 위탁보증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처리의 신속성 및 고객의 거래 편의 제공 - 보증기관의 업무량 분산 및 관리업무비 절감 - 신용기관의 인력 조직의 탄력적 운영가능 - 고객의 신용위험에 대한 파악 용이 - 단기집중적 자금지원에 효율적 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현상 초래 - 직접보증에 비해 높은 대위변제율 - 비전문성에 따른 최적의 보증지원 불가 - 보증심사능력 및 신용정보 축적의 어려움

- 한편, 중소기업과의 신용거래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는데 있어서도 위탁보증은 장점을 발휘할 수 있음.

42) 고객들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본점 영업부와 10개 지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교통 불편과 시간소요의 문제가 있으며, 재단에서도 보증신청 고객들의 기업실사를 위하여 현장조사를 수행하기에는 지점별 소관하는 지역범위가 광범위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심사업무 처리에 한계가 있음.

43) 직접보증만으로 운영하다 보니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 상반기에 걸쳐 급격히 증가된 보증수요(2009년 1/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상담은 4.9배, 접수는 7.5배, 보증공급은 4.6배 증가)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고 보증발급기간이 대폭 증가하여 고객들의 불편을 초래한 바 있음.

- 즉,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거래는 공개적 객관적 정보 보다는 금융기관의 장기적 거래를 통해 일어나는 비공개정보에 의한 여신결정이 중요하며, 당좌거래 등이 없는 신용보증기관이 직접적인 신용조사를 통해 신용평가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게 마련임.
- 이에 반해 단점으로는 신용보증 발급의 주체가 보증기관이 아니라 보증의 혜택을 받는 금융기관이므로 내부자거래에 의한 도덕적 해이⁴⁴⁾와 역선택⁴⁵⁾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높은 대위변제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임.
- 국회 자료에 따르면, 위탁보증의 사고율은 직접 보증에 비하여 2~3배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⁴⁶⁾.

<표 6-7> 위탁보증 사고율 현황

(단위 :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7
직접보증사고율	3.9	5.8	5.7	5.8	4.9
위탁보증사고율	9.5	16.3	12.5	9.6	7.9

자료 : 국회재정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2006:222).

- 또한 담보위주의 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비전문가에 의한 보증심사가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고객에게 최적의 보증지원이 불가능할 수가 있으며, 보증기관의 보증심사능력과 기업신용정보 데이터 축적기회가 상실될 수 있음.

44)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는 보증부 대출의 경우에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대출위험이 크게 감소한 만큼 채권 은행이 대출심사와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는데서 발생함.

45) 역선택(adverse selection)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서, 바람직하지 못한 상대방과 거래하게 되거나 열등한 재화를 구매하는 등 불리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함.

46) 이러한 이유로 위탁보증을 축소하고 직접보증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지만, 위탁보증의 사고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부분보증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위험이 높은 소액보증으로 위탁보증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함(이 기영, 2006: 223-224).

3. 위탁보증제도 도입의 필요성

- 우리나라에서 위탁보증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증사고 발생률이 직접보증에 비해서 매우 높게 나타나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탁보증금액 한도의 대폭 축소, 보증비율의 역차별, 보증금액 결정권한의 폐지 등의 규제정책을 추진하였고, 금융기관 차원에서 위탁보증에 따른 책임과 부담은 늘어난 반면 실익이 줄어들었기 때문임.
- 현재의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지점망으로는 주로 보증을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시킬 수 없고, 보증업무의 경쟁체계 구축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위탁보증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 보증서 발급 업무를 신용보증기관에서 은행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되면 고객은 은행창구에서 창업자금을 직접 받을 수 있기에 절차 간소화에 따른 여러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고 자금지원 저변 확대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임 (김석진 외, 2003:151).
-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의 경우를 살펴보면 보증공급이 대체로 금융기관을 통한 위탁보증제로 운용되고 있는 바, 이는 위탁보증제도가 잘 활용되면, 은행의 대출심사 기능을 적절하게 이용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정책성과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임(산업연구원, 2001:141).
- 한편, <표 6-8>의 위탁보증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직접보증과 위탁보증간의 대위변제비율의 차이가 1%p를 넘지 않는다면, 편익/비용 비율이 1.0을 넘어 위탁보증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즉, 위탁보증에 따른 재단의 보증심사 업무의 감소로 인해 인건비와 경비, 고객편의제공 등의 편익이 금융기관에 지급해야 하는 위탁보증 수수료와 대위변제 차이에 따른 상각금액 등의 비용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재단 보증의 95%가량을 차지하는 5천만원 이하의 소액보증에 대한 전면적인 위탁보증을 시행할 경우에는 보증심사 인력과 영업점을 대폭 축소할 수 있어 위탁보증의 도입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위탁보증을 시행함으로써 예상되는 사고율의 증가 등 수탁기관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은 별도로 수립되어야 할 것임.

<표 6-8> 위탁보증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단위 : 천원)

위탁비율 (위탁금액)	대위변제차 (직접-위탁)	비 용(A)			편 익(B)				B/A
		위탁 수수료 ¹⁾	상각 금액 ²⁾	소계	인건비 ³⁾	경비 ³⁾	고객 편익 ⁴⁾	소계	
10% (1,280억원)	1%p	157,440	832,000	989,440	371,580	442,200	103,400	917,180	0.93
	0.5%p	157,440	416,000	573,440	371,580	442,200	103,400	917,180	1.60
20% (2,560억원)	1%p	314,880	1,664,000	1,978,880	743,160	884,400	206,800	1,834,360	0.93
	0.5%p	314,880	832,000	1,146,880	743,160	884,400	206,800	1,834,360	1.60
30% (3,840억원)	1%p	472,320	2,496,000	2,968,320	1,114,740	1,326,600	310,200	2,751,540	0.93
	0.5%p	472,320	1,248,000	1,720,320	1,114,740	1,326,600	310,200	2,751,540	1.60
50% (6,400억원)	1%p	787,200	4,160,000	4,947,200	1,857,900	2,211,000	517,000	4,585,900	0.93
	0.5%p	787,200	2,080,000	2,867,200	1,857,900	2,211,000	517,000	4,585,900	1.60
95% (12,160억원)	1%p	1,495,680	7,904,000	9,399,680	3,530,010	4,200,900	982,300	8,713,210	0.93
	0.5%p	1,495,680	3,952,000	5,447,680	3,530,010	4,200,900	982,300	8,713,210	1.60

주 1 : 위탁수수료 = 2009년도 보증공급목표(1조 2,800억원) × 예상위탁보증비율 × 2009년 2월 현재 평균보증료율(1.23%) × 위탁수수료율(10%)

주 2 : 구상채권 상각금액은 대위변제 발생금액의 65%로 가정함.

주 3 : 위탁보증 실시에 따른 재단 보증인력(현재 66명)의 관리업무비 절감분

주 4 : 고객의 영업점방문 1회당 1만원의 비용 산정(평균방문횟수: 특례보증 1회, 일반보증 3회). 2009년도 보증목표 75,000건 중 특례 60,800건, 일반 14,200건

주 5 : 위탁보증에 따른 영업점 축소와 이에 따른 비용절감 부분은 미포함됨.

4. 위탁보증제도 도입 방안

1) 근거 법령의 마련

- 현행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40조제3항에 따르면, 재단은 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중앙회·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서는 업무의 위탁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어 위탁보증의 도입은 법제도적으로 가능함.
- 그러나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설립 조례인 「서울특별시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보증업무의 위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탁보증의 근거를 마련하고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위 조례에 위탁보증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할 필요가 있음.

<표 6-9> 관련 조례의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업무의 위탁) ① 재단은 신용보증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현행 제17조와 같음>

2) 위탁보증의 기본방향

- 위탁보증의 one-stop 기능의 장점인 보증처리의 신속성과 업무편의성의 제고, 보증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탁보증제도를 도입하되, 금융기관에 대한 적격성 심사 후 보증심사권을 단계적으로 이양하도록 함.
 - 특히 소상공인이 주로 이용하는 대출기한 1년 미만의 5천만원 이하인 소액 자금과 각종 특례·특별 정책자금에 대한 신용보증에 대해서는 절차의 간소화, 신용보증제도의 운용비용 절감 등 측면에서 위탁보증의 활용을 적극 검토함.
-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금융기관의 보증심사 결과에 대한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사후에 금융기관의 신용보증에 대한 심사내용을 분석 평가하여 심사권 위임여부 및 조건 등을 조정하도록 함.
- 위탁보증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높은 대위변제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면적인 도입보다는 시범사업을 통해 위탁보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전면 시행에 대비함.
 - 우선 서울시금고(우리은행)와 위탁보증업무계약을 체결하여 2~3년간 한시적으로 위탁보증을 시행함.
 - 위탁보증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점을 마련함.

3) 위탁사업의 활성화 방안

- 수탁기관 간 자율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위탁성과가 우수한 금융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위탁보증을 활성화함.
 - 위탁보증 운용성과가 우수한 수탁은행에 대하여는 부분보증비율과 총액취급한도(수탁은행이 일정기간 취급할 수 있는 위탁보증 총한도)를 우대하고 대위변제액 중 부담비율 등을 유리하게 적용

- 이러한 제도를 일정기간 운용해 본 결과 운영성과가 양호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위탁보증한도 확대 등 우대조치를 강화해 나감.
- 이러한 유인체계를 강화하는 것과는 별도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부분보증제도 등의 탄력적 운용이 필요함.
 - 위탁보증의 부분보증비율은 중소기업의 신용도와 해당 금융기관의 운용실적 등에 따라서 차등폭을 60~90%로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 부분보증제도에 따라 수탁은행이 손실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에 대하여 반드시 신용대출로 취급하도록 위탁계약을 강화함으로써⁴⁷⁾ 수탁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여신심사를 강화토록 함.
 - 대위변제액의 일부를 분담시키고, 위탁보증 사고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해당연도의 취급 가능한 위탁보증의 총규모와 개별기업에 대한 위탁보증규모 등을 제한함.
 - 위탁보증심사기준의 강화, 사고율과 연계하여 위탁보증계약과 그 내용을 달리 정하고 해당 금융기관의 전년도 보증운용실적(보증사고, 보증부대출 취급액, 대위변제율 등)에 따라서 차등적인 출연요율을 적용함.

47) 수탁은행은 부분보증으로 인해 자체부담하는 대출위험에 대하여 신용대출이 아닌 추가 담보 또는 구속성 예금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위험회피 행동을 통하여 보증부 대출위험을 회피할 수 있음(산업연구원, 2001: 140).

제7장 결론 및 향후과제

- 본 연구는 크게는 분석과 방안모색의 두 부분으로, 작게는 세 가지 측면에서의 분석과 신용보증제도의 운용 효율화 방안의 네 부분으로 구성됨.
 - 첫째, 분석대상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의 현황 분석으로서 일반현황과 보증현황, 운용체계, 그리고 보증절차 등에 대한 분석
 - 둘째, 통계분석 기법과 설문조사 등을 통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거시적·미시적인 성과 분석
 - 셋째, 선진국(일본, 독일, 미국, 대만, 그리고 프랑스·영국) 신용보증제도의 현황과 특성 등의 해외사례 분석
 - 넷째,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신용보증제도 운용방식의 효율화 방안과 위탁보증제도 도입 방안의 도출

- 서울신용보증재단은 1999년 재단 설립 이후, 소액보증·소상공인 중심의 신용보증기관으로 특화하고 있음.
 - 2006년까지 총 보증공급 업체수 기준으로 소상공인이 90.9%(금액기준으로는 68.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06년까지 전체 신용보증공급 중 50천만 원 이하의 소액보증이 차지하는 비중은 업체수 기준 95.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03년 4월 서울시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지원 업무 수탁.
 - 2006년 4월 소상공인지원센터의 관리·운영업무 위탁 운영 등.

-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재단의 거시적 성과를 분석
 - 분석결과, 신용보증이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으나, 서울 설비투자증가와 고용률 증가, 그리고 중소기업 금리인상 억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함.

-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이용고객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신용보증 이용만족도와 경영개선 성과 등의 미시적·비재무적 성과를 평가·분석
 - 만족도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만족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가운데, 지원 절차의 간소화와 처리기간의 신속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만족의 수준이 높고 지원조건과 보증 금액의 규모, 그리고 보증 비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만족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
 - 경영개선의 성과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자금난 해소가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고 고용안정 및 증대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됨.

- 해외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는 신용보증제도의 제도적·운영적 특성을 분석
 - 일본의 신용보증제도에 대한 분석에서는 상향식 보증규모 결정방식과 높은 수준의 담보부 보증 비율의 특성을 도출
 - 독일의 신용보증제도는 시장원리와 공공 목적의 조화라는 장점과 동시에 보증심사 소요기간과 대위변제 절차 등 제도운영상의 비효율성 노정
 - 미국 신용보증제도의 특성은 예산에 의한 보증지원과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보증제도의 도입 등.
 - 대만의 신용보증제도는 단독 보증기관의 운용으로 인한 중앙집권적인 지원체계와 위탁보증 위주의 운용으로 인한 신속지원에의 한계점이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출.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중심으로 한 지역신용보증제도의 운용효율화 방안으로 본 연구는 운용방식의 효율화 방안과 위탁보증제도의 도입방안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 신용보증 운용방식의 효율화 방안으로 본 연구는 다시 1) 보증지원 금액의 확대, 2) 지원 절차의 간소화, 3) 보증료의 적정운용, 4) 신용보증 대출방식의 전환, 5) 사후관리 시스템의 강화를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제시함.

- 보증지원 금액의 확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수출 감소와 내수침체 가속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물가 수준과 상승률, 영업규모 확대, 지역신보의 보증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신용보증의 최고한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이 요구됨, 나아가 금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동일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한도 확대 조치도 경제회복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지원 절차의 간소화: 고객신청서류 ZERO화라는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전자보증 취급기관의 확대, 전자방식에 의한 서류징구방식의 도입, 행정정보 공동이용 범위의 지속적인 확대 등으로 제출 서류의 축소와 통합을 추진함과 동시에 경기변동 상황에 따른 보증처리기간의 장기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담 및 서류접수, 신용조사와 보증심사 등에 대한 보증처리업무 중 표준화되고 단순반복 업무는 계약직원 활용이나 과감한 위탁을 도모하고 보증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5천만원 이하의 소액보증 이용객에 대해서는 신용조사와 심사절차를 대폭 간소화시킨 ‘소액보증 심사시스템’을 더욱 확대해 나감으로써 소상공인들이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보증료의 적정운용: 재단의 보증재원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보증요율의 인상과 인하를 결정할 경우에는 보증료의 수익자부담의 원칙과 보증운용의 효율성이라는 측면과 공적 신용보증기관으로서의 재정자립 달성과 공공성 추구라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적점(optimal point)을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신용보증 대출방식의 전환: 창업단계의 신용보증에서 출발하여 중소기업의 발전, 성장, 성숙기에 이르는 각 단계별로 적합한 신용보증 정책을 도입해 활용함과 동시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력으로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 중소기업은 보증지원 대상에서 제외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사후관리 시스템의 강화: 일정 금액 이상의 보증잔액이 남아있는 보증업체에 대해서는 매년 자금사용 내역확인 자료를 제출토록 하거나 대출자금의 용도외 사용 등 부당행위 적발 시 대출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등의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임.
- 현재의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지점망으로는 주로 보증을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시킬 수 없고, 보증업무의 경쟁체계 구축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위탁보증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 위탁보증제도의 도입을 위한 첫 번째의 과제는 근거 법령의 마련임: 현행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40조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을 통해 위탁보증의 도입은 법·제도적으로 가능한 상황이나,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설립 조례인 「서울특별시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보증업무의 위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탁보증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례에 위탁보증 규정을 신설해야 함.
 - 위탁보증의 기본방향: 1) 위탁보증제도가 지닌 one-stop 기능의 장점인 보증처리의 신속성과 업무편의성의 제고, 보증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탁보증제도를 도입하되, 금융기관에 대한 적격성 심사 후 보증심사권을 단계적으로 이양하도록 함, 2)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금융기관의 보증심사 결과에 대한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사후에 금융기관의 신용보증에 대한 심사내용을 분석 평가하여 심사권 위임여부 및 조건 등을 조정하도록 함, 3) 위탁보증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높은 대위변제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면적인 도입보다는 시범사업을 통해 위탁보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전면 시행에 대비함.
 - 위탁사업의 활성화 방안: 수탁기관 간 자율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위탁성과가 우수한 금융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위탁보증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부분보증제도 등의 탄력적 운용이 필요함.

참고문헌

- 강동희(2006). “중소기업 신용보증 적정규모의 산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지역발전학회 「지역발전연구」 10(1). 1-14.
- 국회재정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2006.9). 「2006 국정감사 정책현안」
- 권성일(2001). 「최신기업신용분석」, 한국금융연수원
- 김상빈(2005).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석진·윤경영(2003). “소상공인 신용보증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중소기업학회 「중소기업연구」 25(1). 135-156
- 김자봉(2008). “공적 신용보증을 통한 중소기업지원 확대 필요성”. 한국금융연구원 「주간 금융브리프」 17(49). 10-11.
- 김홍기·민완기·황진영(2009). 「지역경제와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역할제고 방안」. 지역신용보증재단중앙회
- 남기정(2007). 「해외보증제도 비교」. 신용보증기금 「KODIT 리서치」 2007년 9월호
- 남주하(2005).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선방안”. 신용보증기금 「KODIT 리서치」 2005년 12월호. 17-30
- 남주하·이상복·이영찬(2004). 「지역신용보증제도 및 재보증제도 발전방안」.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 문권순(1997). “벡터자기회귀(VAR) 모형의 이해”. 통계청 「통계분석연구」 2(1)
- 박형근·권태울(2007). “신용보증제도의 운용현황과 과제”. 「한은조사연구」 2007-11
- 산업연구원(2001). 「신용보증제도의 운용성과 및 발전방안」
-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7). 「서울신용보증재단 중장기 발전전략」. 서울신용보증재단
- _____ (2004).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서울경제활성화 기여도 분석」. 서울신용보증재단
- _____ (2002).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중장기 발전방안」. 서울신용보증재단
- 서동백(2006). “신용보증에 관한 민사법적 고찰”.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안정(1999).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정경위”. 「국회보」 1999년 10월호, 56-61
- 서청석·이병갑(2009). “최적 신용보증운용모형에 관한 연구: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중심으로”. 한국무역학회 신용보증기금. 2000~2008년 각 연도 연차보고서
- 신형균·남주하(2003). 「신용보증재단 보증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중소기업청
- 왕성철·임혜진·황인국(2008). “신용보증의 거시성과 및 미시성과 분석 - VAR모형과 TEA를 활용한 신용보증

- 성과분석” . KODIT경제연구소 「KODIT REPORT」 2008-10호
- 이기영(2006). “국내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의 평가 및 개편방향” .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재정논집」 20(2). 203-229
- 일본 중소기업공고 종합연구소(2004.12). “신용보증제도를 둘러싼 리스크 부담 문제 검토”
- 재정경제부(2005.6.23).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편방안”
- 정연승·이중욱·노용환(2007). 「신용보증의 성과분석과 발전방안」 . 중소기업연구원
- 정인라(2006).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선방안 연구” .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지용(2006). “중소기업의 자금조달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중소기업중앙회(2008.1). 「2007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애로실태조사」
- 중소기업청(2000). 「소상공인 창업자금지원제도 개선방안」
-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2007). 「2007 연차보고서」
-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2004). 「지역신용보증제도 및 재보증제도의 발전방안」
- 조덕희 외(2001), 「신용보증제도의 운영성과 및 발전방안」 , 산업연구원, 8월
- 최성호(2006). “신용보증재단의 성과평가 지표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 연구” . 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흥기·민완기·황진영(2009). 「지역경제와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역할제고 방안」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홍순영·이중욱·우제현(2005). 「신용보증 적정 공급규모의 산출에 관한 연구」 . 중소기업연구원
- 홍순영·이중욱(2004). 「신용보증의 국민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 중소기업연구원
- 황인국(2008). 「한국·일본·대만의 신용보증제도 비교」 . 「KODIT 리서치」 2008년 12월
- Dunn, W(2005). 「정책분석론」 . 남궁근 외(역). 서울: 법문사; Public Policy Analysis: An Introduction. New Jersey: Prentice-Hall, 2004.
- Green, A(2003). "Credit Guarantee Schemes for Small Enterprises: An Effective Instrument to Promote Private Sector-led Growth?". *SME Technical Working Paper Series*. No.10.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 Levitsky, J(1997). "Credit Guarantee Schemes for SMEs: an International Review". *Small Enterprise Development*, 8: 4-17.
- Vogel, R. and D. Adams(1997). "Costs and Benefits of Loan Guarantee Programs". *The Financier: Analyses of Capital and Money Market Transactions*. Vol 4, No. 1 and 2

금액별 신용보증현황
(2005년01월01일~2008년12월31일)

접수기준, 재보증가입 여/부 : 전체

(단위 : 건, 원)

기 간	금액	일반보증		특례보증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5.01.01 ~ 2005.12.31	1천만원 이하	586	4,350,056,347	26,031	252,793,900,000
	2천만원 이하	1,719	27,337,976,770	1,054	17,925,650,000
	3천만원 이하	2,386	60,499,753,857	1,413	37,188,550,000
	4천만원 이하	364	12,538,480,600	324	11,250,200,000
	5천만원 이하	1,244	53,255,420,000	694	30,861,200,000
	1억 이하	336	25,866,729,643	36	3,034,400,000
	2억 이하	117	18,059,930,309	6	884,000,000
	3억 이하	32	7,817,113,000	-	-
	3억 초과	16	5,936,107,671	5	1,856,000,000
소 계		6,800	215,661,568,197	29,563	355,793,900,000
2006.01.01 ~ 2006.12.31	1천만원 이하	2,048	15,878,065,119	1,504	14,968,200,000
	2천만원 이하	3,042	50,187,230,908	492	8,302,950,000
	3천만원 이하	2,580	65,430,690,726	501	13,219,450,000
	4천만원 이하	708	24,382,602,471	127	4,432,450,000
	5천만원 이하	1,546	66,259,320,846	225	10,047,400,000
	1억 이하	708	53,872,425,895	18	1,609,700,000
	2억 이하	254	38,342,608,554	-	-
	3억 이하	95	23,880,705,619	-	-
	3억 초과	87	32,879,570,969	-	-
소 계		11,068	371,113,221,107	2,867	52,580,150,000
2007.01.01 ~ 2007.12.31	1천만원 이하	1,531	11,560,151,642	13,018	129,847,500,000
	2천만원 이하	4,205	71,358,126,599	13	244,000,000
	3천만원 이하	2,991	75,821,709,024	1	25,500,000
	4천만원 이하	751	25,902,829,596	-	-
	5천만원 이하	1,745	74,900,336,086	-	-
	1억 이하	1,007	76,456,681,781	-	-
	2억 이하	478	72,702,427,370	-	-
	3억 이하	92	23,466,040,000	-	-
	3억 초과	99	37,811,000,000	-	-
소 계		12,899	469,979,302,098	13,032	130,117,000,000
2008.01.01 ~ 2008.12.31	1천만원 이하	1,263	9,797,521,784	32,986	328,928,750,000
	2천만원 이하	3,507	59,596,100,434	1,539	28,583,300,000
	3천만원 이하	2,944	76,018,922,259	811	20,526,300,000
	4천만원 이하	688	23,999,307,908	199	6,969,500,000
	5천만원 이하	1,474	63,335,863,370	616	26,235,150,000
	1억 이하	901	67,087,135,919	325	24,175,700,000
	2억 이하	475	73,916,788,880	67	10,929,650,000
	3억 이하	86	21,681,980,000	-	-
	3억 초과	85	31,492,232,124	-	-
소 계		11,423	426,925,852,678	36,543	446,348,350,000

월말 신용보증잔액 현황

(2000년 01월 01일 ~ 2008년 12월 31일)

(월말잔액기준)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월	496	35,316	2,191	162,466	5,714	297,420
2월	583	41,809	2,376	175,921	6,213	310,798
3월	722	50,312	2,573	191,628	6,694	320,860
4월	893	61,569	2,726	200,238	7,180	330,621
5월	1,099	75,169	2,854	208,769	7,604	337,863
6월	1,300	91,398	3,015	216,814	7,897	341,519
7월	1,431	104,080	3,263	228,507	8,261	346,774
8월	1,566	113,348	3,959	249,787	8,748	354,573
9월	1,682	121,438	4,307	258,389	9,252	362,786
10월	1,822	131,274	4,536	265,340	9,553	365,949
11월	1,985	143,353	4,951	276,872	9,933	370,956
12월	2,115	154,735	5,358	288,016	10,370	373,957
합계	15,694	1,123,801	42,109	2,722,747	97,419	4,114,076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월	10,808	378,734	16,624	461,639	21,181	549,052
2월	11,379	386,828	17,000	466,839	21,595	559,504
3월	11,925	393,048	17,467	473,360	23,269	586,675
4월	12,721	404,827	17,833	476,597	27,027	631,932
5월	13,284	413,805	18,148	480,665	31,171	681,988
6월	13,634	416,946	18,296	481,954	32,882	701,487
7월	14,141	426,330	18,666	490,649	33,550	711,766
8월	14,802	438,701	19,376	509,923	34,248	724,670
9월	15,363	447,443	20,016	525,472	34,810	736,509
10월	15,920	454,923	20,373	532,844	36,711	757,237
11월	16,194	458,307	20,697	539,945	40,090	793,040
12월	16,504	460,629	20,774	540,495	42,105	798,411
합계	166,675	5,080,521	225,270	5,980,382	378,639	8,232,271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월	43,667	810,264	49,148	937,887	61,170	1,118,841
2월	44,650	823,941	49,649	959,538	61,670	1,139,996
3월	45,295	835,925	50,763	994,352	62,256	1,176,299
4월	45,628	845,343	53,268	1,039,257	62,919	1,211,998
5월	45,968	856,070	55,494	1,046,833	65,452	1,251,553
6월	46,462	870,028	56,905	1,056,227	70,026	1,308,681
7월	46,738	872,058	58,350	1,074,231	74,644	1,360,877
8월	47,194	887,574	59,595	1,087,546	78,382	1,405,523
9월	47,673	910,245	60,297	1,076,731	81,812	1,456,529
10월	48,085	924,066	61,025	1,091,111	84,966	1,507,379
11월	48,587	947,648	61,326	1,108,220	87,473	1,504,370
12월	48,993	932,638	61,348	1,116,924	90,377	1,538,077
합계	558,940	10,515,800	677,168	12,588,857	881,147	15,980,123

월간 신용보증공급 현황

(2000년 01월 01일 ~ 2008년 12월 31일)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월	89	4,051	153	13,706	467	17,749
2월	89	6,775	244	20,428	604	22,151
3월	138	8,410	281	21,179	625	22,300
4월	175	11,841	234	16,360	662	21,104
5월	210	13,781	240	17,436	600	19,753
6월	203	16,434	294	21,225	507	17,007
7월	152	14,748	341	19,627	576	18,713
8월	167	12,271	801	29,735	773	22,917
9월	168	12,973	501	21,372	797	24,115
10월	206	15,890	372	19,409	602	21,533
11월	230	16,713	592	23,996	815	24,321
12월	204	17,952	594	26,540	920	29,223
합계	2,031	151,839	4,647	251,013	7,948	260,886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월	788	21,625	541	14,899	861	23,548
2월	916	25,801	842	21,166	825	23,722
3월	970	26,950	983	25,539	2,261	46,321
4월	1,171	29,443	936	22,724	4,252	60,692
5월	1,022	28,325	884	22,821	4,742	67,887
6월	896	23,896	778	21,550	2,326	38,622
7월	1,059	29,143	991	28,772	1,265	29,376
8월	1,321	34,185	1,371	37,820	1,372	30,611
9월	1,212	30,721	1,263	34,132	1,187	28,111
10월	1,214	31,716	914	24,452	2,546	39,055
11월	989	25,385	1,108	28,494	4,162	56,107
12월	1,160	30,748	1,209	35,574	3,140	41,509
합계	12,718	337,938	11,820	317,943	28,939	485,561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월	1,962	25,514	843	22,902	800	22,445
2월	1,504	28,713	1,230	38,705	1,204	37,563
3월	1,209	27,897	2,084	60,341	1,542	58,221
4월	874	23,632	3,464	75,642	1,615	60,854
5월	949	27,344	3,378	64,359	3,313	58,852
6월	1,259	34,725	2,263	43,833	5,650	83,971
7월	938	23,461	2,279	42,325	5,483	74,492
8월	1,439	39,176	2,177	38,773	4,545	66,470
9월	1,518	46,746	1,471	26,829	4,378	74,836
10월	1,135	33,503	1,719	35,376	4,224	77,861
11월	1,442	46,439	1,287	38,448	4,123	70,473
12월	1,450	47,587	1,128	33,056	3,933	69,607
합계	15,679	404,737	23,323	520,589	40,810	755,645

서 명 : 서울신용보증제도에 대한 평가 및 운용 효율화 방안

판 사 항 : 1판 1책 찍음 2009년 8월

저자사항(연구진) : (연구책임자) 배 태 영
(연구원) 김 중 래 박 치 형 이 승 모 손 화 정
최 영 훈 신 현 두 박 용 균

발 행 인 : 서울특별시의회의장

발 행 처 :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실

연 구 기 관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7번지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전 화 번 호 : 02) 2220 - 1513

팩 스 번 호 : 02) 2292 - 1935

※ 본 학술연구용역보고서의 저작권은 서울특별시의회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